

사회적기업을 위한 공공구매 매뉴얼



목 차

사회적기업을 위한 공공구매 매뉴얼

제1장

공공조달 우선구매제도

1.1	공공조달 우선구매제도 개요	06
1.2	공공조달 우선구매 대상기관	07
1.3	정부의 정책적 지원대상 우선구매제도	10
1.4	우선구매제도 활용의 의의 및 현황	26
1.5	유사분야 우선구매제도와 현황	31
1.6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와 현황	35

제2장

공공(국가 및 지방)계약의 이해

2.1	공공계약의 의의와 특징	38
2.2	계약의 종류	41
2.3	내자구매(물품 및 용역) 계약	43
2.4	다수공급자계약(MAS: Multiple Awarded Schedule)제도	86
2.5	서비스 공공조달플랫폼 '이음장터'	103

제3장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3.1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개요	118
3.2	사회적기업 제품 개요	121
3.3	우선구매 절차	123
3.4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의 제출·공고	133
3.5	2021년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 및 계획	134

제4장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4.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	138
4.2	공사용자재 직접(분리) 구매제도	141
4.3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143
4.4	직접생산확인제도	144
4.5	계약이행능력심사제도	146
4.6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148
4.7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및 성능보험 제도	150
4.8	공공구매론	152
4.9	다수공급자 물품계약(MAS) 제도	154
4.10	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조합 추천제도	158
4.11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160
4.12	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경쟁제품)	161

제5장

사회적기업이 활용 가능한 공공구매제도

5.1	조달청 적격심사 가점제도	166
5.2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세부기준 가점제도	176
5.3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소액수의계약	181
5.4	단체표준제도	182

참고자료

1.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온라인 교육 안내	188
2.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통합플랫폼(e-store36.5)	189
3.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표준평가방식	191
4.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공동수급체 운용요령	196
5.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관련 공공기관 설문조사 결과	200

제1장

공공조달 우선구매제도

- 1.1 공공조달 우선구매제도 개요
- 1.2 공공조달 우선구매 대상기관
- 1.3 정부의 정책적 지원대상 우선구매제도
- 1.4 우선구매제도 활용 의의 및 현황
- 1.5 유사분야 우선구매제도와 현황
- 1.6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현황



공공조달 우선구매제도

1.1 공공조달 우선구매제도 개요

- **우선구매제도**는 정부재정을 활용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친환경/저탄소 녹색성장, 사회경제적 배려대상 기업, 단체 등이 생산 또는 공급하는 물품, 용역, 시설공사 등을 공공조달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을 통칭하는 개념임
- 정책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에게 직접적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지원하는 형식이 아닌 생산 및 공급 가능한 상품을 공공기관(수요기관)이 구매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큰 특징임
 - **직접적** 지원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공공부문의 수요기관이 지속적으로 구매하는 상품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지원 대상이 여성, 중증장애인, 사회적 약자들의 고용을 활성화 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정책지원 대상 기업 및 단체들이 생산한 제품에 적정 대가를 보장하여 구매함으로써 발생한 수익을 재투자하거나 지역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자생적으로 지속 가능한 고용 및 성장구조를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이점이 있음
- 현재 정부에서는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를 포함하여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평가 시 “정책지원” 평가분야의 평가항목으로 채택하여 법정 구매목표비율 충족 수준 등을 관리하는 10가지의 우선구매제도가 존재함

1.2 공공조달 우선구매 대상기관

- 공공조달을 활용하는 수요기관의 종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기타기관 등 총 8개 유형으로 구분되고 있음
- 국가중앙조달기관인 조달청의 2022년 8월말 기준 공공조달 대상 수요기관은 총 65,548 개이며 광역시·도 지방교육청 및 산하 교육지원청, 공·사립학교 법인 및 학교 등이 포함된 교육기관이 약 19%, 특수법인, 공익법인 등이 속하는 기타 수요기관이 전체의 약 57%를 차지하고 있음

[나라장터 수요기관 유형별 등록현황]

구분	합계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						
			지자체	교육 기관	소계	공기업	준정부 기관	기타 공공	지방 공기업	기타	소계	
2022년 8월	기관수 (%)	65,548 100.0	5,504 8.4	7,050 10.8	12,435 19.0	19,485 29.7	1,067 1.6	1,494 2.3	481 0.7	269 0.4	37,248 56.8	40,559 61.9

* 자료: 조달통계(조달청, 2022.08)

- 상기구분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령에 따라 조달 및 계약 실무에서 수요 기관의 유형을 정의하는 것으로 조달청의 “조달사업 수요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조달청고시 제2020-53호, 2020. 12. 10., 일부개정)에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국가기관, 동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출연한 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기타기관)으로 분류하고 있음

* 국가기관

1. 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기관 및 그 산하기관
2.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속기관
3. 「유아교육법」 제7조제1호에 따른 국립유치원
4.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립학교
5.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립 특수교육기관

* 지방자치단체

1. 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기관 및 그 산하기관
2.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속기관
3. 「지방자치법」 제30조에 따른 각급 지방의회
4.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5.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6.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공립학교
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립 특수교육기관
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각급 교육청 및 그 산하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출연한 기관·기타기관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공공기관(공기업, 준 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2조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출자·출연기관
4.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의료원(법인)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6.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유치원
7.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8.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립 특수교육기관
1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다목에 따라 설립된 법인
1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동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득한 사회복지법인 및 동법 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자(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1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제4조에 따른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13.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은 기업 및 연구기관
14.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
15.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 받거나 대행하는 법인
16. 기타 공익실현을 위하여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1.3 정부의 정책적 지원대상 우선구매제도

1.3.1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 **관련 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판로지원법)」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

-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공사·용역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해야 함(법 제4조)
- 공공기관의 장은 **연간 제품(물품·공사·용역) 구매 총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함(시행령 제4조)
-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에게 통보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구매목표비율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고(법 제5조, 시행령 제4조)
 - 여성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장애인기업제품 포함

* 대상기관: 849개(2021년 말 기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의료원	기타 특별법인	합계
	광역	기초							
47	17	226	17	129	218	151	38	6	849

☞ **주요 정의 및 적용 대상**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 (제품)** 물품, 공사, 용역
- (적용대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포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중소기업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은행, 대한상공회의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1.3.2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 **관련 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우선구매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법 제13조)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을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5% 이상**으로 요구(시행령 제12조)

☞ **주요 정의 및 적용 대상**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 (기술개발제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품**”으로 지정된 제품

유형(13종)	설 명
성능인증제품 (EPC)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우수조달물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
신제품인증 (NEP)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
품질인증소프트웨어 (GS)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신기술인증 (NET)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이 인증(지정)한 신기술을 활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상용화단계에서 성능확인을 마친 제품
수요처 지정형 기술개발제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에 따른 구매조건부 R&D 성공제품 및 민관 공동투자 R&D 성공제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공공부문)로 R&D 성공제품
녹색인증 대상제품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녹색인증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녹색인증된 제품

유형(13종)	설 명
우수조달공동상표 지정물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2에 의해 우수조달 공동상표로 지정된 물품(통상실시권자 제외)
재난안전 제품인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3조의4에 따라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각종 제품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에 대하여 적합성을 인증한 제품
산업융합품목 지정제품	「산업융합 촉진법」 제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융합품목 중 중소기업 생산제품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제품	「산업융합 촉진법」 제12조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단,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에 한함)
혁신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해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서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된 제품
물산업 우수기자재 지정제품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선정된 제품

- **(적용대상)**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1.3.3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 관련 근거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여성기업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공공기관의 장은 **연간 물품·용역 각 구매총액의 5% 이상, 공사 구매총액의 3% 이상**을 여성기업제품으로 의무 구매
 - * 법률 개정(여성기업법 제 9조)을 통해 권고에서 의무화로 변경('14.1.1 시행)
 - 정부는 **여성기업제품 구매의무화 강화를 위해, 공공시장 내 여성기업에 대한 법률을 통한 구매 의무와 1인 견적에 의한 소액수의계약 금액 기준을 상향**
 - * 여성기업제품 구매를 의무화하고, 1인 견적에 의한 소액수의계약 금액 한도를 5천만원 이하(2인 견적에 의한 경우 1억 원 이하)로 설정 운영

☞ 주요 정의 및 적용 대상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 **(제 품)** 물품, 공사, 용역
- **(여성기업제품)**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중소기업자만 해당)
- **(여성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여성이 대표권이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
 1. 대표권이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라 한다)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 [자기의 명의로 소유하는 출자지분(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최대인 자를 말한다]인 「상법」상의 회사 (회사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 합한 출자지분이 최대인 회사를 포함한다)
 2. 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사업자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 가.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가 여성일 것
 - 나.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를 여성인 조합원이 출자하였을 것
 - 다. 이사장이 여성인 조합원일 것
 - 라. 이사장을 포함한 총 이사의 과반수가 여성인 조합원일 것
- **(적용대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포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중소기업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은행, 대한상공회의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1.3.4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 **관련 근거**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약칭: 장애인기업법)」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 공공기관의 장은 **연간 물품·용역·공사 구매총액의 1% 이상**을 장애인기업제품으로 의무 구매
 - 정부는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 의무화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2017년 장애기업 생산제품에 대한 구매목표비율을 1%로 상향 의무 적용함
 - *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구매비율 1% 이상 달성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부 장관과 별도협의 가능
 - * 장애인기업제품은 1%(물품, 용역, 공사 통합), 중증장애인생산품은 1%(물품, 용역), 표준사업장은 0.3%(물품, 용역)

☞ 주요 정의 및 적용 대상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 **(제 품)** 물품, 용역, 공사
- **(장애인기업제품)** 장애인기업이 직접 생산·제공 및 수행하는 물품·용역 및 공사 (중소기업자만 해당)
-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1.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고용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기업.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는 장애인고용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구매계획 및 실적에 장애인 생산제품이라도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시설, 표준 사업장 등으로 구분·관리가 필요
- **(적용대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포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중소기업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은행, 대한상공회의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1.3.5 창업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 **관련 근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8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창업기업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 공공기관의 장은 **당해연도 제품(물품·공사·용역) 구매총액의 8% 이상**을 창업기업제품으로 의무구매 해야 함(2021년부터 시행)

☞ 주요 정의 및 적용 대상

- **(제 품)** 물품, 공사, 용역
- **(창업기업제품)** 창업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
 - * 단, 창업자가 판매목적의 물품포장, 상품성 유지를 위한 추가작업 등 단순가공을 한 제품은 제외
- **(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 **(적용대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포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중소기업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은행, 대한상공회의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1.3.6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 **관련 근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 또는 용역 구매 시 사회적기업 제품(재화 및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해당 연도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과 해당 기관의 총 구매액에 대한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액 비율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주요 정의 및 적용 대상

- **(제 품)** 물품, 공사, 용역
- **(사회적기업 제품)**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및 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사회적기업이 생산하여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
 - '22년.9월 기준 4,090개소 인증, 3,436개소 활동 중(예비 사회적기업과는 다른 개념)
-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기업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 **(적용대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포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중소기업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은행, 대한상공회의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 * '21년 기준 861개소

사회적기업 대상 수의계약제도

-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의무화 강화를 위해 여성기업 우선구매제도와 동일하게 1인 건적에 의한 소액수의계약 금액 기준을 5천만원 이하를 한도로 상향(2인 건적의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수의계약 체결 가능)
 - 다만, 사회적기업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금액에서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취약계층 고용률 30%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는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 및 발급 가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참고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 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참고2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0조(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 ⑥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가목5)다)에 따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2호의 취약계층을 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30 이상 고용한 자를 말한다.

-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5호가목5)다)의 자(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기업등”이라 한다)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료부터 제6항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확인서 등(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에 한한다)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에 따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관할 지방자치단체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만, 제26조제1항제5호(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마.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여야 한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참고3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른 기업 및 조합의 취약계층 고용비율에 관한 고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마) 단서 및 제30조제1항제2호(나) 후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은 30% 이상으로 한다.
- 위 취약계층 고용비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및 조합에 적용한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 위 고용비율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이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여야 한다.

1.3.7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우선구매제도

☞ 관련 근거 : 「협동조합기본법」 제9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제품”이라 한다)의 해당 연도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과 해당 기관의 총 구매액에 대한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의 구매비율 등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 주요 정의 및 적용 대상

- (제 품)** 물품, 공사, 용역
-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설립인가 등)에 따라 기획재정부 및 주무부처의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여 제공하는 물품(재화) 및 용역(서비스, 공사 포함)

-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및 주무부처의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
- **(적용대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포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중소기업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은행, 대한상공회의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 사회적협동조합 대상 수의계약제도

-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의무화 강화를 위해 사회적기업 우선구매제도와 동일하게 1인 견적에 의한 소액수의계약 금액 기준을 5천만원 이하를 한도로 상향(2인 견적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수의계약 체결 가능)
 -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금액에서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취약계층 고용률 30%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 사회적협동조합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는 COOP 협동조합(www.coop.go.kr)을 통해 신청 가능

1.3.8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 **관련 근거**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약칭: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함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100분의 1을 초과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 있으면 그 비율을 말한다)이 되어야 함.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해당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4월 30일까지 공고하여야 함.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에서 그 계약을 대행할 수 있음.
 - 타 우선구매제도와 달리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은 일반기업이 아닌 중증장애인의 자활을 돕기 위한 사회복지 시설로서 특수성을 인정하여 수의계약과 전문적인 계약업무 처리 지원을 위해 별도의 대행기관을 통한 계약을 지원하고 있음.

☞ 주요 정의 및 적용 대상

- **(제 품)** 물품, 용역
- **(중증장애인생산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의 재활훈련시설
- **(중증장애인)** 주요 일상생활 활동을 현저히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 **(적용대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포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중소기업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은행, 대한상공회의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지정기준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는 생산시설의 경우에는 각 품목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10명 이상일 것. 다만, 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는 생산시설의 경우에는 각 품목별로 참여하는 장애인이 5명 이상이어야 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상시적으로 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70 이상이고, 그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다만, 중증장애인의 고용 및 근로를 통한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품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그 품목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3.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걸리는 총근로시간 중 장애인의 근로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시적으로 100분의 50 이상일 것
-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생산시설 지정 또는 재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1.3.9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 **관련 근거**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수익사업 지원 및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자립지원에 관한 훈령」(국무총리훈령 제696호, 2017. 10. 25., 타법개정)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공단이 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자체 확보할 수 있도록 **공단의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함

☞ 주요 정의 및 적용 대상

- **(자활용사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집단마을

- **(복지공장)** 자활용사촌 회원이 공동투자하여 제반시설을 갖추고 운영하는 복지사업장
 - 생산품목 : 국가보훈처장이 승인한 자활용사촌 복지공장 품목
 -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게시 : 자료공간 - 현황·통계 - 기타(자활용사촌 복지공장 및 생산품목현황)
 - 자활용사촌 구매액 : 복지공장에서 직접 구매한 금액
 - 자활용사촌 생산가능품목 총 구매액 : 자활용사촌에서 구매가능한 품목이지만 타 업체에서 구매한 금액과 자활용사촌에서 직접 구매한 금액을 합한 금액
- (적용대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1.3.10 녹색제품 의무구매제도

☞ **관련 근거**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녹색제품구매법)」 및 동법 시행령

- 공공기관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녹색제품이 있는 경우,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
 - * 다만, 현저한 품질저하, 공급불안, 긴급한 수요의 충당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의무구매에 예외를 인정
- 공공기관이 책임감을 갖고 녹색제품 구매를 이행하도록 매년 기관별 녹색제품 구매계획과 실적 공표를 의무화

☞ 주요 정의 및 적용대상

- (녹색제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66조제4항에 따른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표지제품, 우수재활용(GR)제품, 저탄소인증제품

구분(3종)	설 명
환경표지 제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우수재활용(GR) 제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구분(3종)	설 명
저탄소인증 제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인 제품

- **(적용대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지방공사,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지방의료원,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1.3.11 혁신제품 우선구매제도

📖 **관련 근거:** 「조달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 공공부문이 공공혁신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혁신제품과 기술을 먼저 구매하여 시범 사용함으로써, 기술혁신과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공공서비스의 수준을 제고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조달 방식을 지원하는 우선구매제도(법 제27조)
 - 공공부문이 혁신제품의 첫 구매자가 되어 조달시장 진출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 사회문제에 대한 혁신방안을 제시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정책

📖 주요 정의 및 적용 대상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 **(혁신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Fast Track 1, FT1), 혁신 시제품(Fast Track 2, FT2), 기술인정 혁신제품(Fast Track 3, FT3)으로 지정된 제품

유형(3종)	설 명
우수 연구개발 혁신제품 (FT1)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각 중앙관서(「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혁신 시제품 (FT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상용화 전 시제품(試製品) 중 초기 판로 확보 및 상용화 지원(기술개발 7단계 이상)이 필요하여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수요자 제안형과 공급자 제안형으로 구분)
기술인정 혁신제품 (FT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기타 조달정책 심의위원회에서 공공성과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NEP·NET, 우수특허제품, 공공기관 기술마켓 등)을 심의, 평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제품

- **(적용대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특별법인



1.4 우선구매제도 활용의 의의 및 현황

1.4.1 우선구매제도 활용의의

- 일반적으로 국·내외적으로 공공조달 영역 내에서 **우선구매제도**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여성 및 장애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기업, 국가적 선양과 예우가 필요한 보훈단체 그리고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제품 및 제조공급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임
- 따라서 우선구매 대상이 되는 제품과 이를 제조 및 공급하는 업체 및 단체들은 공공조달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되는 정부 및 지자체 등의 공공재정을 배분 받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됨
- 이러한 측면에서 우선구매제도 지원 대상 업체 및 단체들은 일반적인 조달업체 및 단체들과 달리 그들이 공급하는 물품, 용역, 시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직접생산확인기준 및 관련 우선구매 요건을 보다 엄격히 적용받고 이를 준수할 의무를 지니게 됨
- 우선구매제도를 통해 공급되는 물품들은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체들에 비해 공급기회, 대가보장 측면에서 일반기업들에 비해 경쟁우위를 확보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자생적인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밑바탕이 되는 기업의 유효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
- 그러나 우선구매제도 지원 대상 기업 및 단체들은 우선구매제도를 통한 공공조달 시장 진출 자체를 최종 목표로 설정하고 머물러 있는 전략을 채택하면 곤란함
 - 우선구매제도의 기본적인 목적과 취지가 단기적으로는 일반 기업 및 제품들에 비해 경쟁열위에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우선구매제도를 통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공급기회의 선점, 보다 좋은 조건의 공급계약 등을 통해 축적된 향상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수단 및 촉매제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1.4.2 우선구매제도 대상기업별 공공조달 활용현황

- 조달청 나라장터 기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 사회적약자기업 관련 공공구매 현황 중 사회적기업의 조달업체 등록 수 비중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남
- 최근 5년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회적기업의 수는 1,251개(17년) → 1,390개(18년) → 1,564개(19년) → 1,800개(20년) → 2,123개(21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공공조달 시장 진출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음.
- 2021년 12월말 기준 등록된 사회적기업 2,123개가 13,548억원(2020년: 12,480억원)의 공급실적 기록함(나라장터 집계 실적 기준)
 - 2021년 전체 사회적기업 제품 공공구매실적 18,171억원의 약 74.6%가 나라장터를 통해 계약집행 및 관리되고 있음(계약방법 비중 확대)
 - * 나라장터를 통해 집계되는 실적과 고용노동부 발표 실적집계의 차이는 계약에 의한 방법을 통해 집행되는 실적만이 나라장터에서 집계되기 때문임
 -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위한 입찰 참가기회의 확보관점에서 중앙조달 기관인 조달청 이외에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학교기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 자체조달 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수요가 약 92% 이상이므로 개별 수요기관의 물품공급 정보 확보와 차별화된 공급전략 마련 필요
- 지원대상이 구체적이고 제한/지명경쟁 가능 구매부문, 특화된 기술 및 품질보유 우선구매제도 기업군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구매실적을 나타냄
- 사회적기업의 경우 지원대상 및 공급 가능한 품목을 고려할 경우 소기업 및 소상공인 범주 내에서 평균적인 공급규모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조달대상별 공급실적 현황 비교]

기업구분 (2021년말 기준)	나라장터 등록업체수 (개)	조달대상별 공급실적금액(억원)					
		물품 실적금액	공사 실적금액	일반용역 실적금액	기술용역 실적금액	합계 실적금액	평균공급 실적금액
여성기업	33,473	53,194	52,438	21,809	5,831	133,271	3.98
장애인기업	4,063	14,861	6,140	2,502	624	24,126	5.94
사회적기업	2,123	8,247	645	4,574	82	13,548	6.38

* 자료: 조달청 “온통조달” 분석자료(한국조달연구원, 2022.10)

- 사회적기업에 특화된 새로운 상품과 용역의 개발 및 수요를 견인하지 못할 경우 현재 주어진 공공구매 예산 범위 내에서 기존 사회경제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공공구매제도와 경쟁해야 하는 상황임
- 그러나 사회적경제 영역에 속한 우선구매제도가 성장의 내실을 살펴보면 2017년 이후 최근 5년간 사회적기업은 타 우선구매제도 대비 실적건수와 공급금액 관점에서 양적/질적 성장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 * 공급건수와 금액 규모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다수의 사회적기업이 수주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은 필요함
- 2017년 대비 2021년 여성기업의 경우 나라장터 공급건수 증가율은 78.2%p 감소하였고, 평균공급금액도 약 28.3% 감소한 반면, 사회적기업은 공급건수 증가율은 약 7.8%p 증가하면서 평균공급금액 역시 29.5% 증가하여 계약건수와 개별 공급 건별 실적금액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됨.

[연도별 사회적경제영역 우선구매제도 성장 변동 현황]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건수 증가율 (%)	건당 평균 성장을 (백만원)	총실적 증가율 (%)	건수 증가율 (%)	건당 평균 성장을 (백만원)	총실적 증가율 (%)	건수 증가율 (%)	건당 평균 성장을 (백만원)	총실적 증가율 (%)	건수 증가율 (%)	건당 평균 성장을 (백만원)	총실적 증가율 (%)	건수 증가율 (%)	건당 평균 성장을 (백만원)	총실적 증가율 (%)
여성 기업	98.0	18.2	23.6	14.6	15.7	-0.9	28.5	14.4	17.7	23.6	13.9	19.0	19.8	13.0	12.7
장애인 기업	80.0	15.0	21.1	6.9	14.7	4.5	14.6	15.9	24.6	13.3	16.3	15.9	22.7	15.2	14.0
사회적 기업	101.8	8.9	33.4	9.4	9.4	16.4	19.1	9.7	23.1	13.2	12.4	44.6	17.9	11.5	8.6

* 자료: 조달청 “온통조달” 분석자료(한국조달연구원, 2022.10)

[연도별 사회적경제영역 건당 공급실적 감소현황]

2017 → 2021	건당 실적 증감금액	증감비율
여성기업	- 5,146,380	-28.30%
장애인기업	154,410	1.03%
사회적기업	2,609,717	29.49%

* 자료: 조달청 “온통조달” 분석자료(한국조달연구원, 2022.10)

- 여성 및 장애인기업 등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이전에 추가가치가 유사한 타 우선 구매제도의 수혜를 받는 기업 및 단체들이 먼저 진입하여 실적과 경험을 보유한 상황에서 사회경제적 기업이 달성한 질적 균형을 유지하는 성장을 지속하고 다수의 사회적기업이 우선구매제도 효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제도의 활용 및 확대 전략을 마련하여야 함
- 공공기관 담당자들이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수의 공공구매제도 지원대상 기업들이 동일한 물품과 용역을 구매를 요청하는 상황에서 계약 또는 구매담당자에게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의 필요성과 제품의 경쟁력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1.4.3 사회적기업 우선구매제도 활용현황

- 2021년 말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 된 사회적기업은 총 2,123개로 유효한 전체 인증 사회적기업 3,436개(2021년말 기준) 대비 약 67.6% 수준의 공공조달 시장 참여율로 매년 소폭 증가 추세 확인됨.
- 지역별로는 서울, 광주, 대전, 세종시가 70% 이상의 사회적사회적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고 전남, 경북, 경남 등이 50% 중반대 이하로 상대적으로 참여율이 낮음
- 공공조달 참여기업의 단순 평균 공급실적(조달청 중앙조달실적 기준)은 약 6.4억원(사회적기업제품 합계공급실적/사회적기업 나라장터 등록업체 수)이며 평균 이상 공급 지역은 대전, 세종, 경기, 충북, 전남, 경북, 경남의 7개 지역인 것으로 확인됨
- 인증기업 소재지별 수요 및 공급 특성(수요기관, 대상품명 등) 분석을 통한 벤치마킹 및 차별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음

구분 (2021년말 기준)	등록 업체기준 현황(개)				공급실적금액 기준 현황(억원)				
	인증 업체수	나라장터 등록업체수*	등록 비율	업체당 평균 공급 금액	합계 공급 실적 금액	물품 실적 금액	공사 실적 금액	일반 용역 실적 금액	기술 용역 실적 금액
전체	3,141	2,123	67.6%	6.4	13,548	8,247	645	4,574	82
서울특별시	550	401	72.9%	5.7	2,286	1,243	133	883	26
부산광역시	143	98	68.5%	5.2	509	412	29	69	1
대구광역시	115	71	61.7%	5.7	408	163	8	237	1
인천광역시	199	130	65.3%	3.8	498	337	33	128	0

1.5 유사분야 우선구매제도와 현황

- 2012년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에 대한 공공기관의 실적 및 계획 보고 법제화 이후 연 평균 29.3% 수준의 공급확대를 이루었음
- 특히 2017년도는 사회적기업 인증기업 중 조달청 나라장터에 조달업체로 등록된 비율이 당해 연도 사회적기업 총등록 수 대비 사실상 100% 수준 달성으로 신규 사회적기업이 바로 공공조달 시장으로 진출하는 현상이 일반화 되고 있음
- 이러한 실적 확대는 2012년 이후 매년 신규 등록되는 사회적기업 증가와도 동일한 추세로 실질적인 참여확대에 따른 사회적기업 제품의 공공조달 시장 공급 기회가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는 구매목표비율이 법률에 의해 정해지는 의무구매가 아닌 임의구매로 2021년말 총 구매액 대비 2.77% 수준으로 2020년 2.85% 대비 약 0.08%p 소폭 감소했으나 공공기관 평가 등을 통한 일반적 권고치 3%에 근접하는 수준인 것으로 판단됨(점진적 성장세로 전환 중임)
* 코로나19 백신 구매액(3.2조원) 제외시 21년 실질적 구매율은 2.92%
- 그러나 2012년 이후 전체 공급실적 증가율 29.3% 대비 2017년 기준 최근 5년 증가율은 19.8%로 9.5%p 감소하는 추세로 초기 급격한 성장에서 점진적 성장추세로 전환 중임.

구분 (2021년말 기준)	등록 업체기준 현황(개)				공급실적금액 기준 현황(억원)				
	인증 업체수	나라장터 등록업체수*	등록 비율	업체당 평균 공급금액	합계 공급 실적금액	물품 실적금액	공사 실적금액	일반 용역 실적금액	기술 용역 실적금액
광주광역시	133	98	73.7%	3.5	340	277	15	47	1
대전광역시	90	63	70.0%	13.9	873	777	9	81	6
울산광역시	105	65	61.9%	5.1	332	255	5	72	0
세종특별자치시	24	18	75.0%	21.6	389	195	1	193	1
경기도	554	364	65.7%	8.2	2,995	1,191	137	1,656	10
강원도	178	100	56.2%	5.0	505	339	16	147	2
충청북도	130	75	57.7%	7.4	554	328	26	187	13
충청남도	125	78	62.4%	6.1	476	309	16	150	1
전라북도	181	105	58.0%	4.9	514	220	24	270	0
전라남도	169	93	55.0%	8.5	790	564	37	186	2
경상북도	208	99	47.6%	12.0	1,186	1,009	84	91	3
경상남도	154	78	50.6%	9.4	729	512	61	144	12
제주특별자치도	83	45	54.2%	3.6	164	118	12	33	2

* 나라장터 등록업체수 중 '미분류' 142개 업체(전체 2,123개에는 포함)는 분석 제외함.

** 자료: 조달청 "온통조달" 분석자료(한국조달연구원, 2022.10)

- 현재 상대적으로 등록된 사회적기업이 많지 않고 공급실적이 적은 지자체의 경우 향후 점진적으로 구매금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구매계획, 기 공급 물품 과 용역의 종류, 공급기업 등을 분석하여 자사에 차별화된 경쟁 요소 마련 필요

[연도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및 비중 변화]

구분	총 구매액 [백만원, A]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백만원, B]	비율[% , B/A]	전년대비 증가율
2012년 실적	35,991,782	191,633	0.5	-
2013년 실적	38,858,926	263,186	0.68	37.34%
2014년 실적	37,225,488	355,026	0.95	34.90%
2015년 실적	38,496,886	595,727	1.55	67.80%
2016년 실적	41,117,067	740,139	1.80	24.24%
2017년 실적	46,309,231	942,800	2.04	27.38%
2018년 실적	46,755,468	1,059,549	2.27	12.38%
2019년 실적	51,255,571	1,282,950	2.50	21.08%
2020년 실적	56,872,896	1,622,458	2.85	26.46%
2021년 실적	65,501,165	1,817,072	2.77*	12.00%

* 자료: 연도별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고용노동부, 2012~2022.04)

* 코로나19 백신 구매액(3.2조원) 제외시 실질적 구매율은 2.92%

- 특히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실적 및 계획 관리가 법제화 된 2012년 전후 인증 사회적기업은 그 이전 대비 약 1.4배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구매목표비율이 1.55%를 초과한 2015년부터 사회적기업의 나라장터 등록비율이 증가하여 2017년 이후 유효한 전체 인증 사회적기업의 약 70%가 나라장터에 등록한 것으로 나타남

[최근 5년간 사회적기업의 나라장터 등록현황]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나라장터 등록기업수(A)	1,251	1,390	1,564	1,800	2,123
등록기업 증가	584	139	174	236	323
인증기업수(B)	1,674	1,975	2,366	2,646	3,141
인증기업 증가	-	301	391	280	495
등록비율(A/B)	74.73%	70.38%	66.10%	68.0%	67.6%

* 인증 사회적기업수는 2021년 12월말 현재 유효한 사회적기업을 기준으로 산정함.

** 자료: 조달청 “온통조달” 분석자료(한국조달연구원, 2022.10)

- 2017년 이후 중소기업 및 사회적경제적 약자기업 등에 대한 우선구매제도의 확장적 시행과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서 사회적가치 평가를 강화한 결과 나라장터 실적기준 2017년 대비 2021년 공급건수는 약 5만여건 증가하여 약 74%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

[최근 5년간 사회적경제영역 우선구매 실적 변화]

2017년 대비 2021년 변화	계약건수 증가 수(건)	공급건수 증가 비율	공급실적 증가 금액(억원)	공급실적 증가 비율
여성기업	553,521	118.14%	48,066	56.41%
장애인기업	65,763	70.30%	10,104	72.06%
사회적기업	50,203	73.82%	7,528	125.07%

* 자료: 조달청 “온통조달” 분석자료(한국조달연구원, 2022.10)

- 특히 동기간 사회적경제기업의 구매실적 금액 증가 역시 약 0.75조원, 약 125% 성장하였고 이는 유사 우선구매 분야로 간주되는 여성기업과 및 장애인기업과 비교 시 2배 내외 성장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특히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가 법정 구매목표비율이 설정된 의무 구매제도인 점을 고려하며 구매목표비율이 임의 설정된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가 확대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음
- 사회적경제 영역에 대한 우선구매 확대 정책이 본격화 되면서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 제도를 포함하여 주요 우선구매제도의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를 제외한 모든 제도가 2021년 구매목표비율이 감소하면서 성장세가 약화되고 있음
- 사회적기업제품의 경우는 법률상 구매목표비율(공공기관 및 지자체합동평가 등을 통해 3% 수준 권고)이 설정되지 않았으나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2021년 공급실적 금액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구매비율은 소폭 감소하였음.

[우선구매 대상별 구매목표비율 및 공급실적 현황]

우선구매대상* (2021년)	근거법령	강행성 여부	구매목표비율	실적금액 (억원)	비율 (%)	소관부처
중소기업제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의무	총구매액 대비 50% (전년대비 -2.3%p 감소)	1,195,463	77.6	중소벤처기업부
중증장애인 생산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의무	총구매액 대비 1% (전년대비 -0.13%p 감소)	7,044	0.99	보건복지부
녹색제품 (친환경상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의무	구매가능 총구매액대비 100% (전년대비 -0.68%p 감소)	38,533	-	환경부
기술개발제품 (NEP·NET포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의무	중소기업제품 구매액 대비 15% (전년대비 2.2%p 증가)	65,777	16.9	중소벤처기업부
장애인기업제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의무	총구매액 대비 1% (전년대비 0.0%p 유지)	24,391	1.6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제품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의무	총구매액대비 물품5%/공사3% (전년대비 -0.3%p 감소)	128,367	8.3	중소벤처기업부
사회적기업제품	사회적기업 육성법	임의	- (전년대비 -0.08%p 감소)	18,171	2.77	고용노동부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협동조합 기본법	임의	- (전년 동)	3,090	0.47	기획재정부
창업기업제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의무	총구매액 대비 8%수준 (2021년 시행)	27,000	1.80	중소벤처기업부

* 자료: 각 부처별 우선구매실적 보도자료 분석, 한국조달연구원, 2022.10

1.6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와 현황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관심 증가와 적극적인 구매행정으로 2019년도 구매액은 최초로 100조원대로 진입한 이후 2021년 구매액은 119.7조원으로, 최근 3년 연속 총 100조원이 넘는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함

[전체 공공조달 구매액 대비 조달대상별 중소기업 공급실적 현황]

(단위 : 조원, 개)

구분	'19년	'20년	'21년
중기제품 구매액(비율)	105.0(77.8%)	116.3	119.7
총 구매액	135.0	145.8	154.2
대상기관	837	837	849

* 자료: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액 3년 연속 100조원 돌파"보도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2.04

- 그러나 2021년 우선구매대상인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의 공공기관 구매실적은 기술개발제품을 제외하고는 '20년 대비 소폭 감소 및 유지 수준임.
 - 기술개발제품 구매액은 6조 6천억원(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6.9%)으로 2020년 대비 약 2.3%p(약 1조원 증가) 증가하였고 법정구매목표비율(기술개발제품 구매액 / 중소기업물품 구매액) 15%를 초과
 - 여성기업제품 구매액은 12조 8천억원(총구매액의 8.3%)으로 2020년 대비 -0.3%p(약 0.3조원)소폭 감소하였으나 법정구매목표비율(물품 5%, 용역 5%, 공사 3%)을 초과
 -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액은 2조 4천억원(총구매액의 1.6%)으로 2020년 과 구매비율은 1.6%로 동일하나 구매금액은 약 1.1천억원 증가하였고, 법정구매율(장애인기업제품 구매액 / 총 구매액) 1%를 초과

제2장

공공(국가 및 지방) 계약의 이해

- 2.1 공공계약의 의의와 특징
- 2.2 계약의 종류
- 2.3 내자구매(물품 및 용역) 계약
- 2.4 다수공급자계약(MAS: Multiple Awarded Schedule)제도
- 2.5 서비스 공공조달플랫폼 '이음장터'



[중소기업 공공조달 구매액 대비 정책지원 분야별 공급실적 현황]

(단위 : 조원, %)

구분	'20년 실적			'21년 실적			구매액 증가율(% ('20년→'21년))
	총구매액 (중기물품)	구매액	비율(%)	총구매액 (중기물품)	구매액	비율(%)	
기술개발제품	(47.7)	5.6	14.6	(52.5)	6.6	16.9	17.9
여성기업제품	145.8	12.5	8.6	154.0	12.8	8.3	-0.3
장애인기업제품	145.8	2.3	1.6	154.0	2.4	1.6	0.0

* 자료: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중소기업유통센터, 2022.

2.1 공공계약의 의의와 특징

2.1.1 계약의 의의

☞ 계약의 개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되어 상대방인 사인(私人)과 공사, 제조, 구매,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제반 수요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사법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함

☞ 계약의 원칙

-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함
-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이므로 민법상의 일반 원칙인 ①계약 자유의 원칙, ②신의 성실의 원칙, ③사정변경의 원칙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등이 적용되며, 이에 대한 다툼도 민사소송 대상임

☞ 계약의 특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인간의 계약과는 달리 공공복리 추구라는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체결되며, 이에 따라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을 운영하고 있음
- 계약업무담당자의 자의적인 행위를 방지하고 회계 질서를 엄정하게 유지하는 동시에 예산 집행의 공익성·공정성·경제성 확보가 요구되므로 계약관계 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되어야 함

☞ 공공계약 관련 법령체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체계
① 법 35조문 ② 시행령 10장 118조문 ③ 시행규칙 8장 87조문
④ 행정규칙 154건(예규, 고시 등)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체계
① 법 43조문 ② 시행령 10장 140조문 ③ 시행규칙 9장 88조문
④ 행정규칙 29건(예규, 고시 등), 자치법규 529건

☞ 공공계약 적용대상 기관

- 공공구매제도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공구매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공공계약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함
- 정부 및 지자체 모두 일반적인 시각으로는 국가 또는 정부기관으로 볼 수 있으나 계약관계 법령상으로는 국가 및 중앙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의 적용을 받음
- 이는 공공구매를 통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입찰 및 낙찰의 방법과 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회적기업이 공급하고 있는 또는 향후 공급하고자 하는 지역과 기관이 어떤 계약법령의 적용을 받는지 명확히 알고 업무를 추진하여야 함

● 국가계약법 적용대상 기관

1) 직접 적용 대상기관

- * 국가기관
 - 중앙관서(국고금관리법 제2조 및 국가재정법 제6조에 의한 기관) 및 그 산하기관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립 유치원 및 국립학교, 국가기관이 계약 사무를 위임 위탁한 기관법인

2) 준용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기타 다른 법령, 규정 등에서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하는 기관

● 지방계약법 적용대상 기관

1) 직접 적용 대상기관

- * 지방자치단체(지방계약법 제2조)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사무를 위임 위탁한 기관 법인
- * 교육행정기관(지방계약법 제3조)
 - 시·도 및 시·군·구의 교육청
 - 공립 초·중·고등학교

2) 준용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 지방공사·공단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 지방자치단체의 조합
- 기타 다른 법령, 규정 등에서 지방계약법령을 준용하는 기관

2.2 계약의 종류

☞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

- 대상 : 물품·공유재산의 매각, 청사임대, 리스 등

☞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과 세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구분

구 분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	세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이상으로 최고가격 낙찰자	최저가, 적격심사, 협상에 의한 계약 등
계약보증금	대가를 일시에 선납받는 경우 불필요	필요
대가지급	선납원칙	계약이행후 지급, 선금지급
입찰보증금	필요(면제 가능)	필요(면제 가능)
예정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성 • 일반재산인 경우 2인 이상 감정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성 • 2억(전문1억원, 전기공사8천만원)미만공사, 5천만원 미만 용역·물품 수의계약 시 생략가능
하자보증	불필요	필요
지연배상금	부과	부과



세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계약목적물별	계약체결형태별	경쟁형태별	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제조·구매계약 • 용역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용역 - 일반용역 • 공사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공사 - 전문공사 -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 - 소방공사 - 문화재공사 - 환경관련공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정계약,개산계약 • 총액계약,단가계약 • 장기계속계약,계속비계약,단년도계약등 • 회계연도개시전계약 • 단독계약,공동계약 • 종합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입찰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경쟁입찰 - 제한경쟁입찰 - 지명경쟁입찰 • 수의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액에의한구분 - 내용에의한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가입찰 - 적격심사입찰 - 턴키,대안입찰 - 기술제안,공모 - 협상에의한계약 - 최적가치 낙찰 • 용역,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상에의한계약 - 경쟁적대화에 의한계약 - 적격심사 - 2단계 경쟁입찰 - 희망수량경쟁입찰 - 설계공모 <p>※ 중소기업자간경쟁입찰</p>

- 세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중 현재 사회적기업에 대한 우선구매실적 집계는 물품 및 용역 계약 구매실적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음



2.3

내자구매(물품 및 용역) 계약

공공조달 대상 중 물품과 용역을 통합하여 내자라고 하고 이를 구매하는 방법을 내자구매라고 함

사회적기업들이 일반적으로 공공조달 시장의 진출은 물품과 용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효과적인 진출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계약체계와 세부적인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

2.3.1 내자구매 개요

정의: 내자라 함은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거나 국내자본으로 구매하는 물품 및 용역을 말함

조달대상으로서 물품의 분류는 제조와 공급물품으로 구분됨

- 제조물품은 직접생산확인요건을 갖춘 조달업체가 설계도, 규격서 등에 따라 제작 및 제조하여 공급하는 물품임
- 공급물품은 상용화 및 규격화 수준이 높은 시중 일반 거래물품으로 별도의 제작 요구 없이 사전 생산된 물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물품임

조달대상으로서 용역의 분류

- 용역은 업무편의상 기술용역과 일반용역으로 구분되는데, '기술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8호·9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1조의 2·3,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등에 규정한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이며 이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용역은 '일반용역'으로 분류하고 있음

용역의 종류

구분	종류
일반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화사업용역 • 폐기물처리 용역 • 시설물 관리, 청소, 경비 용역 • 조경관리 용역 • 육상운송 용역 • 학술연구 용역 • 전시 및 행사대행 용역 • 광고 및 디자인 용역 • 감리 및 검사 용역 • 장비 유지·보수 용역 등 • 보험 용역
기술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술용역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용역으로서 엔지니어링 활동 • 기타 개별법에서 정한 기술용역 등



기술용역의 종류

○ 건설기술용역(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

-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측량포함)·설계(건축설계 제외)
- 시설물의 검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유지·보수·철거·관리 및 운용
- 건설사업관리
- 건설공사에 관한 시험·평가·자문 및 지도
- 건설장비의 시운전
- 건설기술에 관한 타당성 검토 등

○ 기술용역으로서 엔지니어링활동(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1호)

-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연구·기획·타당성조사·설계·분석·구매·조달·시험·감리·시운전·평가·자문·지도와 시설물의 검사·유지 및 보수에 관한 활동 및 그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

○ 기타

- 건축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의한 설계·공사감리
-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의한 설계·감리
- 정보통신공사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의한 설계·감리
- 소방시설공사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설계·감리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의한 측량

- 일반용역의 종류: 일반적으로 기술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용역은 일반용역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정보통신용역은 SW사업 또는 정보기술용역이라는 별칭으로 전문적으로 관리되고 있음

정보화사업용역

» 개요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동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역무 기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수단을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하며 관련 장비의 유지보수용역과 소프트웨어관련 사업으로 구분됨

» 업무영역

ICT사업컨설팅

- 조직, 기관의 프로세스 개선 및 정보기술체계 구축을 위한 현황 분석 또는 평가 후 개선방안, 대책 수립, 이행 계획 수립 등 추진 전략 및 해결책을 찾고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용역
- ※ ISP, PMO, 정보시스템감리 등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용역
- 인터넷서비스가 원활히 되도록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 등을 개발하는 용역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정보교환 등의 목적을 위해 시스템 운영 환경을 구축하는 용역
- 단말기 등을 접속하기 위해 사용되는 단말기기, 선로 및 교환기 등으로 구성되는 전송매체를 구축하기 위한 용역
- 정보보호를 위하여 보안솔루션 및 장비 등을 도입하여 보안환경을 구축하는 용역

운영 및 유지관리

- 기 구축된 정보시스템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관리하는 용역으로, 시스템 및 데이터의 업데이트 등의 용역
- 시스템 운영 및 관리의 전반을 전문 IT기술 기반을 통해 위탁 관리하는 용역

DB구축 및 자료입력

- 기록물, 도면, 문서 및 공간정보에 대하여 측량, 탐사, 촬영, 스캔 등을 통해 데이터를 구축하는 용역

디지털콘텐츠 개발

- 디지털 콘텐츠를 개발 또는 제작하는 서비스용역

폐기물처리용역

» 개요

폐기물처리용역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카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영업을 말함

» 종류

생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

사업장폐기물

-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

지정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 의료폐기물이랑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폐기물처리업의 종류

폐기물 수집·운반업

-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영업

폐기물 중간처분업

-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처분, 기계적 처분, 화학적 처분, 생물학적 처분, 그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중간처분하는 영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 폐기물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역 배출은 제외한다)의 방법으로 최종처분하는 영업

폐기물 종합처분업

-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분과 최종처분을 함께 하는 영업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하는 영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

시설물관리/청소/경비용역

» 개요

청소(위생관리)업무, 시설경비업무, 시설(물)관리업무 및 이에 준하는 용역중 각각 또는 2종류 이상의 용역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나의 같은 계약으로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함

» 종류

시설물관리

-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본체와 동 부속시설물(소방, 배전, 공조, 급·배수시설 등)에 대한 운전, 점검 및 유지보수와 에너지의 적정공급 등 효율적 관리를 통해 시설물 이용자 및 주변 일반주민들에게 안전하며 경제적인 시설환경을 조성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

시설물경비

- 국가중요시설, 산업시설, 공공시설 등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또는 일부를 말함

청소·위생관리

-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물과 동 옥·내외 부대시설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말한다. 다만, 개별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방역, 부대소각로 운영관리 등을 포함할 수 있음

육상운송용역

» 개요

육상운송장비(궤도차량 및 고정식 장비 제외)를 이용하여 인원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으로서 운전자가 딸린 육상운송장비의 임대활동을 포함함

» 종류

- 화물운송
- 인원운송
- 육상운송장비 임대 등
- 차량 입찰
- 택배 용역

학술용역

» 개요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이 광범위하고 심층있게 적용되어야 할 비정형화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정부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

» 종류

- 사업 또는 산업의 타당성 조사연구(발전방향 연구 포함)
- 조직설계·제도도입 등의 타당성 조사연구(조직운영, 제도개선 방안 연구포함)
- 산업 또는 사업의 입지분석
- 경영분석·경영진단·경영평가
- 원가계산
- 수요·공급의 예측과 분석
- 각종 공공요금 조정수준의 검증분석 용역
- 기타 이에 준하는 용역

전시 및 행사대행용역

» 개요

각종 전시회 및 행사를 기획·조직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전시장행사와 관련된 조사, 기획, 설계, 구성, 제작, 시공감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을 맡아 이러한 시설의 내장, 외장, 전시장치, 기계 설비(음향, 영상 등) 등을 종합적으로 구성·연출하는 사업도 포함됨

» 종류

행사 기획 및 대행 용역

- 박람회, 축제, 회의, 기념식, 포럼 및 워크숍 등 각종 행사를 대행해주는 서비스

전시관 및 홍보관 설치 용역

- 전시회, 박람회 등의 전시관 또는 홍보관 설치 용역

장비 유지보수용역

» 개요

장애발생에 따른 발생원인 파악·조치, 정지 및 기능저하를 미연에 방지, 사용방법의 개선 등을 통해 운영효율의 극대화 및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용역을 말한다. 이를 위해 유지·보수업체는 정기 예방점검, 부품의 정기적 교환, 이력관리, 신속한 고장처리, 기술상담 등의 업무를 이행함

» 종류

- 정밀·계측·관측장비 유지·보수
- 통신장비 유지·보수
- 기타 각종 장비 유지·보수 등

광고 및 디자인용역

광고용역

» 개요

광고주를 대리하여 광고에 관련된 시장조사 및 광고기획, 광고물제작, 매체선택, 매체와의 광고 계약, 광고물을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정기간행물, 신문 등의 광고매체에 광고하는 업무를 총괄적으로 대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광고용 설치물(광고탑 등)을 임대하는 활동도 여기에 포함됨

» 종류

인쇄광고용역

- 기업이나 개인, 단체가 상품, 서비스, 이념, 정책 등을 인쇄물을 통해 홍보하는 광고 관련 용역을 말함

방송광고용역

- 기업이나 개인, 단체가 상품, 서비스, 이념, 정책 등을 방송을 매체로 하여 홍보하는 광고 관련 용역을 말함

공중광고용역

- 전시광고물을 기획·제작하여, 옥 내외 간판 또는 차량, 상점 등 전시공간에 전시구조물을 게시하는 용역

인터넷·통신광고용역

- 기업이나 개인, 단체가 상품, 서비스, 이념, 정책 등을 인터넷 및 통신 매체를 통해 홍보하는 광고관련 용역

디자인용역

» 개요

특정 메시지, 이미지 또는 개념을 시각적으로 전달하거나 가상현상등을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전달 또는 표현하기 위한 시각전달매체를 기획, 디자인 및 관리하는 용역을 말한다. 비디오화면 구성 및 기업로고 등의 디자인, 기술적인 정확성 또는 해석기술이 요구되는 설명도 및 삽화를 제작하는 업무도 포함됨

2.3.2 내자구매 조달요청 범위

» 조달요청 대상 및 범위

구분	조달청 구매	수요기관 구매
국가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억원 이상의 물품 및 용역 및 임차, 대여 포함 단기계약된 물품(MAS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억원 미만의 물품 긴급구매물자(천재/지변 등) 국방목적 수행 등 비밀을 요하는 물자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함이 적합한 용역 조달청장이 구매위임한 경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료품류, 동·식물품류, 농수산물 - 무기 등 총포, 화약류와 그 구성품 - 차량용 유류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기계약된 물품(MAS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기계약 이외의 물품
공기업·준정부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추정가격 기획재정부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달청 구매 대상 이외의 물품

사회적기업의 활용방안

- 사회적기업으로서 공공조달 시장을 통해 수요기관(공공기관)에 물품과 용역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급기회와 관련된 구매 주체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 기본적으로 국가기관으로 분류되는 모든 수요기관은 1억원 이상 물품 및 용역의 입찰과 다수공급자계약을 포함하여 단기계약 된 물품에 대해서는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해야 함
 - * 특히 다수공급자계약물품의 경우 금액 기준과 상관없이 모든 국가기관이 조달청 종합쇼핑몰을 통해 물품을 구매하므로 사회적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제도로 볼 수 있음
- 이외 물품 및 용역에 대해서는 수요기관이 자체적으로 구매를 하므로 구매계획, 입찰 정보 등에 대해서는 개별 수요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입찰공고 등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 * 기본적으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인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정보가 게시되나 구매와 관련된 세부적인 절차는 수요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 가능함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조달청이 아닌 각 지자체별 자체 조달을 통해 물품과 용역의 구매가 가능하나 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해 조달청에 등록된 물품이 있는 경우 가급적 종합쇼핑몰을 이용해서 구매하고 있음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과 같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기관들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1억원) 이상 경우에만 조달청을 통해 구매하여야 하나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으로 등록된 경우 조달청 종합쇼핑몰을 통한 구매가 일반적임

2.3.3 내자구매 계약방법

계약방법 분류

구분	계약방법	해당사항
일반경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정한 자격을 가진 희망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토록 한 후 그 중에서 국가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입찰방식의 기본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해 입찰목적물의 제조·공급에 필요한 시설,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자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등을 받은 자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제한경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지역 중소기업자 여부 등에 의하여 입찰참가자의 가격을 제한하여 입찰케 하는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 제조 용역에 대한 지역제한 특수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 제조로 물품제조실적 제한 중소기업간 경쟁지정물품 재무상태 등에 의한 제한입찰
지명경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등에서 경쟁입찰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케 하는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의 성질·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기술 실적을 갖춘 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1억원 이하의 물품제조사 ks 표시품, 재활용제품 등 제조 구매시 중소기업간 경쟁지정물품 5인 이상 지명하여 2인 이상 참가승락

일반경쟁계약

- 계약대상물품의 규격 및 시방서와 계약조건등 계약내용을 널리 공고하여 일정한 자격을 가진 불특정 다수인의 입찰희망자를 모두 경쟁입찰에 참여시켜 국가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 계약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의하도록 규정

제한경쟁계약

- 일반·지명경쟁계약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경쟁에 따른 장점을 취함으로써 계약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기 위한 제도로서 일반 및 지명경쟁의 중간적 성격의 계약제도

○ 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장 제한경쟁입찰의 운용

○ 대상

-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
-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구매계약
-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제조·구매·용역, 기타계약으로 지역제한이 필요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 (중소기업자간 경쟁대상 품목)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 제한기준

- 실적에 의한 제한, 기술보유상황에 의한 제한, 지역제한, 중소기업보호를 위한 제한, 재무상태에 의한 제한 등

지명경쟁계약

- 계약담당공무원이 신용과 실적 등에 있어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특정다수의 경쟁참가자를 지명하는 입찰방법에 의거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방법이며, 제한경쟁과 함께 일반경쟁 계약제도에 대한 예외적인 방법
- 이 제도는 신용과 실적 및 경영상태가 우량한 업체를 지명하기 때문에 계약이행에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매계약에 소요되는 경비 절약 및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한편 비교적 긴급 구매의 장점이 있음. 다만 입찰참가자를 지명함에 있어 특정인이 지명됨으로서 특혜 시비와 경쟁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명에 신중을 기하여야 함

○ 근거

- 근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사회적기업의 활용방안

-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위해 입찰 시 경쟁의 방법을 기준으로 한 계약은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의 방법이 일반적임
- 중소기업자간경쟁제도, 소기업우선조달제도 등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물품 및 용역 입찰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입찰 및 계약이 진행되는 것임
- 사회적기업으로 50인 미만의 소기업 또는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물품 및 용역 입찰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들만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입찰 및 계약이 진행됨

☞ 수의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은 계약상대자를 결정함에 있어 경쟁입찰 방법에 의하지 않고 특정인을 계약상대자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경쟁계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계약제도이므로 계약 이행이 가능한 자가 1인뿐이거나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 소액이어서 경쟁 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구분	개념	참가자격 및 기준
수의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재지변 등 긴급수요비밀유지·추정 가격 5천만원 이하인 물품 용역생산 소지자가 1인인 물품 등에 대하여 특정인을 계약상대자로 선정하여 그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특수 목적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등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 비밀물자 • 특정인의 기술 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등으로 인하여 경쟁할 수 없는 경우 • 5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 구매, 용역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제조 공급하도록 하는 경우 <참가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경쟁 참가자격과 동일함
재공고에 의한 수의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가 없거나 입찰자가 있어도 낙찰자가 없어 유찰이 되는 등 입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실시하는 계약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소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기타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음)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참가자는 물론 당해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자로서 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 <참가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경쟁 참가자격과 동일함

사회적기업의 활용방안

- 공공조달 입찰에서 경쟁의 방법 이외에 특정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비경쟁적 방법인 수의계약을 통해 물품을 공급할 수 있음
- 현재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공공조달 일반 또는 우선구매제도에서 의무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야만 하는 물품 및 용역 입찰은 없음
-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반드시 체결해야하는 강행규정이 아님) 경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의 각항 각호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26조의 각항 각호에 따라서 엄격히 적용되어야 함
- 2015년부터 수의계약 중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에 대한 1인으로부터 견적을 받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물품 및 용역의 수의계약 상한 기준 금액이 2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되었음
 - * 사회적기업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여성기업 우선구매제도와 동일하게 1인 견적에 의한 소액수의계약 금액 기준을 5천만원 이하로 한도 상향(사회적기업이 5천만원 이하 입찰에서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기타 계약체결 형태에 따른 분류

계약구분	내용
계약이행 기간	당해연도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연도 세출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통상적 계약
	장기계속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 총사업에 대한 범위는 확정되었으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로서 총이행 금액을 부가하여 계약을 체결하되,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계약
	계속비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사업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고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으로 총낙찰 금액으로 계약체결하고 연부액을 부가
계약금액 산정방식	확정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체결 이전에 예정가격 등을 작성하고 입찰(또는 시담)을 통해 계약 금액을 확정 하는 일반적인 계약의 형태
	개산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정가격을 미리 확정하기 어려운 개발 시제품, 제조계약에 대하여 계약이행 후 계약금액을 정산하는 조건으로 체결하는 계약
계약이행 주체	사후원가 검토 조건부 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미리 정할 수 없는 일부 비목을 계약 이행 후 원가를 검토 하여 정산하는 계약
	단독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명만이 계약자로 결정되는 가장 일반적인 계약
	공동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인 이상의 계약자가 일정부분을 서로 공동(분담)하여 체결한 계약

사회적기업의 활용방안

- 기타 계약이행 기간에 따라 당해년도, 장기계속, 계속비계약 등으로 구분되고 계약금액의 산정방식에 따라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액이 확정되는 확정계약, 계약금액을 사후에 정산하는 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 검토조건부 계약 등으로 구분됨
- 사회적기업들이 유의미하게 활용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계약방식은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과 같이 계약이행의 주체가 단수인지 또는 복수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계약방법임
- 일반적으로 계약자 1인이 단독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를 **단독계약**이라 하며, 2인 이상의 복수의 참가자가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공동계약**임
*일반적으로 복수의 입찰참가자가 공동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지 여부는 입찰공고문에서 계약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 구성하여 입찰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을 때 활용 가능
- 사회적기업의 경우 생산역량 등이 일반적인 기업들에 비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특정 사회적기업의 생산 또는 공급역량을 초과하는 수준의 계약조건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해당 입찰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 가능한 경우 동일 물품을 생산하여 공급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 확정계약(국가계약법 제11조)

계약체결 전에 예정가격을 미리 결정하고 이 가격 범위 내에서 입찰 또는 수의시담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 및 계약금액을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통상적인 계약

☞ 개산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0조)

개산계약은 확정계약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 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않고 개산액으로서 계약을 체결

• 개산계약 대상(국가계약법 제23조)

- 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
- 시험·조사·연구 용역계약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의 관계 법령에 따른 위탁 또는 대행 계약
-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한 계약

☞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 조건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을 전체에 대한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개산계약과는 구별됨. 조달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 조건으로 구매추진하고 있으나 특별히 가격조사가 어려운 일부 품목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함
-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대상**(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66조)

- 수입자재를 주재료로 사용하는 물품
- 세부규격이 불분명하여 원가변동 요인이 있는 물품
- 가격자료 미비로 예정가격기초조사가 미흡한 품목
- 기타 사후원가검토가 필요한 품목

☞ 공급방법별 분류

구분	개념	대상물품
총액계약	• 당해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총액으로 체결하는 계약	• 수요빈도가 적고, 제시된 규격에 의하여 제조·납품하는 물품 (수처리설비 등 시스템 물품)
단가계약	• 여러기관이 사용하고 수요빈도가 높은 물품을 미리 단가를 정하여 계약체결 • 조달청에서 계약자에게 납품 요구	• 수요빈도가 많고, 정형화된 규격에 의하여 제조·공급되는 물품(철근, 시멘트, 레미콘, 이스콘 등 계약물량을 조정·통제할 필요가 있는 물품)
제3자 단가 계약	• 계약방법의 특례로서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물자로 수요 기관에서 직접 계약자에게 납품요구	• 행정사무자동화 기기, 우수제품 등 계약자 규격물품으로 제조·공급되는 물품 (전자복사기, fax 등)
다수 공급자 계약	• 제3자 단가 계약과 동일한 형태의 계약이나 품질·성능·효율 등이 동등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공급하는 다수의 공급자와 계약	• 제3자 단가 계약과 동일

사회적기업의 활용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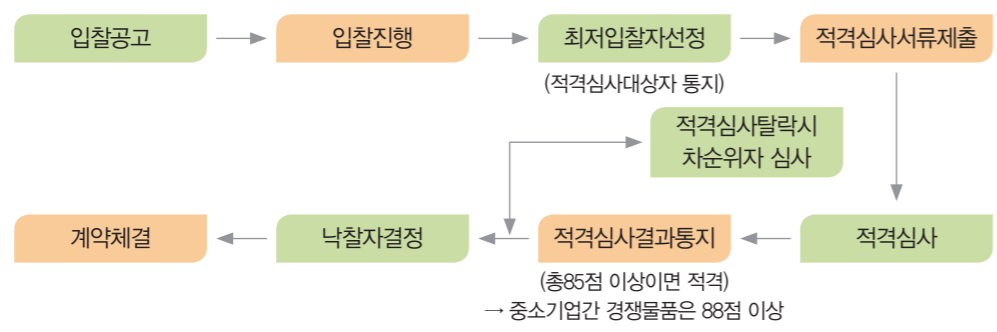
- 공급방법의 관점에서 사회적기업들이 주로 활용할 수 있는 계약은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수요기관들이 공통적, 반복적, 상시적인 수요가 있는 물품 중 상용화 및 규격화 수준이 높아 시중에서 품질 및 가격 등이 검증된 물품과 용역을 중심으로 사전에 공급조건 및 단가 등의 계약조건을 설정하여 조달청과 조달업체가 계약을 체결함
- 다수공급자계약은 단가계약 또는 단가계약과 유사하나 실제 계약의 효력으로 납품과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은 다수공급자계약 시점이 아닌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조달업체의 물품과 용역을 실제 수요기관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이 납품을 요구하는 단계라는 점에서 특징점이 있음

2.3.4 내자구매 낙찰자 결정제도

☞ 적격심사제도(물품 및 용역)

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평점을 받은 우량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로써 이행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업체가 덤핑입찰에 의한 낙찰 예방, 계약이행의 신뢰성 확보, 업체의 경영합리화 및 품질향상 유도

- 계약절차



적격심사낙찰제는 1.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2.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가격점수와 이행능력평가점수를 합한 종합평점이 일정 점수 이상인 자를 3.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임

가격 외에 이행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로 가격입찰을 통해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낙찰하한율’에 근접한 최저가 입찰자부터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가격점수+이행능력평가점수)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함

- * 낙찰하한율은 해당 적격심사에서 투찰 가능한 가장 낮은 금액비율(추정가격 대비 87.745% 등으로 적격심사기준별 상이함)로 낙찰하한율 이하로 투찰하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하여야 함
- *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차순위 가격 입찰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 진행하게 되며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것은 아님
- * 물품 및 용역 입찰에서 적용되는 적격심사세부기준별 낙찰하한율과 적격통과점수가 상이하므로 입찰공고문의 명시된 적용기준을 확인하여야 함

- 세부절차

2018년 하반기부터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1억원) 미만의 물품 및 용역 입찰에서 최저가 낙찰제도가 폐지되면서 사회적기업이 참여하는 대부분의 입찰에서 주로 적용될 낙찰방법으로 세부 절차에 대한 숙지가 필요함



[적격심사 세부절차]

입찰공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기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기한 등 명시 * 공사는 평가대상업종, 업종평가비율, 실적인정범위 및 규모, 평가기준규모 등을 명시
심사기준 등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세부심사기준 등 서류 비치, 요구시 교부 • 열람 · 교부기간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입찰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금액은 개찰 5일 전까지 공개, 복수예비가격 작성, 개찰 후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투찰한 적격심사대상자 선정
적격심사서류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순위 적격심사대상자에게 적격심사 필요서류 제출 요구 • 심사서류 제출기한 (국가계약) 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함(조달청^주)은 시설공사 · 기술용역은 7일 이내, 일반용역은 5일 이내, 물품제조 · 구매는 3일 이내로 규정 (지방계약) 시설공사 · 기술용역은 7일 이내(재난복구공사 4일 이내), 물품제조 · 구매는 기획재정부 고시금액 이상 5일 이내, 고시금액 미만 3일 이내(재난복구사업 3일), 10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 공사는 15일 이내(재난복구공사는 10일 이내)
보완요구(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계약) 서류 미첨부 또는 제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요구 가능(조달청^주)은 시설공사는 1회에 한하여 3일 이내 보오나요구 가능, 물품제조 · 구매 및 용역은 기한 미설정 • (지방계약) 제출된 서류가 미비, 오류 등으로 불명확하거나 미제출로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7일 이내(재난복구공사 · 사업은 3일) 보완요구 가능
적격심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마감일 또는 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 3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지방계약의 재난복구공사 · 사업은 4일 이내에 심사, 2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지방계약은 유권해석, 고문변호사 자문, 전문기관 검토 의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 자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낙찰자 결정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순위 적격심사대상자의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 ※ 국가지방계약별, 공사 · 물품 · 용역별 적격통과점수는 [표 64] 및 [표 65] 참조 - [표 61]과 같은 경우에는 차순위 입찰자를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 • 낙찰자 결정 결과는 해당자에게 지체없이 통보(서면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재심사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나 선순위자의 심사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후순위자(지방계약만 규정)는 부적격 통보나 낙찰자 결정일(지방계약만 규정)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가능 • 국가계약은 3일, 지방계약은 5일 이내에 재심사 실시
계약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

사회적기업의 활용방안

- 공공조달 대상인 물품, 용역, 시설공사의 기본적인 낙찰자 결정방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42조제1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42조제1항에 따라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적격자를” 선정하는 것임
-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공공조달 분야에서 물품 및 용역분야에서 순수한 의미에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즉 가격만으로 계약 상대자를 결정하는 “최저가 낙찰제”는 거의 시행되고 있지 않음
- 반면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는 적격심사제도가 물품 및 용역분야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음
- 일반적으로 물품에 대해서는 “물품구매 적격심사”, 용역에 대해서는 “기술용역 적격심사”, 또는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제정하여 평가하고 있음
- * 적격심사는 물품 및 용역 구매 금액의 규모에 따라 3단계 내외로 차등적인 기준이 설정되고 각 단계별로 설정된 최저 입찰 가능금액 수준인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입찰자로서 각 단계별로 설정된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획득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임
- 사회적기업들이 물품과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낙찰방법이만큼 사전 평가기준 및 가격평가방법 등을 확인하여 낙찰 가능성 여부 및 부족한 적격심사점수를 보완하기 위한 신인도 가점 항목 등으로 보완하는 방법 등을 선제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함

☞ 종합낙찰제(물품)(종합낙찰제 세부운영기준)

- 입찰가격 외에 품질·성능·효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찰가격에 총에너지 소모비를 합한 금액이 가장 낮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
 - 대상품목(6종) : 펌프, 냉동기, 공기압축기, 송풍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 제품의 품질향상 및 에너지절약제품 개발을 유도
- 업체별 가격·성능·환경환산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가 가장 높은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
 - 대상품목(9종) : 에어컨, 세탁기, LCD모니터, 데스크탑컴퓨터, 노트북, 텔레비전, 프린터, LED램프, 공기청정기

2단계 및 규격·가격 동시입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

● 개요

2단계 경쟁 및 규격·가격동시 입찰은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입찰방법으로서 입찰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하여 적격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 2단계 입찰('95.7.6부터 시행)

- 발주자가 적절한 규격의 작성이 어려운 경우 1단계에서 규격입찰서를 제출받아 적격자를 판단하고

- 2단계에서 적격자로부터 가격입찰서를 제출받아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

- 규격·가격동시입찰 ('77.4.1부터 시행)

- 2단계 입찰과 유사하나, 입찰방식에 차이가 있음
- 규격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받고 1차 규격입찰서를 개봉 평가하여 적격자를 선정한 후
- 입찰집행관이 보관하고 있는 규격입찰서 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

구분	입찰방식	입찰 유·무효	낙찰자 결정
단계 입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격(기술)입찰을 먼저 실시, 적격자 선정 •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입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단계별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 	최저가 낙찰
규격·가격 동시입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격(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 실시 •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개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격과 가격입찰 2인 이상의 유효입찰 • 규격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개찰 	최저가 낙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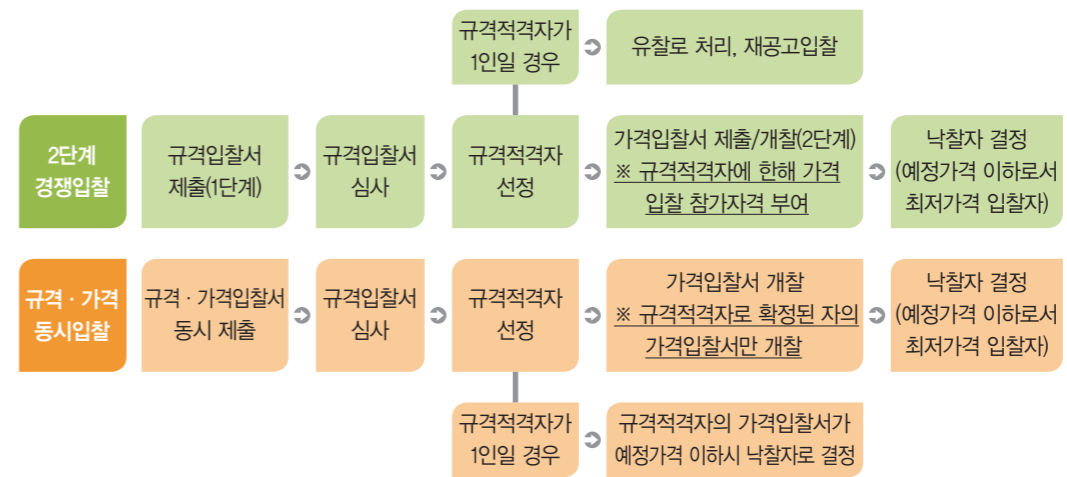
2단계 경쟁입찰과 규격·가격분리 입찰은 사회적기업이 많이 참여하는 방과후학교용역과 같이 계약이행과 관련한 규격, 기술 역량과 자격 검증이 필요한 경우 1단계에서 규격, 기술 등의 적격자를 선정하고 2단계에서 가격평가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낙찰제도임

● 계약절차

2단계 경쟁입찰과 규격·가격 동시입찰은 유사해보이나 2단계 경쟁입찰은 1단계로 규격입찰서를 제출받아 규격 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경우 2단계로 가격입찰서를 접수하여 개찰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반면 규격·가격 동시입찰은 최초 1, 2단계를 통합하여 규격입찰서와 가격입찰서를 모두 접수하여 규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적격자를 선정한 후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그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함

2단계 경쟁입찰은 규격적격자가 1인인 경우 가격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유찰되나 규격·가격 동시입찰은 규격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투찰한 경우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음



사회적기업의 활용방안

- 2단계 및 규격·가격 동시입찰은 1단계에서 입찰자의 기술능력을 평가하여 적격자에 대해서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최저가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임
- 일반적으로 공급해야 되는 물품과 용역의 이행을 위한 기술력, 복잡성, 전문성, 난이도가 높은 경우에 적격자에 한해 입찰자격을 부여하여 기술 및 품질 중심의 낙찰자를 선정하려는 제도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 낙찰방식이므로 해당 방식으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 사전 기술역량 수준과 공급 가능 가격 수준을 결정하여 입찰참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함
- 최종적인 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 방식이므로 과당경쟁 등으로 인한 저가 낙찰 등의 문제점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들이 많이 참여하는 청소용역 등에서는 적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희망수량경쟁입찰(물품)(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7조)

1인의 계약자가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다량물품을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단가)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수요물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물품, 용역)(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 개요

- 계약이행 과정에서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물품/용역에 대하여 다수의 입찰자로부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낙찰자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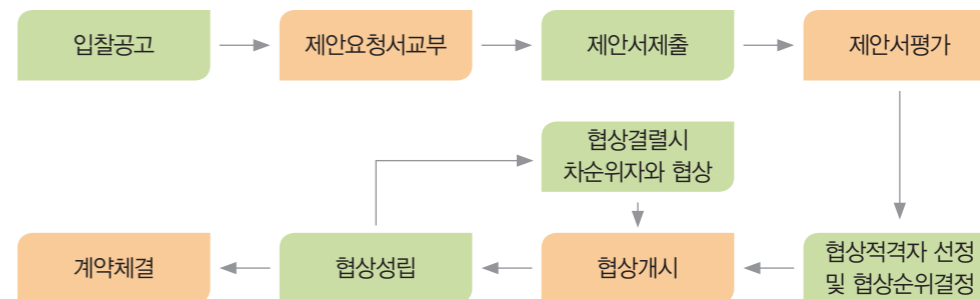
* 기술점수(80%)와 가격점수(20%)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배점은 조정이 가능함)

-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밖에 국가안보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제시한 제안서와 입찰가격을 종합 평가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협상절차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

- 특히,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기반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우선적으로 적용

● 계약절차

협상에 의한 계약은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적격심사, 2단계 경쟁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이 적용되는 경우 이외에 학술용역, 정보화용역 등 기술/지식이 중요한 대부분의 용역의 낙찰자 결정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음



협상에 의한 계약은 다른 낙찰자 결정방법 대비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 창의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이 요구되는 수행역량 평가를 위해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므로 이를 준비하기 위한 기간확보가 중요함

* 입찰공고단계 및 구매규격 사전공개 단계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적용되는 입찰 정보를 확인하여 사전 제안서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통상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는 10일의 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나 국가계약법령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40일, 지방계약법령이 적용되는 경우 추정가격 규모별 10일~40일의 기간을 부여함

국가계약		지방계약	
기준	공고기간	기준	공고기간
-	40일	■ 추정가격 1억 원 미만	10일
		■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20일
		■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40일
■ 긴급공고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10일	■ 긴급공고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0일

* 공고일은 입찰공고 게시일과 입찰서 제출마감일(제출일을 제외한 기간을 의미함)

제출된 제안서를 평가하여 일정점수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국가계약은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 지방계약은 기술능력과 가격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유통 등과 관련된 서비스, 정보화사업, 소프트웨어 사업은 국가계약과 동일하게 85% 이상인 자)

* 가격평가와 관련하여 국가계약법령 적용 입찰은 투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더라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가격을 예정가격 이하로 하향 조정하면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으나 지방계약법령 적용 입찰의 경우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면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하므로 유의하여야 함

협상순서는 제안서를 평가한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통과점수 이상 합산 고득점순으로 결정하고 동점인 경우에는 아래의 순서에 따름

국가계약

- ①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 고득점자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 ②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 > ③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

지방계약

- ①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 고득점자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 ②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 > ③ 추천

사회적기업의 활용방안

- 주로 용역분야의 입찰에서 낙찰자 결정 방법으로 양적 평가지표 중심의 적격심사의 기술능력 등 종합적인 이행능력 심사를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에서 질적 중심으로 평가하는 제도임
- 일반적으로 학술성, 기술성, 전문성, 복잡성 등이 높은 용역분야에서 기술능력 등 종합적 이행능력이 뛰어난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기 위한 방안임
- 적격심사와 달리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입찰자에게 심사 우선순위가 있지 않고 기술평가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수요기관이 사전 공정한 기준점수 이상 통과자 중 최고점자와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로 결정함.
- * 기술능력 등 종합적인 이행역량이 뛰어난 경우 낙찰업체로 선정될 경우 대가보장 수준이 가장 높은 낙찰제도로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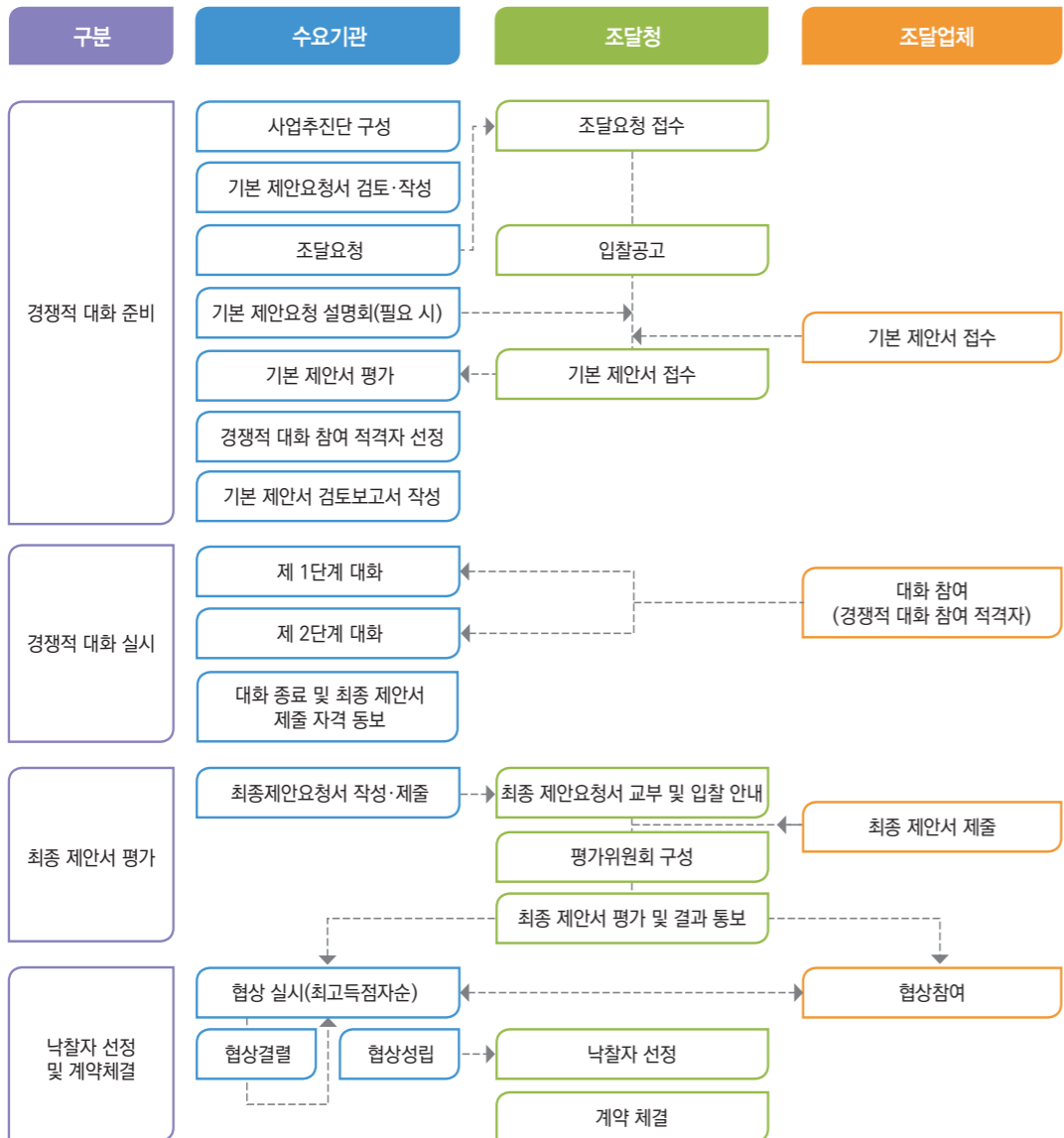
경쟁적 대화 방식에 의한 계약(물품, 용역)(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의3)

- 개요
 - 전문성 · 기술성이 요구되면서 기술적 요구 사항이나 최종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경우, 물품 · 용역 등의 대안이 다양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용화되지 아니한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그 밖에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경우
 - 입찰대상자들과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등에 관한 경쟁적 · 기술적 대화를 통하여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및 계약이행방안 등을 조정 · 확정된 후 제안서를 제출받고 이를 평가하여 수요기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
- 협상에 의한 계약과 비교

구분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의3)
적용대상	전문성, 기술성, 안정성 및 국가안보 목적등의 이유로 협상계약 적용이 필요한 물품 및 용역계약 ※ 과업및 최종 목적물 사전 정의	상용화 되지 않은 기술혁신형 물품 및 용역계약 또는 특별히 복잡한 계약 ※ 기술적인 세부요구사항 또는 최종 프로젝트 목적물을 사전에 정의할 수 없는 경우
발주기관 요구사항	최초 내용 유지	대화를 통해 보완 및 구체화
입찰자 요구사항	최초 내용 유지 (단, 요구사항 미충족 부분 보완)	대화를 통해 보완 및 구체화
특징	입찰자 제안내용 중 가장 우수한 제안 선정하나, 경쟁적 대화방식에 비하여 다양한 제안수용에 한계	다수 입찰자와 동시 협상을 진행하며 제안내용을 보완하여 최적의 제안 선정
낙찰자 선정	제안서와 입찰가격을 평가하여 국각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낙찰자로 선정 ※ (제안서 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능력평가 80% + 가격평가 20%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 기술능력평가 90% + 가격평가 10%	

● 계약절차

협상에 의한 계약보다 더욱 전문성, 복잡성이 높거나 과업의 내용, 이행방안, 결과물에 대한 수행역량이 충분한 다수 업체들간 사전 의견을 반영하여 최적의 과업내용을 설계하여 혁신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계약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음.



사회적기업의 활용방안

- 주로 용역분야의 입찰에서 낙찰자 결정 방법으로 기술능력 등 종합적인 이행능력 심사를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에서 질적 중심으로 평가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제도를 기반으로 고도화된 낙찰방법임
 - 일반적으로 과업내용의 확정, 기능/성능/품질 등의 기술적 규격 확정 곤란, 이행 과정에서의 불확실성 등이 높아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적 기술의 적용이 필요한 경우 참여업체간 아이디어 경쟁과 협의를 통해 세부 과업 내용을 확정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기 위한 방안임.
 - 협상에 의한 계약과 달리 일정수준의 이상의 기술능력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에 앞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대안을 제시하여 과업내용과 규격 등을 만들어 나가거나 조정할 수 있어 용역분야에 있어 사회적기업이 보유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수행방법 등의 제안을 통해 낙찰기회 확보 가능성 있음.
- * 실제 활용과정에서 전문성, 복잡성, 혁신적 대안 요구 수준이 높지 않은 일반용역, 정보기술용역 등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활용하므로 협상에 의한 계약 활용도가 높은 사회적기업은 세부 절차 이해 필요함.

☞ 리스계약 제도(물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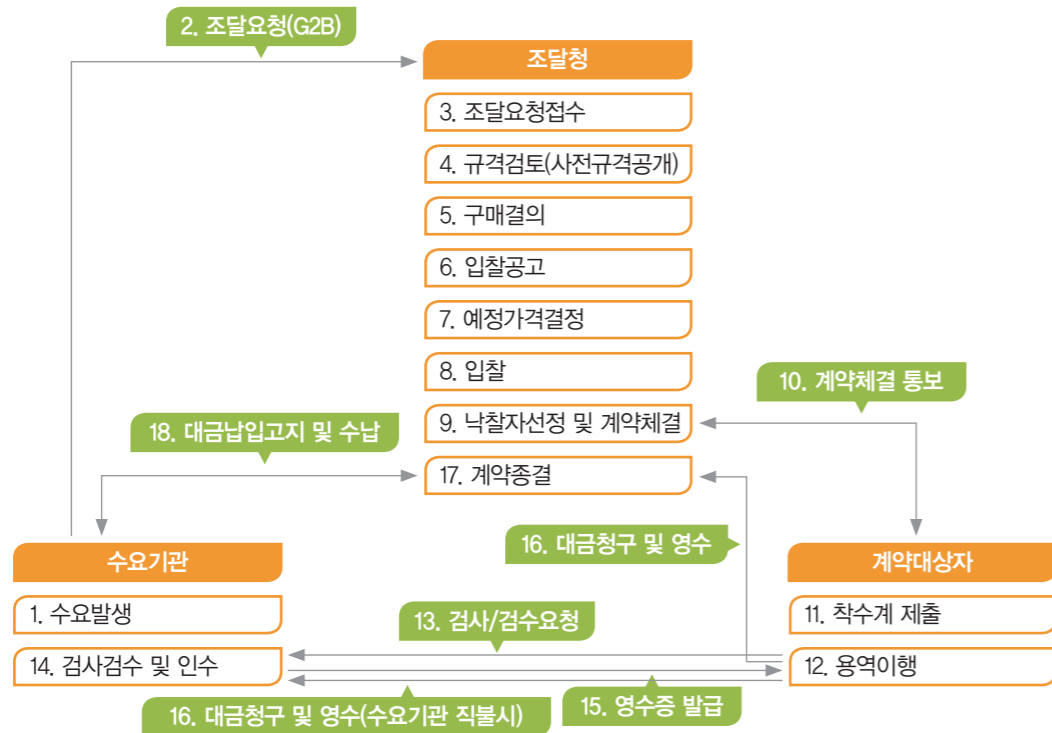
리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리스회사가 취득하거나 대여 받아 리스 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일정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제도(물품구매 예산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 이용)

☞ 특정조달계약(국제입찰)(국가계약법 제4조)

정부조달협정 및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 하는 금액 이상의 물품, 공사 용역계약으로서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적의 외국인과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제입찰에 의하여 계약하는 제도 (정부조달협정 : '94. 4. 15 마라케시)

- 근거: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대통령령 제25847호, 2014. 12. 11., 일부개정]

2.3.5 내자구매 업무 단계별 처리절차



1. 수요발생

수요발생은 수요기관의 사업목적에 필요한 물품 및 용역의 필요에 따른 것이며, 해당예산을 확보함으로써 발생함

사회적기업의 활용방안

- 일반적으로 공공조달을 활용하는 수요기관(공공기관)의 물품, 용역, 시설공사의 조달은 해당 연도의 필요 시점에 즉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전년도말 대략적인 조달계획을 수립함
- 수요기관별 연간 조달 및 구매 계획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거나 수요기관의 계약담당부서를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공급을 목표로하는 지역의 수요기관의 구매정보를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입찰 등 공공조달 시장 진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조달청으로 조달요청하는 경우에는 매해 연초에 나라장터를 통해 수요기관별 연간 조달요청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확인하여 선제적으로 물품 및 용역 공급기회를 탐색하는 것이 효과적임

* 나라장터 발주계획 검색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에서는 공공기관별 연간발주계획을 매년초 등록하므로 사회적기업이 공급을 희망하는 품명(물품, 용역 및 공사), 발주시기, 발주기관의 정보를 미리 확인하여 입찰준비 가능함
- * 나라장터 모든 공공기관의 연간발주계획이 등록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회적기업이 공급을 희망하는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교차 확인 필요함.
-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정보' 메뉴 클릭 시 물품, 용역, 시설공사분야 메뉴를 클릭하면 각각의 연간단위 '발주계획 확인이 가능함'
- 검색한 발주계획정보를 엑셀파일로 다운로드 하여 분석 가능함

No.	업무 유형	발주시기	발주기관	사업명	세부품명(물품분류명)	
					물품수량	물품예산금액
4331	물품	2020/12	자치조달	2021학년도 천천중학교 신입생 교복(동생괄복) 학교주관 구매	340 벌	₩102,000,000
4332	물품	2020/10	자치조달	2020학년도 10월 학교급식용 농수산물품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공고	1 식	₩10,736,280
4333	물품	2020/12	자치조달	2021학년도 영통중학교 교복(동복 및 하복) 학교주관 구매	110 벌	₩33,842,600
4334	물품	2020/10	자치조달	2020년 식자재 업체 선정	1 1	₩89,100,000
4335	물품	2020/10	자치조달	과학교육연구소 현미경용 미세조작기 구매	1 set	₩26,610,000
4336	물품	2020/10	자치조달	2020년도 주라센터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공고	1 포	₩133,290,000

* 나라장터 계약현황 검색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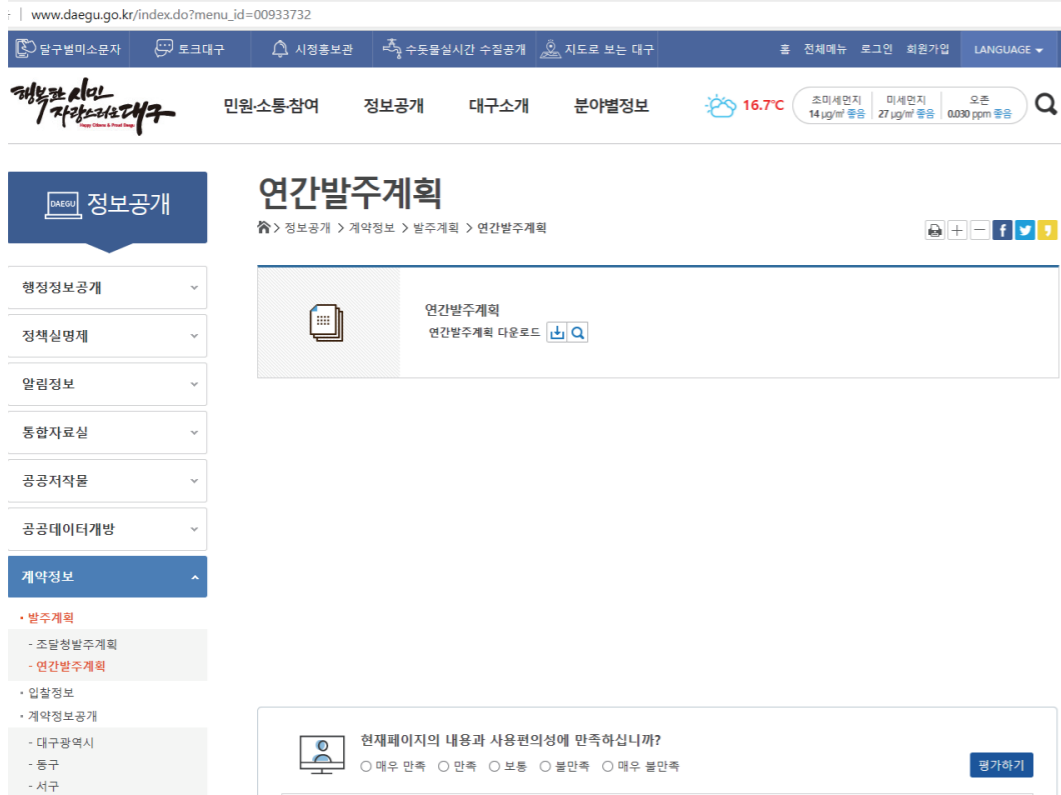
- 조달청 나라장터에서는 공공기관별 계약체결시 물품, 용역 및 시설공사별 계약정보를 검색하여 사회적기업이 공급하는 품명을 실제로 계약한 공공기관, 계약시기, 공급가격(단가 등)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발주계획은 실제 발주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계약현황은 실제 계약체결된 건만 검색되므로 실질적인 수요로 구체적인 공급조건 확인이 가능함
- 특정한 품명의 공급을 위해 실제 수요 및 계약 가능성 분석을 위해서는 매년 초 연간발주계획 검색을 통해 확인된 품명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전년도 계약현황을 검색하여 교차 분석 후 발주계획과 계약이 모두 일치하는 경우에 당해연도 발주계획에 따른 품명 공급시기를 고려하여 입찰 준비 가능함



- 지방자치단체 등 자체조달이 가능한 기관의 발주계획 정보는 조달청으로 중앙조달 요청할 정보와 해당 지자체에서 직접 발주하는 정보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모두 검색하여야 함

* 아래 대구광역시와 같이 연간조달계획을 통합파일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다운로드하여 확인 가능함





2. 조달요청(조달청-수요기관)

수요기관의 장은 품명, 규격(시방서), 납기, 특수조건 및 추산가격, 배정예산 및 물품수급관리 계획 반영 여부 등을 기재하여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조달요청함

3. 조달요청접수 (조달청)

조달요청서는 본청 및 수요기관을 관할하는 지방청에서 접수하며 접수와 동시에 나라장터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함

- 공개 제외 대상
 - 수요긴급 또는 비밀물자, 수의계약대상물품
 - 구매예상가격이 1억원 미만인 내자
 - 해당연도에 1회 이상 규격 사전공개를 실시한 품목

• 공개기간

접수일로부터 5일간(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3일간 공개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의 활용방안

- 조달청을 기준으로 구매결의 이후 입찰공고 이전에 물품 및 용역의 규격 및 과업내용의 적정성과 관련 법제도 준수여부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구매규격 사전예고”를 하고 있음
- 공급하고자 하는 물품과 용역의 물품 규격서 또는 용역 과업지시서 상의 제반 내용 중 특정업체에게 유리하거나 관련 법규 및 대가산정기준(품셈) 등과 상이한 경우 수요기관의 담당자에게 공개적인 의견제시 및 질의를 할 수 있음
- “구매규격 사전예고” 단계에서 조달업체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검토 및 반영여부를 담당자가 화신토록 되어 있고 이후 입찰공고를 진행할 수 있음
- 특별한 의견이 없더라도 실제 물품 및 용역 입찰공고 5~7일 이전에 곧 입찰에 부쳐질 정보를 사전 획득하여 입찰공고기간을 더한 기간만큼 제안서 작성 등 입찰 준비를 여유 있게 할 수 있음
- 국가계약법령이 적용되는 입찰의 경우 기본적으로 5일, 긴급한 경우 3일의 기간 동안 사전규격 공개를 실시해야 하며 해당연도에 1회 이상 사전규격 공개한 경우에만 생략할 수 있음
 - * 의견이 제기될 경우 이를 수요목적 범위 내에서 적극 수렴되도록 검토하여야 함.(통상적으로 반영 여부 등을 나라장터를 통해 회신함)
- 지방계약법령이 적용되는 입찰의 경우 국가계약법령과 동일하게 기본 5일, 긴급한 경우 3일 동안 공개해야 하나 긴급한 입찰의 경우와 추정가격 5천만원이하 물품, 용역 입찰의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함
 - *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모두 공개하고 있으며 특히 사전규격 공개 시 개선된 의견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14일 이내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사전규격공개는 공공조달 입찰 경험이 많지 않은 사회적기업 등 우선구매제도 지원 대상기업들은 이를 통해 문제가 있는 과업 내용 등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과정으로 필수적 활용이 필요함

- 구매규격 사전예고 단계 또는 입찰공고 단계에서 주요하게 확인해야 할 항목중 하나는 물품, 용역 입찰에서 실적제한이 규정을 준수하여 이루어지는 확인하여야 함
-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대상 공공기관은 아니나 보조금 사업 등을 통해 예산을 지급 받는 민간보조사업자도 필요한 물품 및 용역 확보를 위해서 국가 및 지방계약법령에 따른 입찰을 실시해야 하나 규정의 기준을 초과하여 실적제한을 과도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있음

계약담당자 → 실적제한방법

- 1 규모·양** 규모·양의 단위
[예시] km, m², m³, kg, 개, M, 개소 등
→ 해당공사 규모의 1/3배로 제한
- 2 금액** 해당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판단
→ (예 규) 해당공사 규모의 1배로 제한
(시 지침) 해당공사 규모의 1/3배로 제한

-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검사가 완료된 최근 10년 이내 실적으로 제한해야 함
(단, 용역과 물품제조계약의 경우 실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추정가격이 기재부 장관 고시금액 이상(2.1억 원)이어야 함)

-시설공사를 실적으로 제한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입찰공고에 정한 실적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입찰참가가 가능
※ 용역·물품은 공사의 경우를 준용하되, 계약의 특성·경쟁성·난이도·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한 규모(금액)를 정함

4. 규격검토 (조달청)

정부물품은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가장 경제적이고 경쟁이 가능한 규격으로 구매함. 그러나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물품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각호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거 구매할 수 있음

5. 구매결의(조달청)

검토가 끝난 조달요청서는 구매결의서를 작성하며, 구매결의서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 가. 구매관리번호
- 나. 수요기관명
- 다. 정부물품목록번호, 품명, 규격, 수량
- 라. 계약방법
- 마. 낙찰자 선정방식 (적격심사, 종합낙찰제, 2단계입찰, 분리입찰, 유사물품복수경쟁 등)
- 바. 법적근거

사. 예산금액 또는 추정가격

아. 협정물자(특정조달) 대상여부

자. 입찰일시(경쟁입찰시)

차. 납품기한 또는 계약기간, 납품장소, 인도조건, 검사 및 검수기관 이외에도 물품구매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일반조건, 입찰보증금 수납에 관한 사항 등

6. 입찰공고(발주기관)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입찰공고에 명시할 사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6조)

- ① 입찰에 부치는 사항
- ②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 ③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④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 ⑤ 낙찰자 결정방법
- ⑥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 ⑦ 계약하고자 하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 ⑧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⑨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장소 및 교부비용
- ⑩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 등
- ⑪ 우편입찰 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장소
- ⑫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동 계약의 이행방식
- ⑬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입찰공고 내용과 당해 물품규격서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입찰공고 내용을 기준으로 함

- 공고시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 원칙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이전 공고
- * 협상계약의 공고기간은 일반 경우 40일 이상, 긴급인 경우 10일 이상임

-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참가 신청마감일(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신청서와 함께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납부하여야 함
- 다만, 신용거래불량자,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외에는 입찰보증금 면제
- * 입찰참가 신청서 : 입찰 보증금 납부서, 입찰 보증금 면제 확약서, 대리인 위임장, 사용인감계 등이 포함

- 입찰참가자격 기준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현장설명 참가가 의무화된 공사는 현장설명일을 기준으로 함

- 대리인의 입찰참가

-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및 입찰개시시각 전까지 대리인을 지정(변경 포함)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입찰 참가 가능
- *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임/직원이 대리인

7. 예정가격결정(발주기관)

예정가격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구매를 위한 경쟁입찰 또는 수의시담을 하기 전에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계약여건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매가격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정한 가격을 말하며 동 가격은 입찰 또는 시담에 의한 낙찰자 선정의 기준이 되며 계약체결에 대한 최고 상한금액이 됨

- 복수예비가격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 경쟁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 기초금액과 복수예비가격 작성
 -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초금액을 작성(영 제9조)하고 나라장터로 공개
 - * 단, 협상계약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 기초금액의 $\pm 2\%$ (국가계약법적용 입찰) 또는 $\pm 3\%$ (지방계약법 적용입찰)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추천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이를 예정가격으로 결정

사회적기업의 활용방안

- 실제 당해 물품 및 용역 입찰의 기준가격은 기초금액 또는 사업예산이 아닌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예정가격임
- 예정가격은 낙찰단계에서 적용받는 적격심사,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등에서 낙찰하한율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입찰공고 시점에 공개되는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예정가격 범위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함
- 대략적인 예정가격의 범위를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낙찰을 목적으로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투찰할 경우 적격심사에서 낙찰하한율 미달로 적격심사 대상 자체가 되지 못하므로 기초금액, 복수예비 가격 산정범위(국가계약법 $\pm 2\%$, 지방계약법 $\pm 3\%$)를 고려한 예정가격을 자체적으로 산출하는 것이 낙찰 가능성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과정임

8. 입찰(발주기관)

입찰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입찰시간과 장소에서 실시함.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경우 전자입찰로 진행됨**

재입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6조) 제20조

- 최초에 부친 입찰이 유찰된 경우 다시 공고절차를 가지지 않고 같은 장소에서 재차 입찰에 부치는 제도
- 처음 입찰에 참가하지 않아도 재입찰에 참가가 가능

사회적기업의 활용방안

- 효과적인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입찰 공고 시점에서 물품과 용역의 구매 정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는 것은 사실상 낙찰 가능성을 낮출 수밖에 없음
- 입찰이전 단계에서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물품과 용역을 어떤 기관이 언제 공급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사전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공급 가능여부, 입찰을 위해 필요한 준비 서류 및 요건 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이러한 측면에서 공급하고자 목표로 하는 수요기관의 직전연도를 중심으로 최근 ~3년간의 물품 및 용역 입찰정보를 나라장터에서 검색하여 정보를 획득하고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참가자격요건 등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 효과적임
- 한편 전자입찰로 진행되는 물품 및 용역 입찰에서는 “지문인식 전자입찰”을 시행하므로 입찰 이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과 지문등록을 완료하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함

9. 낙찰자선정 및 계약체결(발주기관 - 조달업체)

경쟁입찰은 입찰 후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자와 수의계약은 수의계약 대상자와 권리, 의무 변동(발생, 변경, 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 행위로서 전자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립함

계약보증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 계약금액(장기계속은 총금액, 단가계약은 1회 최대납품요구액)의 10% 이상
 - * 용역의 경우 공사 계약보증금 규정 준용 가능
- 납부수단 : 현금 또는 영 제37조 제2항에 의한 보증서 등
-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반환

10. 계약체결통보(발주기관)

계약서에는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액을 계산하여 과세문서(계약서)에 인지를 붙임으로서 납부하게하고 계약당사자 및 수요기관에게 송부함

사회적기업의 활용방안

-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로 생산대금 등을 저리로 대출 받을 수 있는 공공구매론(자세한 정보는 4장 공공구매론을 참조)을 이용할 수 있음

11. 납품준비(조달업체)

계약당사자는 계약서에 따라 물품을 납품하며, 계약물품은 계약서 규격, 시방서 및 제반 조건 등에 맞도록 제작한 물품을 공급함

사회적기업의 활용방안

- 물품 납품 시 계약서상 규격, 시방서 및 제반조건과 맞는 물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사실상 품질 및 기능이 동일/유사하다고 판단하여 규격서, 시방서와 일부 다른 제품을 납품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정상적 활용이 가능하더라도 계약조건 위반으로 부정당제재 또는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함

12. 납품(조달업체)

계약자는 납품에 필요한 제반 준비사항을 완료한 후에 서면으로 수요기관에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함

13. 물품납품 및 검사/검수요청(발주기관 - 조달업체)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계약목적물에 대한 검사/검수요청을 납품일까지 서면으로 신청함

사회적기업의 활용방안

- 계약서상 납품일 이전까지 정상적으로 물품을 납품한 경우 납품과 동시에 발주기관(계약담당공무원)에게 검사/검수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함
- 검사/검수요청서가 계약완료일(납품일이 동일한 경우는 납품일) 이전 송부되지 않으면 검사검수 기간이 지연되거나 대금지급 소요일수가 늘어날 수 있음

14. 검사 검수 및 물품인수(발주기관 - 조달업체)

“검사”는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의거 적합하고 구매규격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이며, “검수”는 검사에 합격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검사는 검사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하여야 함

사회적기업의 활용방안

- 정상적인 납품이 이루어지고 계약상대자인 조달업체가 검사검수요청을 하면 발주기관은 검사에 불합격하지 않는 경우 14일 이내 검사를 완료하여야 함, 다만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사유인 경우 7일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검사검수 기간이 해당 기간을 초과하면 적극적으로 검사를 요청하여야 함
 - * 납품된 물품이 특별한 하자가 없고 보완요구도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14일, 최대 21일 초과하는 경우 조달업체는 발주기관에게 신속한 검사완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검사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지연하면 검사합격증/영수증을 받을 수 없고 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 대금지급 신청을 할 수 없어 납품 이후 적기 대가 미확보로 어려움 발생 예방 필요함

15. 물품납품 및 영수증발급(발주기관 - 조달업체)

물품을 인수한 수요기관에서는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발급하며, 계약조건에 따른 유보금 및 공채매입 여부 등 대금지급시 참고할 내용을 부기함

16. 대금청구 및 영수(조달청 - 조달업체(계약상대자))

수요기관에서 검사검수가 완료되어 물품납품 및 영수증, 기타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자가 조달청에 대금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반기재 사항, 계약물품의 규격 및 수량, 납품기한 대 실제 납품일, 하자보수금 적립여부, 계약자에게 지급될 금액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 후 대금을 청구함. 다만, 수요기관 직불의 경우에는 해당 수요기관에서 대금청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함

사회적기업의 활용방안

- 검사검수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인 조달업체에게 검사/납품 영수증을 발행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근거로 발주기관에게 대금지급을 요청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대금 지급 신청 후 5일 이내(업무일 기준)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쌍방이 합의한 경우 5일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이 대금지급 요청 후 최대 10일 초과하면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적기 지급 요구 가능

17. 계약종결(조달청 해당)

납품서류 확인결과 하자가 없거나 보안이 완료된 경우에는 계약종결서류를 작성하고, 계약종결 및 분할납품이행 내용(수요기관직불의 경우는 수요기관 통보내용)을 조달EDI에 입력함
경영분석담당관은 해당 계약과에서 지급을 의뢰한 계약종결서류를 확인하고 다음의 금액을 공제하고 계약자에게 지급(계좌입금)함

- 가.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 지급액
- 나. 선금잔액
- 다. 지체상금 징수대상액
- 라. 계약금액 지급유보 대상액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기타 설치 및 시운전 미필등 일부 유보할 사유가 있는 경우)

마. 하자보수보증금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 한함)

* 라, 마 항은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음

납품대가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국가계약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에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음

조달청은 위 대가지급기한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유효한 서류를 갖추어 대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4근무시간내에 지급함

18. 대금납입고지 및 수납(조달청 - 공공기관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물품대금을 지급한 후 계약대금과 해당 조달수수료를 가산하여 수요기관에 납입고지하고(수요기관직불의 경우는 해당 수수료), 수요기관은 동 금액을 국고수납대리점에 납부함



2.4 다수공급자계약(MAS: Multiple Awarded Schedule)제도

2.4.1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개요

정의

- 기존의 최저가 1인 낙찰자 선정 방식으로는 다양성 부족과 품질 저하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다수의 공급자를 선정, 선의의 가격, 품질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제고하는 제도로써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인터넷 확산에 따른 전자상거래 시대에 적합하여, 이미 미국, 캐나다 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제도임
- 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로써 납품실적, 경영상태 등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고객이 직접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제도

대상품목

- 규격(모델)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
 - 연간 납품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일 것
 - 업체공통의 상용규격 및 시험기준이 존재할 것
-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이 가능한 물품
-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품 등

세부내용

-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에게 조달청과 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 ex)공기청정기의 경우 L사, S사 등이 생산하는 공기청정기를 계약해 주도록 조달청에 요청

- 계약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기업 중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 및 협상 대상품목 결정을 위하여 적격성 평가를 실시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고 입찰참가자격 등이 충족된 업체는 규격서와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여 적격판정 받은 품목에 대하여 가격자료를 제출
- 조달청은 자체적으로 가격 조사하여 협상 기준가격을 책정함
- 조사, 책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을 협상하되 가격담합, 덤핑 등으로 가격협상이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가격심의회를 개최, 최종적으로 가격을 결정
- 가격협상이 성립되면 품목별로 다수의 공급자와 계약체결
 - * ex)공기청정기 10평형 계약의 경우 ⇒ L사 : 30만원, S사 : 32만원, D사 : 32만원
- 품목별로 다수 공급자의 제품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하면 수요기관은 민간쇼핑몰에서와 같이 선호하는 업체의 제품을 선택하게 됨

기타주요내용

- 계약기간 : 3년이 원칙임
 - * 단,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품목은 예외
- 계약기간 중이라도 성능이 향상된 신제품으로 대체 가능
 - * 단, 조달청에 사전협의 필요
- 가격인하 : 계약자의 요청에 의하여 가격인하 가능

☞ 단계별 업무절차

순서	수행자	업무명	내용
1	조달청	구매계획 수립	시장조사 등을 통하여 계획수립
2	조달청	구매결의 및 구매공고	나라장터에 구매공고 게시 (세부 규격이 아닌 물품명으로 공고됨)
3	조달업체	적격성평가 신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결격사유 여부 확인 및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 등을 확인(자가심사)하고 계약하고자 하는 품목에 대한 규격서 및 시험성적서 제출
4	조달청	적격성 평가	MAS협회에서 접수·평가 후 해당 계약부서에서 적격성 평가하여 협상품목 승인 처리
		결과통보	나라장터를 통하여 평가결과 확인 가능
5	조달업체	가격자료 제출	승인된 품목의 가격총괄표를 작성하여 조달청으로 송부 (온라인 처리)
	조달청		거래처별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첨부
6	조달청	협상기준가격 작성	조달업체가 제출한 가격총괄표를 근거로 협상기준가격 생성
7	조달업체	가격협상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품목별 가격협상을 통해 가격 협상
	조달청		
8	조달업체	계약체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서 생성 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기존 업무절차와 동일)
	조달청		
9	조달업체	상품정보 등록요청	계약체결 전 또는 체결 후 품목(G2B식별번호)별로 상품 상세 정보 및 유의어 등록을 요청하고 조달청 담당자가 승인 시 나라장터 쇼핑몰에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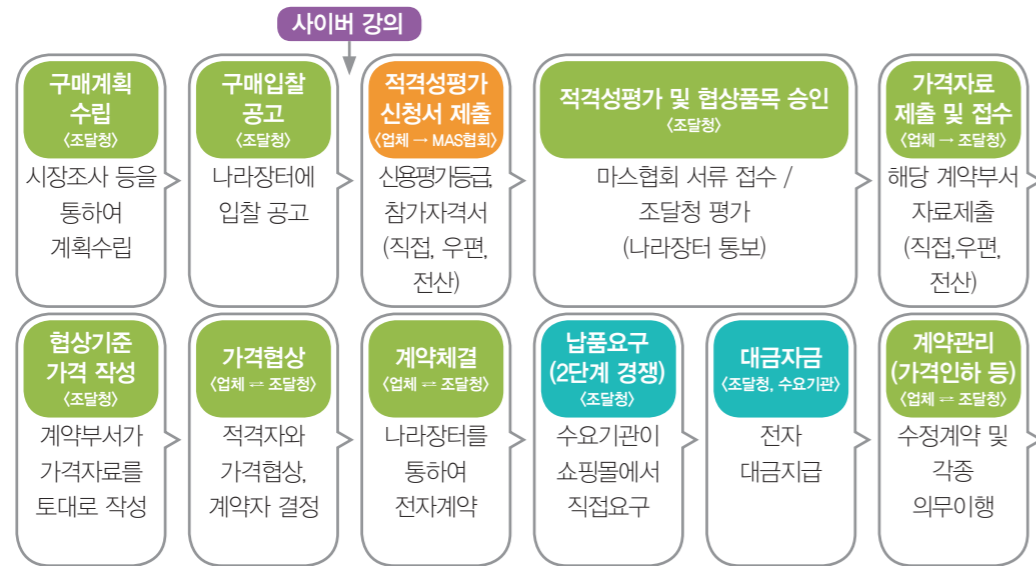
☞ 관련 규정 및 절차

훈령	고시	공고 및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규정(조달청 훈령 제 1974호, 2021.03.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업무처리기준 (조달청 고시 제2021-5호, 2021.03.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조달청 공고 2021-18호, 2021.06.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 계산서 관리기준 (조달청 고시 제2018-17호, 2018.1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조달청공고 2016-22호, 2016.2.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조달청 고시 제2022-08호, 2022.04.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 조건(구매총괄과-1807, 2022.04.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구류 다수공급자계약 추가 특수조건(쇼핑몰기획과-9005호, 2018.12.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 특수조건(구매총괄과-1807, 2022.04.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 규정(조달청고시 제2017-16호, 2017.7.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산지 명시방법의 특례 적용제품 추가 지정내역 공고 (조달청공고 제2016-111호, 2016.11.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 계약 업무처리규정 (조달청 훈령 제2007호, 2021.8.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레미콘·아스콘 다수 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 고시 제2021-30호, 2021.8.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 계약 특수조건 (조달청 공고 제2021-166호, 2021.8.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 공고 제 140호, 2020.07.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규정(조달청 고시 제2020-33호, 2020.09.25.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개정(조달청 공고 제2020-201호, 2020.09.25.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용 컴퓨터와 모니터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고시 제2019-14호, 2019.1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다수 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조달청공고 제2019-023호, 2019.01.31.)

2.4.2 다수공급자계약 계약관리 단계

사이버 MAS 교육

- 기본교육으로서 사이버MAS교육 의무수강
 - 다수공급자계약(MAS) 체결 및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을 사전에 이수하여, 제도 미숙지로 인한 조달업체의 불이익을 방지
- 교육과정 개설, 운영



- 교육과정명 :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
- 교육대상
 -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조달업체 (수요기관 담당자는 수강할 수 없음)
- 교육방법
 - 나라장터 인증서로 종합쇼핑몰 (<http://shopping.g2b.go.kr>)에 접속 후 수강 및 평가, 60점 이상 획득 시 수료
 - 교육과정 접속 : 종합쇼핑몰 우측 상단 “사이버 교육”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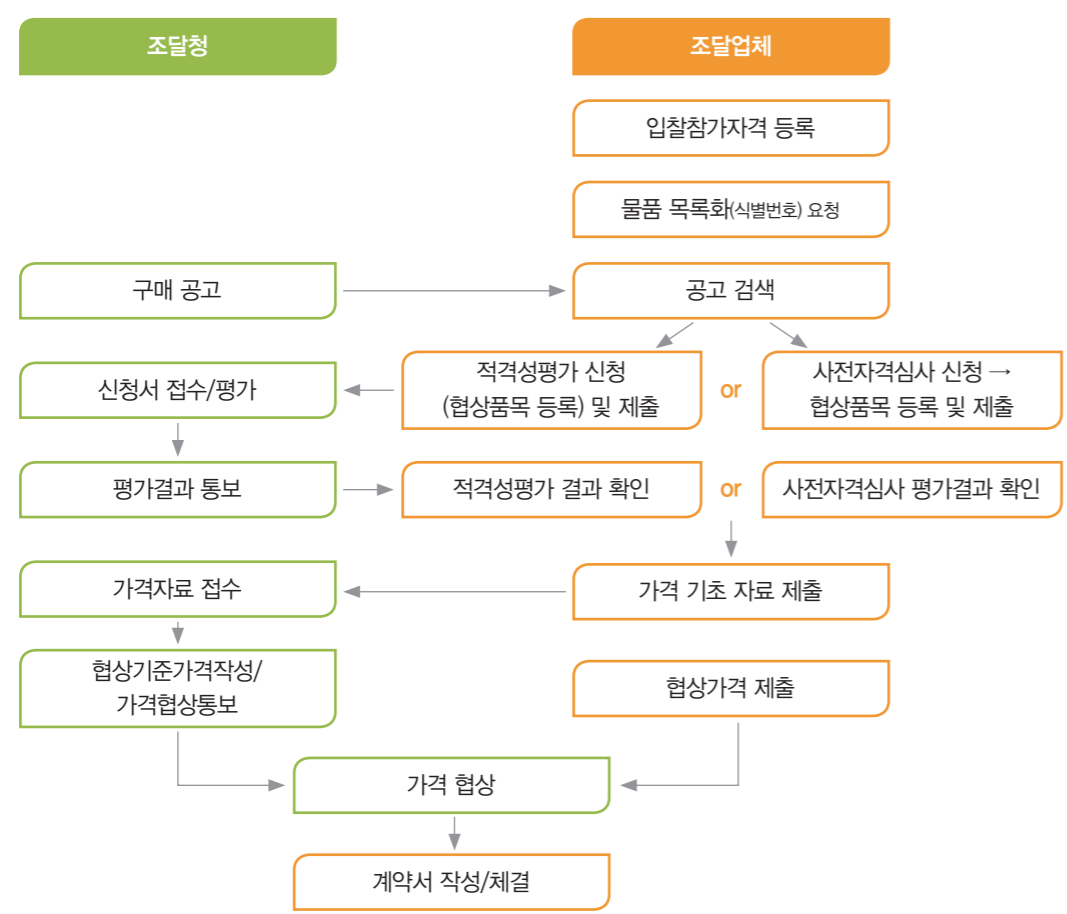


- 수강 및 평가
 - 평가문제는 25문제이며 평가에 불합격 시, 재수강 및 평가에 재 응시하여야 함
- 교육과정 운영결과 활용
 - 교육수료 현황을 DB화하여 적격성평가 및 PQ 평가 시 활용
 - '12.7.1. 이후 적격성평가 및 PQ 신청자는 본 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2.4.3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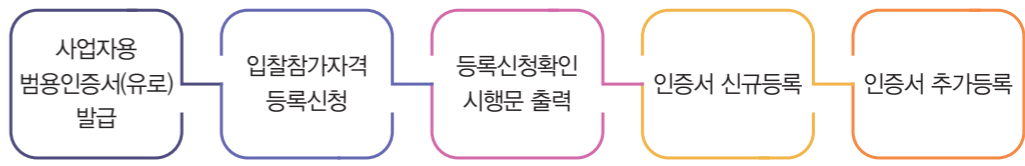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 9조(적격성평가 및 규격서 제출) 5항,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종합쇼핑몰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적격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 제2조의2(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의 이수) 제2조의 사전심사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사전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2.4.4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체결 절차



1. 입찰참가자격 등록(조달업체)

조달업체 입찰참가자격 등록절차



2. 물품목록화(조달업체)

- 물품목록화는 조달업체가 다수공급자계약 체결을 희망하는 물품이 나라장터의 상품검색 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야 계약체결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공급물품 및 용역의 물품목록화 여부를 확인 필요함.
- 조달청 상품정보시스템(<https://www.g2b.go.kr:8053/main/main.do>) 접속하여 공급 물품 또는 용역명으로 검색하고 미등록 된 경우 “목록화요청” 메뉴를 통해 계약희망 물품 또는 용역을 등록함



* 목록화에는 2주~4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납품일정이 촉박한 상황에서 추진하면 납품계약 체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 여유를 두고 등록하여야 함

3. 구매 공고(조달청)

- 물품목록화가 완료된 이후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 계약을 희망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공고를 확인하여야 함
- 다수공급자계약은 나라장터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입찰공고와 달리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 대상 물품과 용역에 대한 입찰공고를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종합쇼핑몰에서 다수공급자구매공고 클릭하면 나라장터 상세공고로 연계됨

나라장터종합쇼핑몰 검색 (세부품명, 규격, 업체명 등) | 상세검색 | 도움말

전체 카테고리 | 인종물 | 테마물 | 할인행사/기획전 | **조달가격신고** | 불공정거래신고

물품 | 서비스

도로/철도/시설
사무/교육/가구
섬유/의류/생활
소방/안전/의료
소프트웨어
식품류
운동/취미/악기
전기/기계/설비
전자/정보/통신/영상
조경
차량/운송/운반
토목/건축/자재
화학/시험/계측

몸튼튼 마음튼튼 운동기구 기획전
(상체) (하체) (전신)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 확인 및 희망 물품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고확인하기

고객센터
대표 1588-0800
일반 042-610-1200
원격지원 원격지원(콜센터)
QnA 바로가기

공지사항 | 물품공지사항

2022년 하반기 나라장터 상생세일 개최 안내	2022/09/22
22년 하반기 MAS 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 결과 확정 안내	2022/07/27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분리발주) 제외사유 제출서류 안내	2022/07/28
(추가모집) 2022 하반기 나라장터 상생세일 참여업체 모집 안내	2022/07/27
22년 하반기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평가 계획 알릴	2022/07/04

전체보기

4. 공고검색(조달업체)

-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조달업체가 계약 희망하는 물품과 용역의 구매공고는 10자리로 구성된 세부품명 및 세부품명번호로 상세검색이 가능하므로 모든 정보를 활용하여 검색
- 구매공고가 검색되면 “공고서 상세보기” 메뉴를 클릭하여 공고정보를 확인하고 계약자격을 평가받기 위한 적격성평가(사전자격심사) 신청을 위한 “신청서 작성하기” 메뉴 클릭
- 공고가 검색되지 않을 경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계약체결 후 등록된 물품과 용역을 검색하여 확인되는 경우 해당 계약 담당과 및 담당자에게 구매공고 관련 문의 가능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 희망물품신청 >

구분: 세부품명 | 교실용결상

공고일: [] - []

세부품명번호: [] 조회

검색

총 검색건수 : 9건 [1/1] 10 목록고침

No.	입찰공고번호	공고명	실수요기관	게시일
9	20170320462	교실용결상외 17종	각 수요기관	2017/03/29
8	20150704818	교실용결상외 35종	각 수요기관	2015/10/29
7	20130320462	교실용결상외 35종	각 수요기관	2014/09/29
6	20120704005	소파외 61종	각 수요기관	2013/01/04
5	20120201193	소파외 60종	각 수요기관	2012/02/06
4	20110214437	소파외 78종	각 수요기관	2011/03/03
3	20100231970	소파외 76종	각 수요기관	2010/10/13
2	20080315360	소파외 64종	각 수요기관	2008/06/23
1	20070104076	학생용책상외 1종	각 수요기관	2007/01/15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Korea ON-Line E-Procurement System

입찰정보 | 물품 | 공사 | 용역 | 리스 | 외자 | 비속 | 기타 | 민간 | 공통

나의나라장터 | 나의메뉴 | 문서함

적격성평가 신청서

※ 메뉴경로 : 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 > 물품 > 계약관리 > 다수공급계약관리 > 적격성평가

공고명: 교실용결상의 17종 | 적격성평가번호: 20174000001

평가대상물품

공고번호: 20170320462-00 | 5 목록화 신청 | 신청하기

공고일자: 2017/03/29 | 4 연계여부: 예 / 아니오 | 수신지정: 조달청(본청)

신청자 정보

사업자등록번호: 9992100104 | 상호: 테스트51연합_123456

대표자명: 박혜빈빈 | *업태구분: [선택]

*담당부서명: [입력] | *담당자명: [입력]

*직위: [입력] | *연락처: [입력]

*FAX번호: [입력] | *e-mail: [입력]

신청확약사항

위 건 물품의 다수공급계약의 적격성평가와 관련하여 적격성 자기심사표 및 제출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불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의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 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자기심사표

No. | 세부품명번호 | 세부품명 | 단위 | 결격여부

1 | 5612150201 | 교실용결상 | 개 | 미심사

합상등록

6. 적격성평가결과/사전자격심사평가결과 확인(조달업체) / 결과통보(조달청)

- 적격성 평가와 사전자격심사 결과는 나라장터 로그인 > 조달업체업무 > ① 물품 > ② 계약관리 > ③ 다수공급계약관리 > ④ 적격성평가 / 사전자격심사(해당 메뉴 중 선택) > ⑤ 처리상태 확인 > ⑥ 적격성평가번호 클릭하여 확인 가능함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Korea ON-Line E-Procurement System

입찰정보 | 1 물품 | 공사 | 용역 | 리스 | 외자 | 비속 | 기타 | 민간 | 공통

나의나라장터 | 나의메뉴 | 문서함

조달업체업무

합상품목등록요청목록조회

다수공급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고시 제2014-7호, '14.3.6) 제4에 의거하여, 다수공급계약 체결 전일까지 국세청 이세로에서 귀사의 전자세금계산서 제출에 대한 동의를 하셔야 합니다. [동의방법]

1. 국세청 이세로(www.esero.go.kr) 접속(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2. 로그인과 동시에 자라제공동의 팝업창이 뜨면 '동의함' 클릭 후 '확인' (팝업창이 뜨지 않을 경우, 웹브라우저에 팝업차단 설정이 되어있는지 확인하고 '팝업해제' 해야 함)

* 본 팝업은 합상품목 승인신청 익일부터 호출됨.

문서번호: [입력] | 적격성평가번호: [입력]

공고번호: [입력] | 공고명: [입력]

작성일자: [입력] ~ [입력] | 상태: 전체 | 검색

No.	문서번호	적격성평가번호	공고번호	공고명	제출일자	처리상태	품목추가 여부
1	20170320462-00	20174000001	20170320462-00	교실용결상	2017/03/29	합상완료 [사상합의]	Y
2	20170320462-00	20174000001	20170320462-00	교실용결상	2017/03/29	합상완료 [사상합의]	Y
3	20170320462-00	20174000001	20170320462-00	교실용결상	2017/03/29	합상완료 [사상합의]	Y
4	20170320462-00	20174000001	20170320462-00	교실용결상	2017/03/29	합상완료 [사상합의]	Y
5	20170320462-00	20174000001	20170320462-00	교실용결상	2017/03/29	합상완료 [사상합의]	Y
6	20170320462-00	20174000001	20170320462-00	교실용결상	2017/03/29	합상완료 [사상합의]	Y
7	20170320462-00	20174000001	20170320462-00	교실용결상	2017/03/29	합상완료 [사상합의]	Y
8	20170320462-00	20174000001	20170320462-00	교실용결상	2017/03/29	합상완료 [사상합의]	Y
9	20170320462-00	20174000001	20170320462-00	교실용결상	2017/03/29	합상완료 [사상합의]	Y
10	20170320462-00	20174000001	20170320462-00	교실용결상	2017/03/29	합상완료 [사상합의]	Y

7. 가격 기초자료 제출(조달업체) / 가격자료 접수(조달청)

- 적격성평가/사전자격심사평가를 통과하면 협상품목으로 등록된 계약희망 품명에 대한 가격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 아래와 같이 나라장터에 로그인하면 제출하여야 할 가격자료 목록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필수 제출 가격자료는 가격 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 가격증빙자료(매출원장 사본(동기간에 대한 전체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공표가격표 또는 카다로그 가격표 등)를 미리 준비하여야 함
 - * 가격자료는 조달업체가 준비해야 하는 것으로 사전 정리하지 않으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계약체결 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야 함.
- 나라장터 로그인 > 조달업체업무 > ①물품 > ②계약관리 > ③다수공급계약관리 > ④가격기초자료 제출 ⑤ 문서번호, 적격성평가번호, 공고번호, 공고명, 작성일자, 상태 중 하나이상으로 검색
 - * 검색을 하지 않으면 적격성 평가(사전심사) 완료된 전체 리스트가 조회됨
 - * 적격성 평가(사전심사) 신청이 평가완료 되면 목록에 미작성건이 생성됨
- ⑥ 처리상태(미작성) 확인 후 ⑦ 문서번호 또는 적격성 평가 번호 클릭함



8. 협상가격 제출(조달업체) / 협상기준가격 작성 및 가격협상 통보(조달청)

- 가격기초자료 제출 후 조달업체가 희망하는 협상가격을 아래의 절차에 따라 제출하고 온라인으로 협상을 진행하여 가격협상이 이루어짐
- 나라장터 로그인 > 조달업체업무 > ①물품 > ②계약관리 > ③다수공급계약관리 > ④협상가격 제출 ⑤ 적격성평가번호, 공고번호, 분류번호, 물품분류명, 가격협상일자, 상태 중 하나 이상으로 검색
 - * 검색을 하지 않으면 전체 리스트가 조회됨
- ⑥ 상태(미협상) 확인 후 ⑦ 적격성평가번호를 클릭함



9. 계약 체결 및 종합쇼핑몰 등록

- 가격협상이 완료되면 해당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고 해당 물품 또는 용역으로 계약체결이 된 3개 이상의 업체가 존재하면 종합쇼핑몰에 등록됨

2.5 서비스 공공조달플랫폼 '이음장터'

2.5.1 이음장터 개요

개요

- 조달청 이음장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한 규모의 서비스 계약을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계약 플랫폼임.
- 국가계약법령 상 새로운 계약제도는 아니나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 중 소액 계약인 경우 수요 서비스를 등록함으로써 해당 서비스 공급업체가 공급기회를 확인하고 제공할 수 있음.
- 반면 공공부문의 수요가 있는 소규모의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업체가 서비스 상품을 등록하고 이를 공공(수요)기관에게 공식적으로 홍보하고 공개적으로 수의계약 체결을 할 수 있는 계약지원 수단으로 볼 수 있음.

대상품목

- 대부분 14종에 해당하는 모든 서비스 품명 및 세부품명
- 계약금액 추정가격 20백만원 이하(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의 경우 50백만원 이하)
* 부가세 포함시 각각 22백만원, 55백만원까지 계약체결 가능

세부내용

- 공급업체는 조달청과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자유롭게 공급 희망하는 서비스 등록 가능
- 수요(공공)기관은 구매 희망 서비스가 없는 경우 직접 필요한 서비스를 등록하여 공급 가능 업체와 계약체결 가능
- 수요기관이 등록한 구매 희망 서비스에 대한 견적제출을 통한 계약 가능
- 공급업체가 등록 가능한 서비스 수는 제한이 없으며(특정한 상황에서 제한 가능) 등록기간은 12개월임(연장 가능)

번호	송신자	문서명	문서번호/공사명	견송일자	문서상태	첨부
1	C195370100005 조달청공지	물품 변경계약서(초안)	2012121913201 test	2013/01/31 17:30:26	미개봉	0
2	C195370100005 조달청공지	검수반려통보서	검사검수20120420 1년	2013/01/31 17:14:06	미개봉	0
3	C195370100005 조달청공지	물품계약서(초안)	2008010010600 계약건	2013/01/31 16:54:32	개봉	0
4	C195370100005 조달청공지	물품계약서(초안)	2013013549700 노트북 구매 모의공고-11	2013/01/31 16:52:06	미개봉	1

물품계약서(초안)

별첨 계약물품명세서, 물품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물품 구매계약을 체결하며 이를 충실히 이행할것을 약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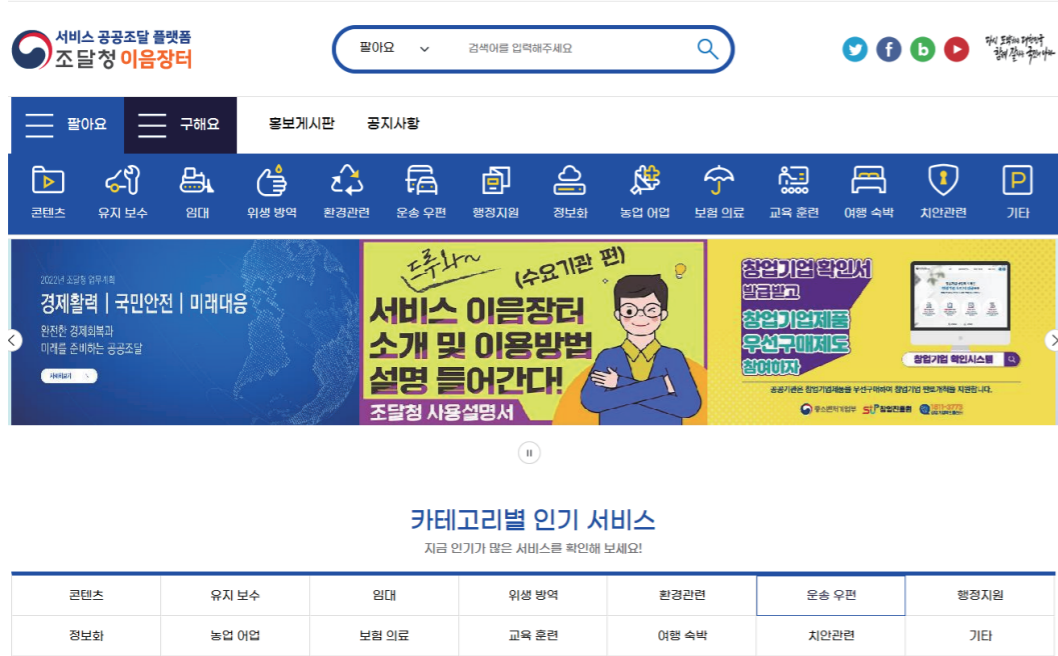
<계약자>	
<발주처> 조달청공지 계약관	<계약상대자> 대표자 : 오여원 상호 : 테스트51연합_1234567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덕로10511 사업자등록번호 : 9992100104 주민등록번호 : 790830***** 전화번호 : 2222-4056-7163 팩스번호 : 042-367-8359
담당자명 : 수요기관	
담당전화 : 042-2511-5551	
담당팩스 : 042-2511-2222	

계약방법 : 수의계약	국가(지방)계약법시행령 : 추정가격이 건설공사 2억원, 전문공사 1억원, 기타공사 8천만원, 물품·용역 등 5천만원 이하의 계약
계약번호 : 2013013549700	구매관리번호 : 20120826462
계약건명 : 노트북 구매 모의공고-11	
품명 : 노트북컴퓨터	수량 : 40
계약금액 : 36,000,000 원	수수료 : 원
계약기간 : 계약체결 후 10일	지체상금율 : 0.15 %/일
납품기한 : 계약후: 10 일	분할납품 : 가능
수요기관 : 조달청공지	납품장소 : 지정장소
검사기관 : 조달청공지	검사기관 : 조달청공지
지급방법 : 직불	계약구분 : 총액
하자담보책임기간 (비고) :	
[부가정보]	
인지세액(과세대상여부) : 40,000 원 (Y)	지역개발/도시철도채권 : 720,000 원 (지역개발채권)
계약보증서 전자제출여부 : 전자접수 및 직접수납	계약보증금 : 3,600,000 원

No.	문서명	파일명
1	테스트	test.txt

계약물품명세서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품명	규격	지역	단위
No.	인도조건	수량	단가	계약금액	수요기관
기타					
1	43211503	노트북컴퓨터	규격서참조		대
	납품장소도	40	900,000	36,000,000	10 일

- 수요기관이 필요한 서비스를 등록하는 기간은 필요시기 등을 고려하되 최장 3개월임.
- 공급업체가 등록한 서비스별 가격은 업체가 제시한 희망가격(조달청의 별도 가격검증 절차 없음)으로 수요기관과 협상을 통해 조정 가능함.



이음장터 소개 및 이용 유의사항 안내

- ▶ 수요자(공공기관)와 공급자(조달업체)가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협상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조달청이 운영하는 공공조달 플랫폼입니다.
- ▶ 수요자는 편리한 서비스 상품 구매가 가능하고, 공급자는 계약체결 절차 없이 상품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음장터 거래 주요내용

수요자(공공기관) : 편리한 서비스 상품 구매

- ① 서비스 상품이 있는 경우 : (팔아요) 상품등록업체에 견적 요청 → 주문 또는 계약체결
- ② 서비스 상품이 없는 경우 : (구해요) 직접 필요한 상품을 등록 → 업체로부터 견적을 제출받아 주문 또는 계약체결
 - * 수요자가 등록상품이 없는 경우 직접 필요한 상품을 등록(구해요) 하는 방식은 이음장터만의 장점입니다.

공급자(조달업체) : 계약체결 없이 상품 거래

- ① 상품등록 : 나라장터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서비스 기업은 누구나 회원가입 및 서비스상품 등록(팔아요)
- ② 상품거래 : 등록상품(팔아요) 및 수요자 구매상품(구해요)에 대한 견적 제출, 주문 또는 계약체결

« 이음장터 이용 유의사항 »

- ① 서비스 상품 거래는 부가세 포함 22백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의 경우 부가세 포함 55백만원 까지 가능(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의 1인수의계약 참고)
- ② 이음장터 등록 및 거래 상품은 조달청이 계약체결 하여 공급하는 상품이 아니며, 상품가격은 업체 희망가격으로 상품 이용과 관련한 모든 책임은 거래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2.5.2 이음장터 이용가능 서비스

- ☞ 현재 공공계약 가능한 대분류 14종, 중분류 141종에 해당하는 모든 서비스를 자유롭게 등록하고 계약체결 가능
- ☞ 사회적기업의 경우 '위생방역' '콘텐츠 제작' '여행·숙박' 등의 서비스와 '기타' 서비스 부문에서 공급 가능한 서비스를 등록하여 수요(공공)기관과 계약기회 확대 가능

대분류(14)	중분류(141)	(세부) 품명번호	품명설명
1	농업 · 어업 (7개)	어업관련서비스	어업, 양식업, 물고기 포획, 어획물정리, 수산물 부화 및 종묘 생산 등
		화훼원예서비스	꽃이나 관상용 화분을 수요자에게 직접 제공하고 관리하는 서비스.
		축산업서비스	가축 사육, 품종개량, 혈통검사, 가금 감별 서비스 등
		농업서비스	작물재배, 종자 및 묘목 생산, 작물심기, 농약뿌리기, 가지치기, 수확, 수확 후 서비스 등
		임업서비스	영림, 벌목, 산불방지 서비스, 산림 병충해 방지 서비스, 수목조사 및 평가 서비스, 목재 운반 이동 서비스 등
		기타동물관련서비스 (포획방생)	유기견 및 유해 동물 포획, 보존동물의 이주 및 방생서비스 등
		수자원개발서비스	수자원의 조사,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연구조사서비스
2	유지 보수 (7개)	조경관리서비스	조경수, 잔디, 화초, 돌 등 각종 조경용 구성품을 유지 관리하는 서비스. 조경 식재 공사는 별도로 분류함
		엘리베이터유지보수서비스	승강기 수리, 유지 서비스
		운송장비수리서비스	운송장비 수리, 유지 서비스
		의료및실험기기수리서비스	의료 및 실험기기 수리, 유지 서비스
		사무용기기수리서비스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수리, 유지 서비스
		시설설비유지관리서비스	건물 내의 기계, 전기 및 방송통신 등의 시설설비를 유지관리 하는 서비스
		기타수리서비스	별도 분류되지 않는 기타 수리서비스

대분류(14)	중분류(141)	(세부) 품명번호	품명설명	
3	임대 (9개)	운송장비임대서비스	73169001	자동차를 제외한 운송 장비를 임대하는 서비스(단, 운전자는 제외)
		사무용기기임대서비스	73169002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를 임대하는 서비스
		건설장비임대서비스	73169003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중장비, 차량, 기기류 등 장비를 임대하는 서비스
		체력단련장비임대서비스	73169004	상체 및 하체 등의 신체근력을 단련하기 위하여 실·내외에서 사용하는 운동장비를 임대하는 서비스
		영상·음향및조명장치 임대서비스	73169005	영상, 음향, 조명기기를 임대하는 서비스
		기타물품임대서비스	73169006	별도 분류되지 않는 기타 물품임대 서비스
		사무환경기기임대서비스	73169007	쾌적하고 위생적인 사무환경의 조성을 위해 이용되는 가전기기에 대해 제품을 임대하고 정기적으로 소모품교체 등의 유지관리를 제공하는 서비스
		화초류임대서비스	73169008	환경정비 및 행사 등에서 사용되는 화초류에 대해 정해진 기간동안 정해진 장소에 목적에 맞는 화초류를 원하는 형태로 전시할 수 있도록 조형물 또는 화분의 설치, 유지관리 및 원상복구를 대행해주는 서비스.
		자동차임대서비스	78111808	돈을 받고 자동차를 빌려 주는 차량 임대와 관련된 서비스
4	위생 · 방역 (4개)	소독서비스	76101590	건물, 가구 및 기기를 소독, 구충 및 방제 하는 서비스
		건물청소서비스	7611150101	주거용, 상업용 또는 산업용 건물의 내·외부를 청소하는 서비스
		기타청소서비스	76111599	도로 및 공원 등 건물외의 장소를 청소하는 서비스
		방역서비스	85119090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유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행해지는 각종 조치 활동 서비스
5	환경 관련 (18)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서 정한 사업장 폐기물 중 건설관련 폐기물을 수집, 운반 및 처리하는 서비스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9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서 정한 사업장 이외의 가정이나, 사무실, 길거리 등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하는 서비스

대분류(14)	중분류(141)	(세부) 품명번호	품명설명
5	환경 관련 (18)	기타비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699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서 정한 사업장 폐기물 중 유해성이 없는 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하는 서비스. 건설폐기물은 별도로 분류함
		분뇨처리서비스	76121797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는 서비스
		폐수및하수처리서비스	76121798 산업폐수 및 하수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서비스
		의료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901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을 처리하는 서비스
		폐기물재활용서비스	76122399 폐기물을 재사용, 재이용하거나 재사용, 재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서비스
		실내및기타오염조사 측정서비스	77101990 실내 및 기타 오염의 정도 및 상태를 감시, 관리하고 측정하는 서비스
		실내및기타오염방지 복원서비스	77111690 실내 및 기타 오염의 정도 및 상태를 감시, 관리하고 측정하는 서비스
		기타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999 사업장 폐기물 중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을 처리하는 서비스. 방사능, 의료폐기물은 별도로 분류함
		대기오염조사측정서비스	77121504 대기오염 정도 및 상태를 감시, 관리하고 측정하는 서비스
		대기오염방지복원서비스	77121590 대기오염을 방지하고 오염된 대기를 정화하여 복원하는 서비스
		토양오염조사측정서비스	77121606 토양오염 정도 및 상태를 감시, 관리하고 측정하는 서비스
		토양오염방지복원서비스	77121690 토양오염을 방지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여 복원하는 서비스
		수질오염조사측정서비스	77121707 수질오염 정도 및 상태를 감시, 관리하고 측정하는 서비스
		수질오염방지복원서비스	77121790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전문장비 및 인력을 동원하여 유지관리 및 복원을 대행해주는 서비스
		소음공해방지역역	77131602 소음이 발생하는 소음원 지점을 추적하여 이를 제거하거나 감시하며 통제하는 것과 관련된 용역
		소음조사측정서비스	77131603 소음의 정도 및 상태를 감시, 관리하고 측정하는 서비스

대분류(14)	중분류(141)	(세부) 품명번호	품명설명
6	운송 · 우편 (17)	항공화물운송서비스	78101599 비행기를 이용한 화물 운송과 인명 구조, 화재 진압 및 방제 서비스
		철도화물운송서비스	78101604 기차를 이용한 화물 운송서비스
		수상화물운송서비스	78101799 선박을 이용한 화물 운송서비스
		도로화물운송서비스	78101808 차량을 이용한 화물 운송서비스
		복합화물운송서비스	78101999 두 가지 이상의 운송방식을 이용한 화물 운송서비스
		파이프라인운송서비스	78102199 원유 및 천연가스 등을 파이프라인을 통해 운송하는 서비스
		헬기서비스	78111501 헬기를 이용한 인명 구조, 화재 진압 및 방제 서비스
		항공여객운송서비스	78111502 비행기를 이용한 여객 운송서비스
		철도여객운송서비스	78111604 기차를 이용한 여객 운송서비스
		수상여객운송서비스	78111799 선박을 이용한 여객 운송서비스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	7811189901 각 공공기관 직원들의 출·퇴근 시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차량운행 서비스
		통학운송서비스	7811189902 각 급 학교 학생들의 등·하교 시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차량운행 서비스
		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	7811189904 현장견학, 행사차량 등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기타 차량운행 서비스
		포장서비스	78121599 화물의 취급 및 운반이 용이하도록 포장하는 것과 관련된 서비스로, 상자나 컨테이너에 물건을 담는 서비스 등
		창고서비스	78131699 곡물을 제외한 일반 화물창고 관련서비스로, 온도 조절장치 등 물품 보존에 필요한 특수한 시설이 없이 보통 상온에서 보존이 가능한 물품을 보관하는 물류창고로, 팔릿을 이용한 창고 등의 서비스도 이에 속함
		화물조사서비스	78141602 운송화물의 포장상태, 파괴 여부, 유해성 여부, 해충의 전파 여부 등을 조사하는 서비스
		우편발송서비스	8014162201 우편물을 배달하는 서비스
7	행정 지원 (19)	전시부스설치서비스	7215409901 상설 또는 비상설의 견본상품박람회, 무역상담회, 박람회 등의 전시회를 위해 재활용이 가능한 기본부스용 전시자재를 사용하여 일률적 또는 조립식으로 전시부스 및 관련 부대시설을 설계, 제작, 설치, 기획운영하는 서비스

대분류(14)	중분류(141)	(세부) 품명번호	품명설명	
7	행정 지원 (19)	전시홍보관설치서비스	7215409902	상설 또는 비상설의 견본상품박람회, 무역상담회, 박람회 등의 전시회를 위해 여러 가지 규격의 전시 자재를 사용하여 독립된 형태의 전시홍보관 및 관련 부대시설을 설계, 제작, 설치, 기획운영하는 서비스
		법무서비스	80121699	법률사건에 대한 소송, 변호, 조언 및 상담과 법적문서 작성. 그리고 특허권, 저작권 및 기타 권리 등의 보호를 위한 자문서비스와 공증 및 심판중재 등의 서비스
		고객센터운영서비스	80141619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고객의 불만 또는 기타 요청사항을 접수하여 처리해 주는 서비스
		회의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0201	회의, 포럼의 기획 및 운영을 대행해 주는 서비스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90	전시회, 견본상품박람회, 무역상담회, 박람회, 축제, 회의 및 공연 등을 제외한 기타행사를 기획 및 대행해 주는 서비스.(예: 기념식, 개막식 및 추모식 등)
		기타사업지원서비스	80161590	그 외 분류되지 않은 사업지원 서비스
		사업장위탁운영서비스	80161598	박물관, 전시관, 홍보관 등 고객의 사업장을 대신해서 운영·관리해 주는 서비스
		사무지원서비스	80161599	사무, 비서 등과 같이 회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서비스로 키보드입력, 회의계획, 시청각자료 준비 등이 포함됨
		시장및여론조사서비스	80171501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시장 및 여론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조사, 기록, 분석하는 서비스
		학술연구조사서비스	80909001	경제 및 산업지원정책 수립, 경제동향 및 산업실태 파악 등의 분야에 대한 연구조사 서비스 (예: 미래지식경제정책 방향 연구, 소상공인 실태 조사, 중소기업지원정책 실효성 제고 방안 등)
		문서작성서비스	82111899	문서의 편집, 교정, 타이핑, 문서처리, 문서의 속기, 필사 등의 서비스
		도서관관련용역	83121599	많은 책과 기타 간행물 등을 수집하고 분류하여 일반이 볼 수 있도록 한 도서관과 관련된 용역

대분류(14)	중분류(141)	(세부) 품명번호	품명설명	
7	행정 지원 (19)	정보센터관련용역	83121699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분류하여 일반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 정보센터와 관련된 용역으로, 여행, 전산, 산업정보센터 등이 이에 속함
		회계서비스	84111599	재무제표 작성, 재무회계 서류의 작성, 감사, 조정, 결산, 원가계산, 회계자문 등의 서비스
		전람회기획및대행서비스	9015180201	소개, 교육, 선전 따위를 목적으로 물건이나 예술 작품을 진열하여 놓고 여러 사람에게 보이는 행사의 기획 및 운영을 대행해 주는 서비스
		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	9015189001	축제행사의 기획 및 운영을 대행해 주는 서비스
		국제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8901	국제행사의 기획 및 운영을 대행해 주는 서비스
		중대재해예방관리서비스	8016159701	경영책임자 및 공공기관장의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예방관리의무에 대한 업무처리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서비스.
8	정보화 (18개)	정보화전략계획서비스	80101507	조직, 기관의 정보기술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정보시스템 또는 정보인프라 등의 정보기술을 연계하여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분석 또는 평가후 개선방안, 대책 수립, 이행 계획 수립 등으로 전략 및 해결책을 찾고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서비스
		정보화프로젝트관리서비스 (PMO)	80101698	전산 프로젝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업무분석, 설계, 구축, 테스트 등의 단계별로 프로젝트 관리를 수행하는 서비스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80101699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관점에서 정보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관리감독하는 서비스
		IT컨설팅전문가제공서비스	8011159802	조직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시각에서 조직 경영 환경을 이해하고 대상 업무 및 정보시스템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지도, 자문 및 상담을 수행하는 전문가를 제공하는 서비스

대분류(14)	중분류(141)	(세부) 품명번호	품명설명
8	정보화 (18개)	정보보호전문가 제공서비스	조직의 정보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보안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법제도 준수, 보호관리 활동을 수행하며, 위험관리에 기반한 정보보호 대책을 도출, 실행 또는 객관적인 검증과 자문을 수행하는 전문가를 제공하는 서비스
		데이터분석전문가 제공서비스	데이터 이해 및 처리 기술에 대한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데이터 분석 기획, 데이터 분석, 데이터 시각화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프로세스 혁신 및 마케팅 전략 결정 등의 과학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일을 수행하는 전문가를 제공하는 서비스
		디자인전문가제공서비스	주로 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개선과 관련하여 그래픽 작업이나 디자인 작업 시 요구되는 관련 전문가를 제공하는 서비스
		IT운영유지관리전문가 제공 서비스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해 전산장비,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를 제공하는 서비스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서비스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정보교환 등의 목적을 위해 시스템 기반을 구축하는 서비스
		컴퓨터네트워크또는인터넷 보안서비스	정보 시스템 또는 인프라 보호를 위한 보안·인증에 관련된 서비스
		컴퓨터시스템설치	컴퓨터하드웨어나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변기기인 입출력장치 등을 설치하는 용역
		운영위탁서비스	시스템 인프라 전반의 운영 및 관리를 전문 IT 기술 기반을 통해 위탁관리하는 서비스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기 구축된 컴퓨터시스템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관리하는 서비스로, 데이터 및 시스템의 분석 하드웨어 유지·보수 등이 이에 속함
		데이터처리서비스	기록물, 도면, 문서 등을 스캔하여 전산화(디지털화)하는 자료처리 서비스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	인터넷서비스가 원활히 되도록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 등을 개발하는 서비스

대분류(14)	중분류(141)	(세부) 품명번호	품명설명
8	정보화 (18개)	전산장비유지관리서비스	컴퓨터하드웨어나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변기기인 입출력장치 등을 유지·보수하는 서비스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측량, 탐사, 촬영 등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지도를 제작하는 서비스
9	콘텐츠 제작 (10개)	온라인홍보및방송 콘텐츠서비스	기관, 정책 홍보를 위해서 홈페이지 및 인터넷 방송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는 서비스
		음원제작서비스	음악, 오디오 기록물, 지하철 안내방송 등의 음원을 제작하는 서비스. 음원 편집 서비스도 포함
		디지털인쇄물제작서비스	컴퓨터, 스마트폰 등의 디지털매체를 통해 읽기가 가능한 인쇄물을 제작하는 서비스
		종이인쇄물제작서비스	종이 인쇄물을 인쇄, 제작하거나 출판하는 서비스
		동영상제작서비스	영화, 비디오물, 애니메이션 등을 제작하는 서비스. 동영상 편집 서비스를 포함
		사진촬영처리서비스	개인용, 상업용, 산업용 목적으로 사진을 촬영하거나 처리하는 서비스. 슬라이드 제작, 사진의 복원 및 수정 등의 서비스를 포함
		디자인서비스	실내디자인, 제품디자인, 시각전달매체 디자인(CI, 캐릭터디자인, 그래픽디자인 등) 서비스 또는 디자인에 대한 자문 등
		가상현실(VR)서비스	직접 경험하는 듯한 가상의 현실세계를 경험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며, 가상의 환경은 주로 3차원(3D)으로 개발되고 교육분야·엔터테인먼트 등에서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상품을 공급하는 서비스
		혼합현실(MR)서비스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의 정보를 결합해 두 세계를 융합시키는 공간을 만들어내고 시각·청각·촉각 등 오감을 활용하여 현실감이 느껴지는 기술을 제공하며, 교육분야·엔터테인먼트 등에서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상품을 공급하는 서비스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디지털 콘텐츠를 개발 또는 제작하는 서비스

대분류(14)	중분류(141)	(세부) 품명번호	품명설명
10	보험·의료 (7개)	자동차보험	84131503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보험
		여행보험	84131517 여행중 발생하는 사망 및 신체상해와 질병치료, 휴대품손해, 배상청구 등 각종 손해를 보상
		손해보험	84131598 보험 사고로 인한 사고(질병·상해 및 간병 제외)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지급을 보장하는 서비스(예: 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등)
		생명보험	84131601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을 보장하는 서비스. (예: 생명보험, 연금보험, 퇴직보험 등)
		책임보험	8413160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 경우에 보험자가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손해보험
		제3보험	84131698 사람의 질병·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의 지급을 보장하는 서비스. 단체보험은 별도로 분류함
		의료검진서비스	85101599 신체적, 정신적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서비스
		11	교육·훈련 (6개)
과학교육서비스	86101697 과학기술 분야의 지식과 기술 제공을 위한 교육 서비스		
정보화교육서비스	86101698 정보화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서비스		
취업지원교육서비스	86101899 취업을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과 지식 제공을 위한 교육 서비스		
콘텐츠사용서비스	86111597 디지털화된 이미지, 사진, 동영상, 소리 등의 콘텐츠를 일정기간동안 다운로드, 편집, 재사용을 허가하는 서비스		
어학교육서비스	86111799 한국어, 외국어 등의 언어구사 능력 향상과 필요한 언어기능의 습득을 지원해 주기 위한 교육 서비스		
12	여행·숙박 (8개)	체험활동서비스	86141796 지역의 생태, 자연, 전통, 문화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관광자원, 시설 및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수학여행서비스	86141797 교육 활동의 하나로써 교사의 인솔 아래 실시하는 수학여행서비스.

대분류(14)	중분류(141)	(세부) 품명번호	품명설명
12	여행·숙박 (8개)	수련활동서비스	86141798 심신수련을 위하여 체육, 문화, 오락, 레크레이션, 자연체험을 제공해 주는 서비스
		출장음식서비스	90101603 파티, 오찬, 연회 등의 행사시에 지정된 장소에 출장하여 조리한 음식물을 제공하는 서비스
		숙박서비스	90111599 호텔, 여관, 호스텔 등에서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서비스.(음식을 함께 제공하는 숙박시설 제공 서비스도 포함)
		국외여행서비스	90121598 국외의 공무 출장·연수 및 수학여행 등에 필요한 여행서비스
		국내여행서비스	90121599 국내 연수 및 여행을 위해 관련 시설 이용의 알선, 여행 안내 등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공연기획및대행서비스	90131590 뮤지컬, 연극무대 등 공연을 대행(기획 및 운영)해 주는 서비스
13	치안 관련 (5개)	치안유지서비스	92101501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보전하는 치안과 관련된 용역으로, 폭동진압, 범죄예방과 같은 업무가 이에 속함
		응급이송서비스	92101902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으로 환자를 이송하고 그 과정에서 행해지는 응급치료 서비스 등
		수색및구조관련용역	92101999 재난을 당하여 위기에 빠진 사람을 수색하고 구조하는 용역으로, 인명구조 헬기의 운용도 이에 속함
		경호서비스	92121590 보디가드, 경호견 서비스, 경호 서비스 등 사람의 생명 및 신체를 위해로부터 보호해주는 서비스
		시설물경비서비스	9212159901 건물경비, 사업체보안, 순찰서비스 등과 같이 시설물의 경계, 재산보호 및 도난을 방지하는 서비스
14	기타 (7개)	차량도장서비스	78180299 차량의 차체 등을 도색하는 서비스
		주차장서비스	78181703 운송 수단 시설에 관련된 주차 및 관리를 위한 서비스
		장례및묘지서비스	85171599 죽은 사람에 대해 장사를 지내거나 묘지를 관리하고 공급하는 서비스
		미용관련용역	91101699 화장이나 머리손질 등으로 용모를 아름답게 매만지는 일과 관련된 용역.

제3장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 3.1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개요
- 3.2 사회적기업 제품 개요
- 3.3 우선구매 절차
- 3.4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의 제출·공고
- 3.5 2021년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 및 계획



대분류(14)	중분류(141)	(세부) 품명번호	품명설명
14	기타 (7개)	패션상담용역	의류의 착용을 세련되고 아름답게 돋보이도록 상담하여 주는 일과 관련된 용역.
		세탁서비스	옷이나 가족에 묻은 오물을 물과 세제, 또는 용제 등을 이용하여 깨끗하게 세탁하는 일과 관련된 서비스
		가사보조관련용역	식사의 장만과 설거지, 의복의 조제, 빨래보관, 이부자리의 소제와 정리, 가옥, 가구, 정원 등의 관리와 같은 가사보조와 관련된 용역.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3.1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개요

1. 목적 및 근거

☞ 목적

-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 제품(재화 및 서비스)을 적극적으로 우선구매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의 판로지원 및 자생력 제고

☞ 법적 근거 :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

-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의무(제12조)
 -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 또는 용역 구매 시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
-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 제출 · 공고(법 제12조, 시행령 제12조의2)
 -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증대를 위해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
 -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공기관별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2. 우선구매 대상기관

사회적기업 육성법

- 제12조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및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 제12조의2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해당 연도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과 해당 기관의 총 구매액에 대한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액 비율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별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우선구매 대상기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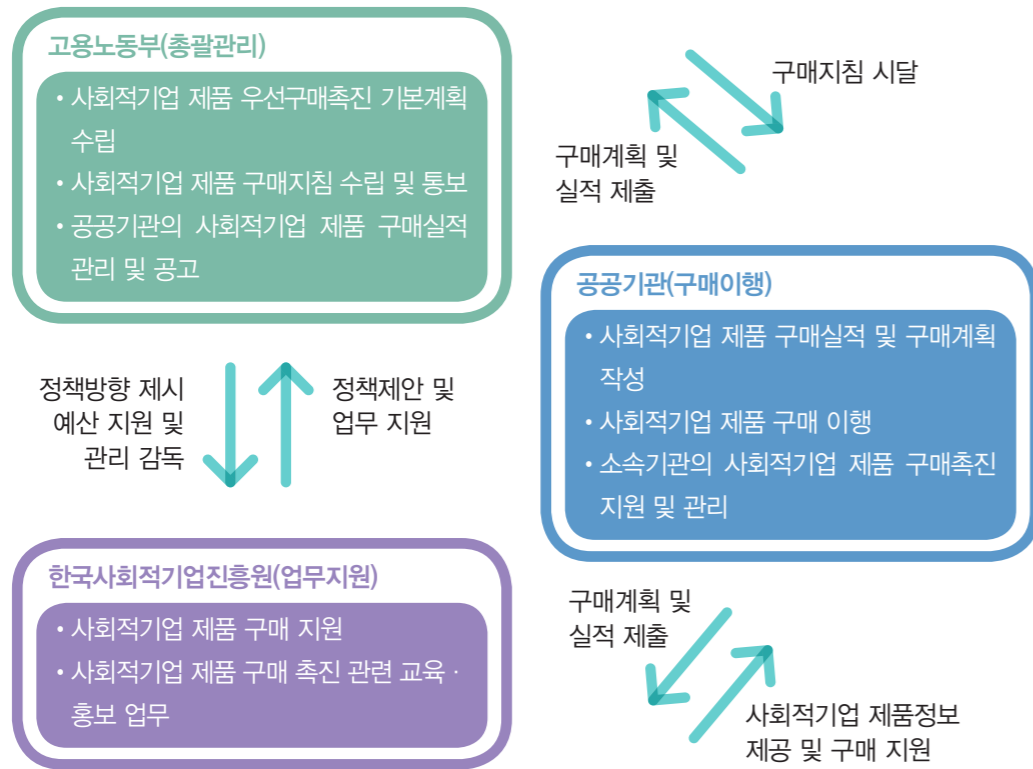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참고: 21년 구매실적 및 22년 구매계획 제출 대상 공공기관 현황〉

(단위 : 개)

국가 기관	자치단체		교육청	공기업	준정부 기관	기타 공공	지방 공기업	지방 의료원	기타 특별 법인	합계
	광역시	기초								
55	17	226	17	36	95	218	156	35	6	861

3. 추진체계



3.2 사회적기업 제품 개요

☞ 사회적기업 제품의 정의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사회적기업*이 생산하여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

* 인증 사회적기업 : '22년.9월 기준 4,090개소 인증, 3,436개소 활동 중(예비 사회적기업과는 다른 개념)이며, 인증 사회적기업 리스트는 p125 참조

〈 사회적기업 인증제도 〉

구분	사회적기업 인증
표시	
개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상의 요건을 갖춘 조직을 인증절차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로 인증
법적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사회적기업 인증) 및 제8조(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및 인증절차)
인증기준	조직형태,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유급 근로자 고용,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정관규약 등 구비 및 기재사항 준수 여부 (상법상회사·합자조합인 경우 : 이윤의 3분의 2 이상 사회적 목적 재투자)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 지역사회공헌형
인증기관	고용노동부

☞ 구매실적 인정기준

-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구매하거나, 계약수행 과정 및 바우처 사용 등을 통한 간접적 구매도 실적으로 인정
 - ① **직접구매** :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구매한 실적
 - ② **간접구매**
 -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이 아닌 기업(비사회적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계약기업(비사회적기업)을 통해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한 실적 인정**
 - * 단, 계약과 무관한 구매, 구매대금이 아닌 출연금·기부금·보조금 등을 통한 구매는 불인정
 - 자치단체에서 발행된 **바우처** 등이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에 사용**되어 대금이 지급된 실적 인정
 - * 단,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에 사용된 바우처 실적만 인정되며, 출연금·기부금·보조금 등을 통한 구매는 불인정



3.3 우선구매 절차



1 단계 : 구매대상 품목 확인

☞ (온라인) e-store 36.5(www.sepp.or.kr)의 '사회적경제 상품몰'

- (통합검색으로 찾기) 화면 중앙 상단의 통합검색창을 활용하여 상품명 및 기업명 등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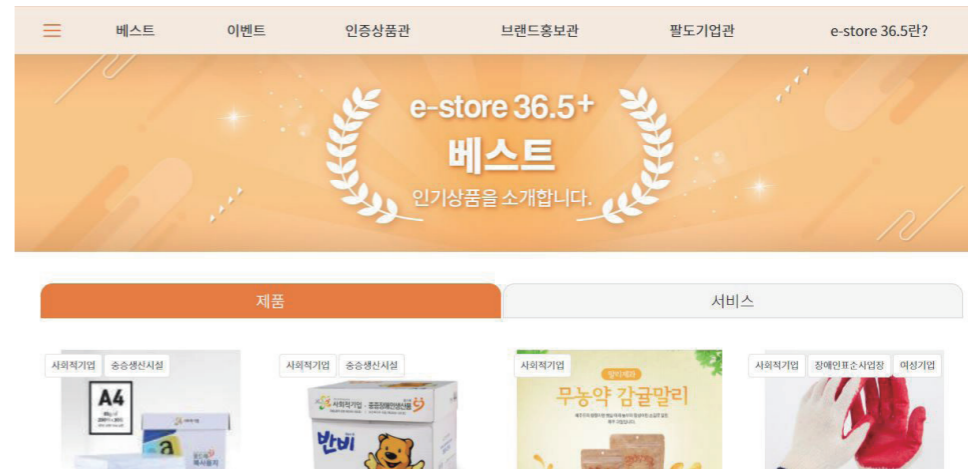
- (상품분류로 찾기) 좌측 상단 메인메뉴에서 제품 또는 서비스 선택 후 상세검색 창에서 원하는 카테고리를 선택하여 검색



- (인증유형별 검색) 화면 중앙 상단 [인증상품관]을 통해 인증기업 및 상품 유형별 검색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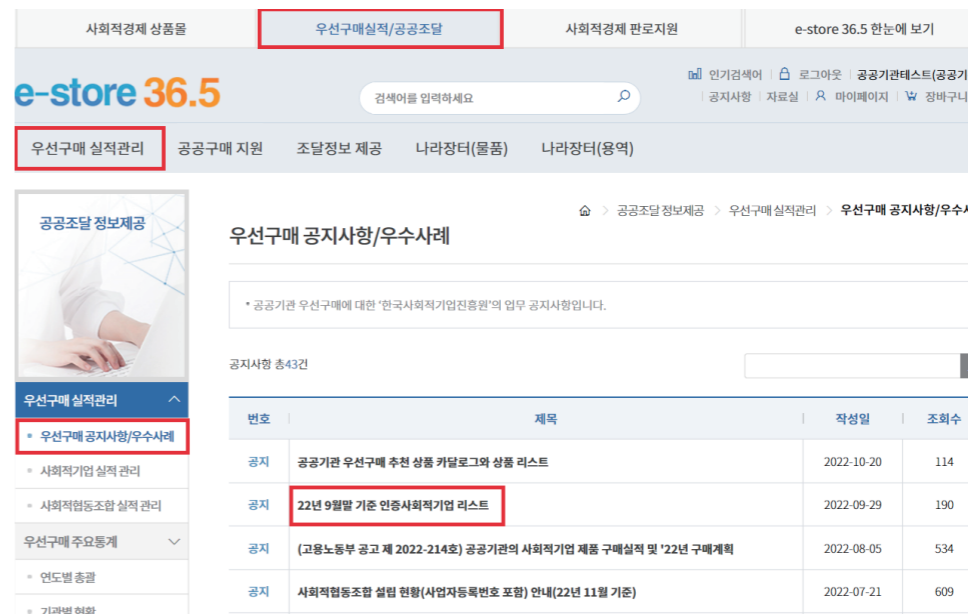


- (인기상품 확인) 화면 좌측 상단 [베스트] 인기상품 창에서 확인가능



- (기업으로 찾기) [우선구매 실적관리] → [우선구매 공지사항/우수사례]에서 사회적기업 리스트 다운로드 가능

* 단, 공공기관 회원으로 로그인 후 리스트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



☞ (오프라인) 공동판매장(스토어 36.5)

- 오프라인 판매장 “스토어 36.5”에 문의하여 구매

* 지역별 매장 입점 현황은 e-store 36.5(sepp.or.kr) 접속

→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 [공동판매장(Store 36.5)]에서 확인 가능

〈스토어 36.5 현황(86개소, 22.10월 기준)〉

연번	지역	매장명	주소	연락처
1	서울	강서점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로 5-7 1층	02-3663-6335
2	서울	개포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4길 17 개포주공5단지 상가 101호(505동앞)	02-445-8703
3	서울	공릉점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34길 23	02-975-7145
4	서울	구산점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175, 엘타워 1층(구산동)	02-385-6233
5	서울	금천점	서울특별시 금천구 롯데캐슬골드파크 마르쉐도르 3차 지하1층	070-4432-3792
6	서울	낙성대점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234길 6, 1층	02-883-8703
7	서울	노원점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409 노원역 7호선 4번 출구 스토어36.5노원매장	02-3391-3650
8	서울	도곡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65길 22 오이빌딩 103호	02-3462-7117
9	서울	망원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로 57 1층 두레생협	02-333-0518
10	서울	목동 부영점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411 106호 (목동부영그린타운3차1층)	02-2648-1005
11	서울	목동점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70 목동아파트 2단지 내 관리동상가 102호	02-2643-6077
12	서울	미성점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우길 21(신림동, 1층)	02-855-0495
13	서울	미아점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242 한국전력강북지사 1층	02-982-0004
14	서울	반포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50 (반포동 엘동 1층1의 5호)	02-537-8703
15	서울	방학점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로 210 신동아타워 상가 108호	02-3492-9999
16	서울	방화점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녕화로23길 25 방화6단지 아파트상가 105호	02-2662-6088
17	서울	보라매점	서울특별시 관악구 당곡길 74 광덕빌딩 1층(봉천동)	02-876-4490
18	서울	북가좌점 (울림두레생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색로 100 가재울 래미안 e-편한세상 상가 201동 15호	02-305-0518

연번	지역	매장명	주소	연락처
19	서울	북가좌점 (행복중심생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색로100 DMC 래미안102동 6호 행복중심생협	02-304-8704
20	서울	백련산점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22길 21, 1층(응암동)	02-6748-6233
21	서울	사당점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23바길 9, 동작삼성래미안 아파트상가 102호	02-533-4578
22	서울	상도점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31길19 상도브라운스톤상가 1층	02-826-3385
23	서울	성산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 27 1층 두레생협	02-3141-0518
24	서울	신내점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211 금강리빙스텔 141호 두레생협	02-3423-0518
25	서울	신정점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67 양천문화회관 지하 1층	02-2643-6060
26	서울	아현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95, 마포래미안푸르지오 4단지상가 111호	02-365-0615
27	서울	안국점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21	02-736-0660
28	서울	용강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큰우물로 51 1층 두레생협	02-715-0518
29	서울	용산점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 157	02-713-0615
30	서울	은평점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245	02-384-3605
31	서울	응암역점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9, 센터폴리스 105호	02-356-6233
32	서울	종로점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환경센터 1층	02-735-7161
33	서울	중계점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22길 71 건영아파트 제상가동 1층 126호	02-934-7999
34	서울	진관점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로 67, 909동 104호	02-352-6233
35	서울	창동점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 63가길 12, 102호 (창4동 성당입구)	02-900-9958
36	서울	화곡점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45길 49 1층 두레생협	02-2692-7117
37	대구	대구 동구점	대구광역시 동구 메디밸리로13 진성빌딩 112호 마을의정원	053-959-0123
38	광주	광주 송정점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578-14	062-943-8216
39	인천	만수점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 1동 956-1	032-466-2341
40	대전	대전 탄방점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53-5 1층	042-224-7004
41	제주	제주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과원북4길11 1층 스토어36.5제주점	064-749-2365
42	경기	과천점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46 래미안슈르제 상가5번지동 1008호 두레생협	02-507-3007

연번	지역	매장명	주소	연락처
43	경기	광명 하안점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30-1 중앙상가 1층	02-899-8972
44	경기	능곡점	경기도 시흥시 능곡로 174 미래도프라자 105호	031-316-0071
45	경기	대야점	경기도 시흥시 비둘기공원7길18 하나골드타워 105호	031-316-0072
46	경기	덕양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 122 블레스타운 106호	031-938-9774
47	경기	동탄점	경기도 화성시 동탄솔빛로 53	031-8003-4433
48	경기	마두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 180 백마플라자 103호	031-902-3774
49	경기	매탄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로 168번길 2	031-213-3309
50	경기	본오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샘골로 131	031-437-8787
51	경기	부천 소사점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은성로 88 1층(송암빌딩)	032-343-0077
52	경기	분당 이매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성남대로 808, 성남아트센터 내 (야탑동 757)	031-707-1024
53	경기	분당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23-5	031-715-6122
54	경기	산본점	경기도 군포시 금산로 100	031-347-0700
55	경기	상동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265번길 43 크라운빌딩 1층(104호)	032-233-0072
56	경기	송내역점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00 부건프라자 101호	032-326-1172
57	경기	수원 영통점 (경기남부 두레생협)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61-6, 영통트리플렉스 제1층 108~9호	031-202-4888
58	경기	시흥 연성점	경기도 시흥시 진말로 9번길 2 부석프라자 112-113호	031-435-0071
59	경기	시흥 정왕점	경기도 시흥시 경기과기대로 284, 시흥에코센터 2층	031-319-7521
60	경기	안산점	경기도 안산시 성포동 성포로 30 1층 제108-3호	031-413-0038
61	경기	안양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23번길 29	031-468-2800
62	경기	역곡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로 19번길26 역곡이편한세상 상가 1층	032-342-0071
63	경기	영통점 (바른두레생협)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 73-1	031-273-1258
64	경기	오이도점	경기도 시흥시 역전로 430 (정왕동 878)	031-319-7521
65	경기	오정점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 709 그린메디칼프라자 1층	032-675-0072
66	경기	위브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170-1 위브더스테이트상가 6동 101,102호	032-621-7100
67	경기	은행점	경기도 시흥시 은행로 155번길 17 101호(은행프라자)	031-311-3886
68	경기	의왕점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762-3 삼대프라자 1층	031-426-6665

연번	지역	매장명	주소	연락처
69	경기	인덕원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14번길 21-7	031-426-6662
70	경기	죽전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로 109 현대프라자 109호	031-889-8849
71	경기	중동역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883번지 펠리스크운티아파트 아이파크상가내 102호~103호	032-652-0072
72	경기	중동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석천로 94 (중동,경동빌딩 1층)	032-664-0081
73	경기	천천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덕영대로 535번길 34	031-269-6625
74	경기	철산점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801 이편한세상센트레빌상가 104호	02-898-0071
75	경기	평촌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61	031-383-6625
76	경기	평택 안중점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 8길 23, 1층 두레생협	031-683-3363
77	경기	평택 이충점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668-3 드란프라자 111호, 114호	031-665-2760
78	경기	하남점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동로 180 사회적기업관 2층	031-511-5754
79	경기	후곡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 523 보성상가 106호	031-919-9854
80	강원	원주 토요일점	강원도 원주시 매지회촌길110, 카페 닷별	033-763-2923
81	강원	원주 후레쉬 마트점	강원도 원주시 태장둔치길 77 후레쉬마트	033-743-8383
82	강원	춘천 석사점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793-3 아름다운가게 춘천석사점	033-253-0050
83	강원	춘천쿵 박스점	강원도 춘천시 거두리 동내면 933-2 1층 <쿵박스>	033-256-0765
84	전북	전북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LH 전북본부 별관 1층(효자동 2가)	053-251-3388
85	충남	당진점	충청남도 당진시 무수동2길 20 1층 두레생협	041-358-7161
86	충북	청주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두꺼비로 60번길 25-2, (구산남동732번지)	043-252-9484

공공구매 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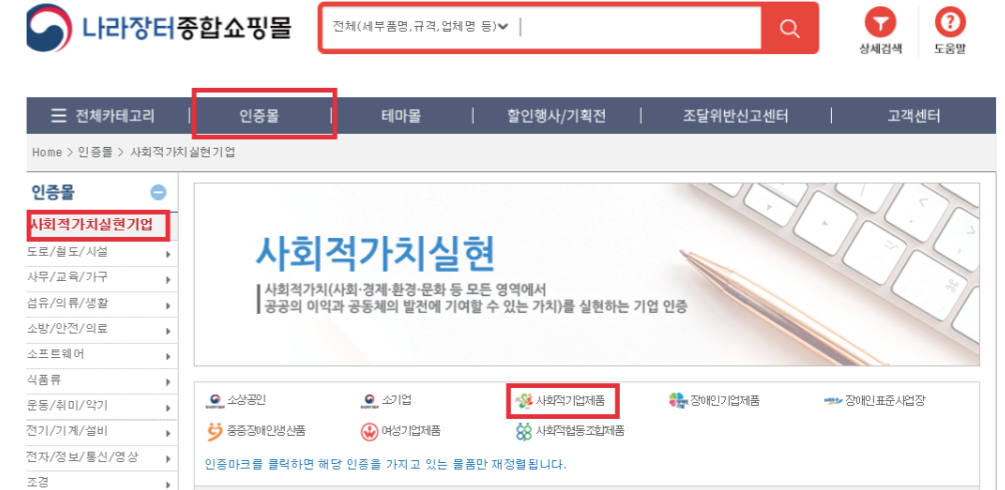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내 설치된 공공구매 지원센터를 통해 구매 상담 가능
(☎1566-5365)

〈 공공구매 수요 품목 예시 〉

구분	품목	구매 사례
격려품/ 기념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누, 치약, 칫솔, 화장품, 세제, 숯 ▶ 건강식품, 꿀, 차, 커피, 제과세트(쿠키, 빵, 떡) ▶ 된장, 고추장, 참기름, 수제햄, 조미료 세트 ▶ 명함지갑, 카드지갑, 다이어리, 핸드폰케이스 ▶ 양말, 넥타이, 손수건, 티셔츠, 가방, 모자 ▶ 공연표(뮤지컬, 연극, 국악), 공정여행 티켓 ▶ 자전거 	각종 행사, 기념일 등
공연	▶ 오케스트라, 뮤지컬, k-pop, 국악, 타악연주	행사 시 공연
도시락	▶ 출장뷔페, 도시락	행사시 식사
식자재류	▶ 축산물, 유기농 농산물, 두부, 김치, 된장, 고추장, 청국장, 참기름, 들기름, 수제햄, 조미료 세트	구내식당 식자재 공급
사무실 소모용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사지, 토너카드리지, 컴퓨터, 프린터, 모니터 ▶ LED 조명, 커튼, 블라인드 ▶ 결재판, 파일철, 봉투, 종이컵, 화장지, 박스, 장갑 	상시
사무실 기호식품	▶ 건강음료, 차, 커피, 쿠키, 빵, 떡, 초콜릿, 짬	상시
의류	▶ 유니폼	회사 유니폼
해외출장 및 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여행, 전통문화체험 ▶ 영어·중국어·일본어 회화수업 	출장 및 연수
청소/환경 용역	▶ 청소, 소독, 방역, 쓰레기 수거, 재활용 쓰레기 처리, 세차, 도배·장판	건물 관리
인쇄/IT/ 디자인 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수막, 리플릿, 명함, 어깨띠, 기념패 ▶ 영상물, 웹디자인, 공간 디자인(건물외벽 등) 	홍보물 등 제작
기관 행사 축하용	▶ 꽃배달, 가구	개소식 등
보건/의료	▶ 예방접종, 건강검진	직원 건강관리

나라장터내'사회적가치실현 기업 인증물'이용

- 나라장터종합쇼핑몰 내 사회적기업 제품을 판매하는 인증물 통한 구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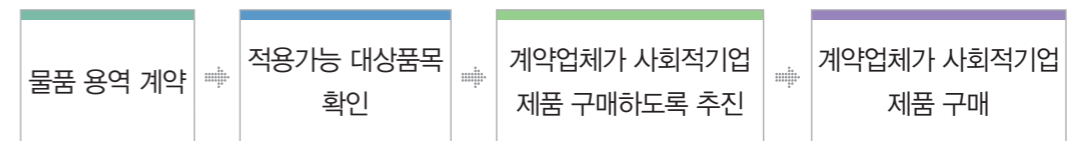


2단계 : 구매 및 계약방법

구매방법

- (직접구매)**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과 계약하여 직접 구매하는 경우 자체구매 또는 조달 구매(조달청을 통해 구매) 결정
- (간접구매)**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이 아닌 기업(비사회적기업)과 계약체결 후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하도록 요구

〈 간접구매 절차 〉



* 업체가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기업제품을 구매할 경우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구매실적으로 인정 (계약과 무관한 구매, 구매대금이 아닌 출연금, 기부금, 보조금 등을 통한 구매는 불인정)

** 단, 계약 업체와 사회적기업간 구매 증빙자료로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확인·보관하여야 함(구매실적 제출 시 증빙자료 제출 불요, 요청시에만 제출)

계약방법

- 구매 품목 및 추정가격에 따라 제한·지명경쟁, 수의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등을 활용
 - * 사회적기업은 중소기업법 제2조에 의해 중소기업자 범위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 관련 계약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인 사회적기업은 1인 견적 수의계약금액 5천만원까지 가능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입찰자격 평가

- 낙찰자 심사·결정을 위한 평가기준에 사회적 가치 항목을 반영
 - 물품 또는 용역 낙찰자 결정 시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신인도 평가항목 중 사회적기업 가점 부여를 활용
 - 자치단체 조례 및 기관별 구매지침 등에 따라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우선 검토 및 심사 시 반영

3단계 :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 e-store 36.5(www.sepp.or.kr)에 소개된 구매정보를 이용하여 구매
- e-store 36.5(www.sepp.or.kr) '공공기관 협업사업 및 희망상품 추천요청' 기능을 활용하여 구매 및 사업 추진
- 오프라인 판매장 "스토어 36.5"에 문의하여 구매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수요빈도가 많은 상품을 조달청이 미리 계약하여 등록된 사이트) 내 사회적가치실현기업 전용몰 활용 구매

3.4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의 제출·공고

구매실적 및 계획의 제출 의무

-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 제품의 해당연도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
-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공기관별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공고

전년도 구매실적 집계 방법

- (국가기관·자치단체·교육청) 재정시스템인 '디브레인(국가기관), e-호조(자치단체), 에듀파인(교육청)'을 통해 집계 가능
- (그 외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명단을 자체 재정시스템에 반영하여 집계
 - * e-store 36.5(www.sepp.or.kr)의 [우선구매실적/공공조달정보] - [우선구매 공지사항/우수사례]에 게시된 '사회적기업 명단'을 자체 재정시스템에 반영

당해연도 구매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 공공기관의 예산 및 구매수요, 전년도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매계획 수립
 - *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법적 의무구매 비율은 없으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을 자치단체 합동평가, 공기업준정부기관 사회적 가치구현평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등 지표에 반영

제출 방법 및 시기

- (제출방법) 최상위 단위 기관이 산하 소속기관의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을 합산하여 최상위 단위 전체 실적으로 제출
 - * 교육청 예시: 광역 단위 교육청이 소속 기초단위 교육청의 실적을 합산하여 제출
- (제출시기) 매년 2월 말일까지 e-store 36.5(www.sepp.or.kr)에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 입력
 - * 공공기관 회원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통해 로그인 → 실적관리자 권한 획득 → 실적 입력

공고(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제출한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 제출기한(2월말일)까지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공고 시 명단 공개

총괄

- **(2021년 실적)** 1조 8,171억원, 총 구매액의 2.77%
* 코로나19 백신 구매액(3.2조원) 제외 시 실질적 구매율은 2.92%
- **(2022년 계획)** 2조 986억원, 총 구매액의 3.29%

(단위: 백만원, %)

구분	총 구매액[A]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B]	비율(B/A)
2021년 실적	65,501,165	1,817,072	2.77
2022년 계획	65,501,165	2,098,574	3.29

자료: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고용노동부, 2022.04)

기관 유형별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

(단위: 백만 원, %)

구분	2021년 실적			2022년 계획		
	총구매액(A)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B)	구매율(B/A)	총구매액(A)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B)	구매율(B/A)
국가기관	16,629,138	130,081	0.78	13,883,654	130,109	0.94
자치단체	10,488,598	657,739	6.27	10,417,633	696,927	6.69
교육청	7,211,592	204,212	2.83	7,401,619	207,185	2.80
공기업	15,287,645	463,533	3.03	15,907,886	663,717	4.17
준정부기관	5,632,024	211,464	3.75	5,672,424	207,276	3.65
기타공공기관	7,083,058	79,354	1.12	7,134,168	113,596	1.59
지방공기업	2,647,630	64,690	2.44	2,726,211	72,880	2.67
지방의료원	239,520	5,127	2.14	271,951	6,568	2.42
특별법인	281,960	872	0.31	353,161	315	0.09
합계	65,501,165	1,817,072	2.77*	63,768,706	2,098,574	3.29

자료: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고용노동부, 2022.04)

사회적기업의 활용방안

-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은 2021년을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조달청을 통한 국가계약법령이 적용되는 수요기관의 실적 비중 48.7%(8,854억원)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 등의 비중 51.3%(9,318억원)로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사회적기업들이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상대적으로 소재 지역 또는 근방의 지자체, 교육청,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등과 같이 자체조달 비중이 높은 기관의 조달실적이 전체의 92.8% 이상인 1.69조원이므로 새로운 공급기회를 탐색한다면 국가기관 등 중앙행정기관보다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속한 지역 주변의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을 목표로 설정하고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임
- 특히, 각 기관의 전년도 또는 당해년도 구매실적과 차년도 구매실적의 증가수준과 절대비중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절대 구매금액과 증가율이 큰 공공기관(수요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급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
 - 매년 4월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 - 214호, 2020.04.27)의 붙임 자료인 “공공기관별 2021년 구매실적 및 2022년 구매계획”에서 2021년 실적과 2022년 계획을 비교하여 기존 구매실적이 많거나 차년도 구매계획이 많은 기관을 대상으로 진출 계획 수립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 경영평가 시 일반적으로 총구매액의 3%(공기업, 준정부기관 기준) 이상이 될 경우 만점을 부여하므로 해당 기준 미만 금액의 공공기관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공급기회를 모색할 수 있음
- 사회적기업이 보유한 물품 및 용역을 상대적으로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증대가 필요한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구매 물품과 특성을 분석하여 새로운 공급기회를 모색할 수 있음
 - 일반적인 물품과 용역이 아닌 사회적기업이 고유하게 제공할 수 있는 물품과 용역 중에서 공공기관 등이 새롭게 수요로 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여 이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임

제4장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 4.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
- 4.2 공사용자재 직접(분리) 구매제도
- 4.3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 4.4 직접생산확인제도
- 4.5 계약이행능력심사제도
- 4.6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 4.7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및 성능보험 제도
- 4.8 공공구매론
- 4.9 다수공급자 물품계약(MAS) 제도
- 4.10 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조합 추천제도
- 4.11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 4.12 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경쟁제품)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 공공계약 대상으로서 우선구매를 활용하는 대부분의 제도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함)을 근간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사회적기업 우선구매제도 역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판로지원법에 따른 일반적인 공공구매제도를 모두 활용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우선구매 고려사항을 결합한 고유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

4.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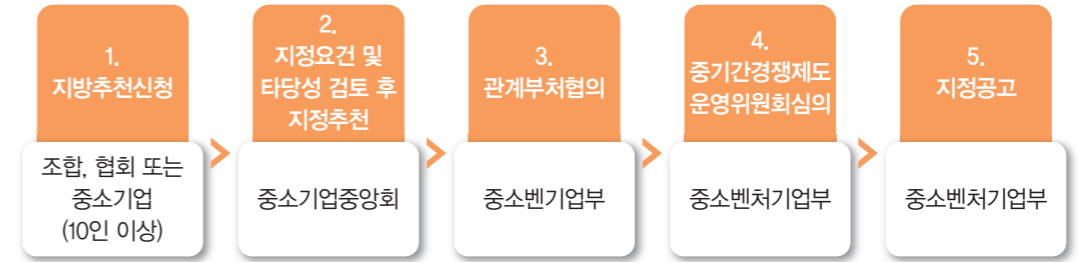
1. 개요

- 중소기업자가 직접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 중 판로확대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제도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2. 지정 요건

- ① 국내에서 직접 생산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20개 이상 이상 있을 것
 - ②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 실적이 20억원 이상일 것
 - ③ 세부품명 기준 직접생산 중기 10개 이상, 구매실적 10억원 이상
- * 기본요건 충족된 제품에 한하여 대기업 또는 수입 유통업체 등의 국내시장 진입으로 당해업종 영위 중소기업의 판로가 축소되어 경영애로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사례 또는 관련 통계 등을 조사하여 산업정책상 충분한 지정 필요성이 인정 될 경우 지정

3. 지정절차



- 지정기간 : 3년
- 지정현황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및 고시(2022년 10월 212개 품명/632개 제품)

4. 사회적기업의 활용방안

- 사회적기업으로서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해야 하는 제도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임
- 현재 모든 유형의 우선구매제도 지원대상 기업들이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 특히 물품의 경우 대부분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사회적기업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으로 지정된 물품과 용역에 대해서는 우선 공급이 가능함
- 모든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을 포함한 제도
- 2022년 10월 현재 총 212개 품명 632개 세부품명이 지정되어 있고 대부분 사회적기업들이 주로 생산하는 품목들을 포함하고 있음
-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을 생산하여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제품별로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시에 따른 품목별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충족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 특히 직접생산확인증명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우선구매제도를 통해 물품과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기업과 단체에게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필수 서류로 제품과 용역을 공급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최우선적으로 획득해야하는 필수 요건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2015. 2. 3., 2016. 1. 27., 2018. 8. 14., 2019. 12. 10., 2020. 10. 20.>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4.2

공사용자재 직접(분리) 구매제도

1. 개요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란 공공기관이 공사발주시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에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 지정된 자재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설계에 반영하여 직접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대형건설사 등의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중 공사용자재로 사용되는 제품을 선별하여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 지정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2. 주요내용

- 대상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
- 대상제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제품 중에서 지정
- 적용대상 공사(예정가격 기준)범위
 - 종합공사 : 40억원 이상 공사
 - 전문공사(건설 및 전기, 통신, 소방시설 등) : 3억원이상 공사
 - 적용대상 공사 중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서 소요되는 자재의 추정가격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 직접구매 의무화(5백만원 미만인 경우, 직접 구매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정기간 : 3년
- 지정현황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및 고시(2022년 10월 105개 품명/355개 제품)

3. 사회적기업의 활용방안

- 공사용자재직접구매제도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물품과 용역에 대해 중소기업자간경쟁이 가능토록 해주는 중소 중소기업자경쟁제품 지정제도와 유사한 제도로서 공공부문 시설공사에 소요되는 물품 122개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사회적기업들이 생산하는 물품 중 일반 물품과 용역이 아닌 시설공사에 소요되는 물품으로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에 해당되는 경우 동일하게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충족하여야만 물품을 공급할 수 있음
- 대규모 공사에서 공사 부문과 공사에 소요되는 물품을 분리하여 별도로 발주하고 있으므로 해당 물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물품구매 공고가 아닌 시설공사 관련 공고도 함께 검색하는 것이 중요함
- 특히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대상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로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물품을 분리하는 입찰에서 물품을 직접 공급하는 방법과 함께 시설공사 수주업체가 소요 하는 물품을 시설공사 수주업체가 구매하는 경우 사회적기업 제품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구매기회 확대가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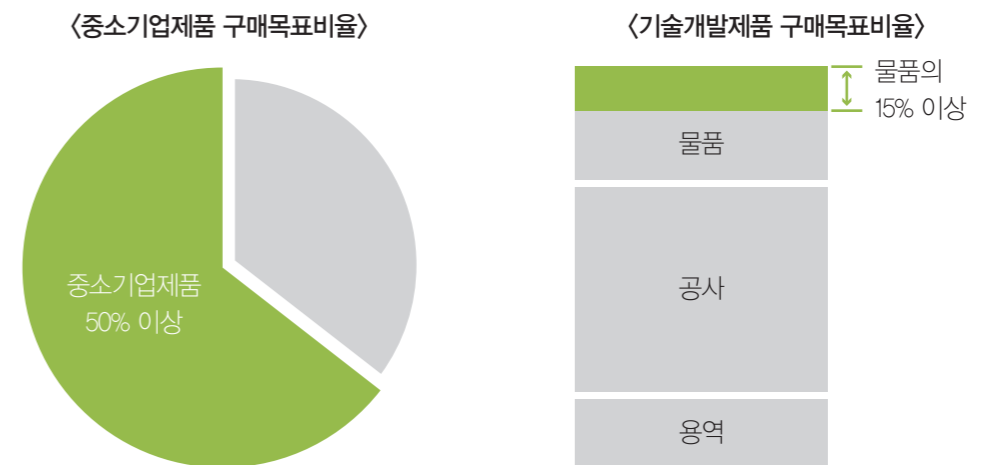
4.3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1. 도입배경

- 판로지원법 제5조 및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에게 일정비율 이상의 중소기업제품 및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토록 의무화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의 실질적 구매효과 제고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4조, 제5조, 제12조

2. 주요내용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은 해당연도에 구매할 제품(물품, 공사, 용역)의 구매총액 대비 50% 이상,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은 중소기업 물품의 15%이상으로 정함
-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공공기관의 구매실적 및 계획을 공공구매 종합정보를 통해 자료를 제출받고 있으며,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및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 평가를 실시 매년 공공기관별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과 실적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고



4.4 직접생산확인제도

1.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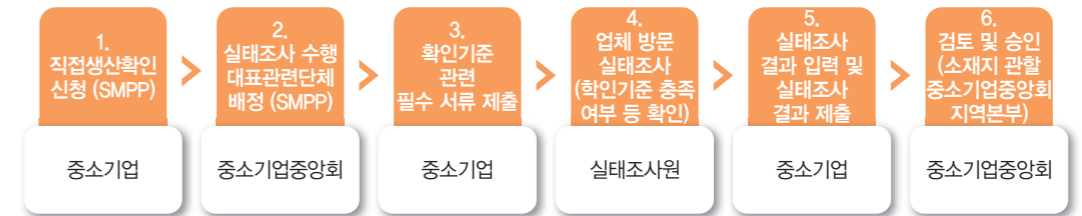
직접생산확인제도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낙찰 후에 대기업제품, 수입제품의 납품 또는 하도급 생산납품 행위나 수의계약이 가능한 각종 법인단체,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의 명의를 빌려 수의계약 후 하청 생산한 제품 등의 납품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2. 주요내용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공공구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직접생산 능력보유 여부의 확인을 받아 공공구매 종합정보(smpp.go.kr)에 등록
- 확인방법:
 - 직접생산 확인은 품목에 따라 생산공장, 생산설비, 생산공정, 필수인력, 기타 관련 자료 등을 실태조사원이 생산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
- 확인대상
 -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대상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결과 낙찰자로 결정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자 또는 수의계약방식으로 1천만원 이상의 소요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자
- 확인기관
 - 당해 계약의 당사자인 공공기관의 장이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공구매 종합정보를 통해 제공하는 증명서로 대체 가능
- 제재조치
 - 직접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되며 6개월 ~ 1년간 재신청 불가
- 처리기간
 - 중앙회장은 14일 이내(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에 처리(운영요령 제30조제7항)

3. 확인절차



4. 사회적기업의 활용방안

-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여성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단체 등 우선구매제도 대상이 되는 업체들이 물품과 용역, 특히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필수 요건이 직접생산확인증명임
-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자경쟁제품, 공사용자재직접구매 대상품목에 대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통해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와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직접생산확인증명을 제시하여야 함
- 품명별 직접생산확인증명을 위한 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2-23호, 2022. 4. 1., 폐지제정)” 참조
-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대상물품, 공사용자재직접구매 대상물품 등을 제조하고자 하는 사회적기업은 설립이전 해당 제품의 생산을 위한 생산설시, 공정, 인력 등이 요건이 충족 가능한지를 사전 판단하여 추진하여야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음

4.5 계약이행능력심사제도

1. 제도 개요

- 2006.1월부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한정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도입된 심사제도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최저가 낙찰제를 배제하고 입찰참여 중소기업자의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하여 일정 수준이상의 평점을 받은 우량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 적정한 납품이행능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선별, 품질관리 우수 및 정부정책 호응도가 높은 중소기업 등에 대한 우대 적용
 - 중소기업자간 치열한 수주경쟁과 이에 따른 가격하락 등 부작용이 우려되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최저가 낙찰제를 배제하고 일정한 가격을 보전(낙찰 하한율 88%)하기 위하여 도입
 - 적정한 납품이행능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선별, 품질관리 우수 및 정부정책 호응도가 높은 중소기업 등에 대한 우대 적용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2. 주요내용

- 계약이행능력심사 적용대상 입찰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를 위한 제한 경쟁, 지명경쟁 입찰에 적용
 - 최저가로 응찰한 순위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 최저가 낙찰을 배제하고 예정가격의 88% 이상을 보장
- 입찰참가 자격
 - 입찰 품목을 직접생산할 수 있는 중소기업자로 한정
- 낙찰자 결정 방법
 - 최저가로 응찰한 순위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 최저가 낙찰을 배제하고 예정가격의 88% 이상을 보장

● 심사기준

- 납품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및 결격사유를 평가

10억원 미만의 경우	가격 70점, 납품이행능력(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만을 평가) 30점 비율로 평가
10억원 이상의 경우	가격 55점, 납품이행능력 45점 (납품실적5점, 기술능력 10점, 신용평가등급 30점)으로 평가
공통 사항	신인도 3 ~ -2점과 결격사유는 공통 적용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3조제1항
-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경영상태(신용평가 등급)점수를 30점으로 평가

	〈납품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결격사유〉
10억원 이상	총 45점 (납품실적 5점 기술능력 10점 경영상태 20점)	55점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계약이행 성실도 +3 ~ -2점	당해 물품 납품 이행능력 결격여부 -30점
10억원 미만	경영상태 30점	70점		

3. 사회적기업의 활용방안

- 공공조달 시장에서 일반적인 물품의 공급자로 선정되기 위한 낙찰자를 평가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적격심사” 제도를 시행함
- 적격심사제도는 물품을 공급하려는 업체의 제조능력과 가격을 평가하여 적정 제조 능력을 보유한 업체들이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가격만을 낙찰자 선정에 위한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최저가 낙찰제도에 비해 제조역량, 품질을 우선 평가하는 제도임
- 그러나 적격심사를 통한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낙찰하한율이 80% 초중반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 실제 중소기업들이 제품을 공급하더라도 충분한 공급의 효과를 얻기가 어려움
- 계약이행능력심사제도는 이러한 일반적 적격심사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한 입찰에서 낙찰자를 선정하는 평가방법으로 낙찰하한율이 88% 이상 보장될 수 있도록 한 평가방법임
- 따라서 사회적기업들이 중소기업자간 경쟁 대상물품, 공사용자재직접구매 대상물품 등을 공급하기 위한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제품의 가격뿐만 아닌 계약이행능력심사 기준에 있는 납품이행능력과 관련된 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품질관리 등 신인도 가점 평가항목 등의 세부 평가기준을 확인하여 통과기준 점수 확보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4.6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1. 제도 개요

-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판로를 지원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13종) : 성능인증, 우수조달물품지정, NEP, GS인증, NET, 우수조달 공공상표, 물산업 우수제품, 혁신제품(우수연구개발혁신제품, 혁신시제품, 기타혁신제품), 녹색기술제품,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 산업융합품목, 수요처 지정형 기술개발제품(구매조건부신기술개발,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 성과공유기술개발), 재난안전제품인증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2. 주요내용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제25조제1항제6호에 의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제13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은 공공기관 등에 우선구매 등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그 요구에 따라 이들 제품의 우선구매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우선구매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60일 이내에 우선구매 조치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법정의무구매비율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하는 물품 구매액의 15% 이상임

3. 사회적기업 활용방안

- 사회적기업으로서 상기 NET(신기술인증), NEP(신제품인증), 성능인증제품 등의 인증을 받아 공급이 가능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거나 향후 잠재성을 갖추고 있는 경우는 사회적기업 우선구매제도와 함께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우선구매제도 동시에 활용할 수 있음.
- 2020년도부터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대상 공공기관 모두에서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에 대한 법정의무구매 목표비율(중소기업제품 구매금액의 15% 이상)이 설정되어 추가적인 공급기회 확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음
- 특히 수요기관과 함께 수요처 지정형 기술개발제품으로서 구매조건부신기술개발제품을 개발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이 수의계약을 통해 해당제품을 구매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기업이 보유한 뛰어난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있을 경우 이를 필요로 하는 수요기관과 협약을 통해 제품을 개발하여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음.
- * 구매조건부기술개발제품의 경우는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별도의 개발자금도 지원하고 있음.

4.7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및 성능보험 제도

1. 제도 개요

- 성능 신뢰도에 확신이 없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정부가 성능검사를 하여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및 공공구매 확대를 도모하는 한편, 성능인증을 받아 성능보험에 가입된 제품의 구매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구매자에게 면책을 주는 제도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8조

2. 주요인증 내용

○ 성능인증

- 대상품목
 - 공공기관 납품하기 위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신기술인증제품, 특허제품, 기술혁신개발제품, 벤처기업제품)
- 성능인증 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1회에 한 해 3년간 연장 가능)

○ 성능보험

- 성능인증제품 구매로 인한 구매담당자의 피해보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술개발제품 사용 기피 현상을 방지
- 성능보험 가입제품 구매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구매자에게 면책

3. 성능인증 절차



4. 성능보험 사업자

- 서울보증보험, 기계공제조합,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삼성화재, LG화재

5. 사회적기업 활용방안

- 사회적기업으로서 상기 기술개발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경우 수요기관의 구매담당자들은 품질 불확실성, 사후지원(A/S) 곤란 등의 문제로 감사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구매의사 결정을 주저할 수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해당제품의 성능을 평가하여 성능인증을 부여하고 성능인증제품에 대해서는 성능보험제도를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구매시점 이후부터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수요기관의 계약담당자(구매자)의 책임을 면책시켜 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
 -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였으나 납품실적, 품질 등의 측면에서 평판 및 신인도가 확보되지 않은 사회적기업에서는 성능인증 및 성능보험제도를 활용하여 수요기관의 계약담당자가 구매 의사결정에 부담을 해소하여 공급기회 확대 가능
 - 일반제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시행하는 “파란우산공제,” “PL단체보험” 등을 통하여 사회적기업이 공공 및 민간에서의 영업행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 공급 제품의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등을 배상을 보장하는 공제제도 활용 가능
- *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이나 공사용자재직접구매 대상물품이 아닌 일반 물품에 대해 수요기관의 계약담당자(구매자)가 구매와 관련하여 염려하는 문제점을 공식적으로 해소 또는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 가능함

4.8 공공구매론

1. 개요

- 공공기관 낙찰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한 대출제도
 -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계약한 사실을 근거로 은행에서 생산/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금융서비스
 - 생산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은 납품 계약건에 대하여 공공기관에 적기에 제품을 납품토록 하고, 공공기관은 안정적으로 자재수급을 도모하게 하는 시스템

2. 주요내용

- 대출한도
 - 계약금액(단가계약은 발주금액)에서 선금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의 최대 80%까지 신청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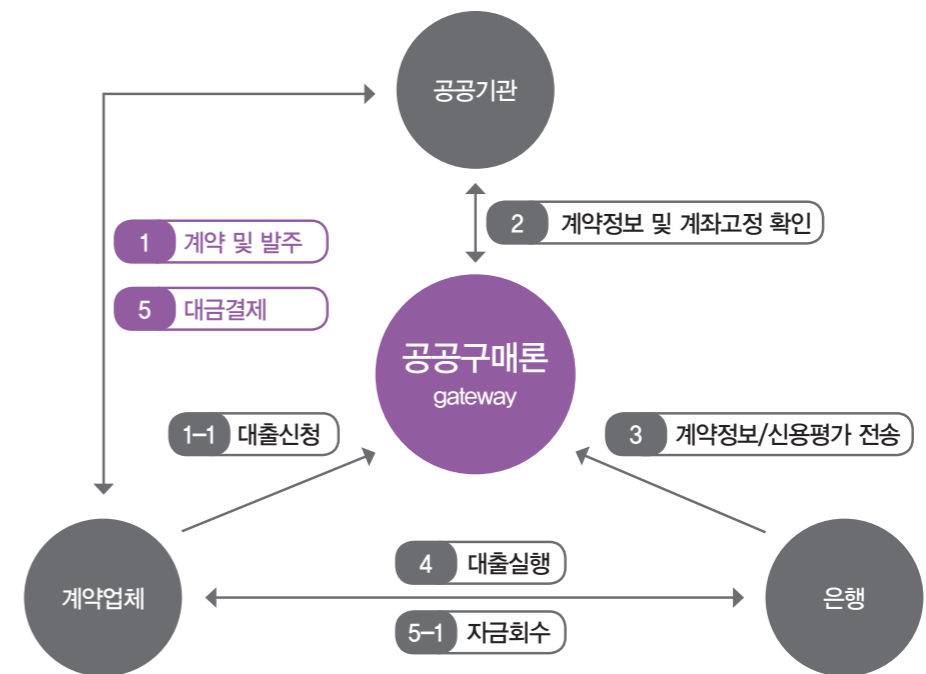
예외) 기업은행

- 선금수령액이 없는 경우 : 계약금액(단가계약은 발주금액)에서 최대 80%까지 신청 가능
- 선금수령액이 있는 경우 : 계약금액(단가계약은 발주금액)의 80% 금액에서 선금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까지 신청 가능

- 대출조건
 - 금리는 은행의 대출심사 및 신청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결정되며, 기타 금융 부대 비용을 감안하여 기존 일반 대출대비 저렴
 - 신청부터 대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하여 고객의 이용 편리성 제공 (www.smpg.go.kr)
 - 은행의 대출심사에서 아래의 예시에 따라 부득이 대출진행이 불가능 할 수도 있음
 - * 예시) 해당은행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신용도가 은행기준에 미충족할 경우 등

- 취급은행
 - 6개 은행(기업, 산업, 하나, 부산, 경남, 광주)
- 신청시 필수사항
 - 공공구매정보망(www.smpg.go.kr) 회원가입
 -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 공공기관과의 계약서
 - 금융기관(은행)방문 및 대출심사

3. 공공구매론 지원 흐름도



4. 사회적기업 활용방안

- 상대적으로 재정적 여유가 부족한 사회적기업이 공공조달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어 제품을 공급할 기회를 확보하더라도 생산을 위해 필요한 관련 원부자재 등의 구매 등 구매비용 등이 충분이 없을 경우 공공구매론을 활용하면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음
- 공공구매론은 수요기관과의 낙찰자로 선정되어 체결한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만으로 사전 약정을 맺은 시중 은행으로부터 저리로 생산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임
- 실질적으로 다른 대출과 달리 계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만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므로 사회적기업과 같이 상대적으로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등 재무적 여건이 좋지 않은 기업들에게 납품을 위해 필요한 실질적 자금을 지원해주는 효과적인 제도로 볼 수 있음

4.9 다수공급자 물품계약(MAS)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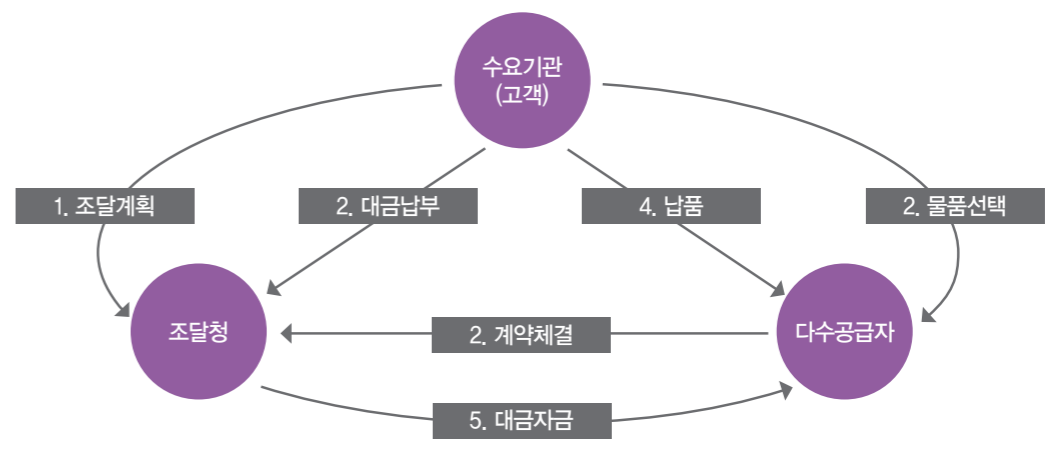
1. 개요

- 각 수요기관의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규격화된 물품에 대한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조달청이 2인 이상의 공급자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수요기관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자유롭게 구매하는 제도
 - 법적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다수공급자물품계약)

2. 내용

- 계약방법 및 종류
 - 일반경쟁입찰,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 대상물품
 - 시중에서 거래되는 규격이 확정된 물품으로 공공기관의 수요가 예상되는 물품과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제품
- 계약대상자 선정
 - 적격성심사를 거쳐 품질, 성능 등이 유사한 제품을 가격협상이 성립된 다수 적격자와 계약

3. 다수공급자물품계약 흐름도



■ 다수공급자물품계약의 주요특징

1. 계약방법 및 종류

- 일반경쟁계약
 - 계약 이전의 사전적인 경쟁보다는 일정 요건을 갖춘 다수의 적격자 (적격성평가 결과 적격자로 통보 받은 자)와 계약함으로써 계약이후의 경쟁성 제고
-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 조달청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구매기관)이 직접 계약자 에게 납품 요구하여 물품을 공급 받을 수 있는 계약제도

2. 대상물품

- 규격(모델)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
 -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물품으로서 공공기관의 수요가 있거나 수요가 예상되는 물품
- 단가계약(제3자 단가계약 포함)이 가능한 물품
-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품 등

3. 계약상대자 선정

- 경영상태(70점) 및 납품실적(30점)을 평가하여 적격자
 - 경영상태 + 납품실적 = 85점이상인 자
-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협상을 실시하며, 가격협상 결과 협상 기준가격 이내 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 규격(모델)별로 가격협상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협상 기준가격 이내로 가격을 제안한 규격(모델)에 대해서 계약체결

4. 다수의 공급자와 계약체결

- 품질 · 성능 ·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가격협상이 성립된 모든 적격자와 계약체결

5. 계약단가 인하

- 계약기간동안 최저가격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거 가격인하가 가능함

6. 다량납품 요구시 할인을 적용

- 입찰자는 1회 납품요구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할인을 제시할 수 있음

7. 성능이 향상된 제품으로 대체 및 품목의 추가

-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규격(모델)의 제품보다 성능이 향상된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가 품목추가를 요청한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하여 가격자료와 규격서를 제출받아 가격협상과정을 거쳐 품목 추가를 할 수 있음

8.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1~3년까지 가능하며,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품목은 1년 이내의 계약기간으로 산정

■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업무처리절차



9. 사회적기업 활용방안

- 공공조달을 통해 물품 등을 구매하는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 중 다수의 수요기관이 공통적, 반복적으로 구매하면서 시중에서 상용화 또는 규격화 되어 품질 및 가격이 검증된 제품에 대해서는 사전 조달청에서 생산업체와 제품을 미리 심사하여 온라인 쇼핑몰과 유사한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하여 구매토록 하고 있음
 - 중소기업자간경쟁물품, 공사용자재직접구매 대상물품 등 수요기관이 구매하는 대부분의 대상물품이 등록되어 있음
 - 원칙적으로 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해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물품은 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해서만 구매가 가능하므로 사회적기업이 초기 제품을 공공조달 시장에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실제 공급 여부와 상관없이 인지도 제고 등을 위해 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한 종합쇼핑몰 등록 추진 노력 필요
 - 사회적기업이 물품을 중심으로 제품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대부분 실제 구매 및 공급 과정은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통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신규로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사회적기업들은 다수공급자계약물품 중 사회적기업들이 주로 공급하는 물품과 용역을 사전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임
- *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shopping.g2b.go.kr → “전용물(메인화면 우측 하단)” → 전용물 카테고리 “사회적가치실현기업(메뉴 중 좌측 하단)

4.10 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조합 추천제도

1. 개요

-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을 구매할 경우, 해당조합으로부터 구매조건에 맞는 대상업체(소기업, 소상공인)를 추천받아 이들 업체 간의 가격 등을 비교하여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촉진 제고
 - 법적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2. 주요내용

- 추천방법
 - 공공기관의 ‘대상업체 추천요청’, 업체의 ‘추천신청’, 협동조합의 ‘대상업체 추천’등 일련의 추천업무를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내에 설치된 ‘소액수의계약 추천시스템’을 통해 처리
- 업무처리 절차
 - 공공기관의 ‘대상업체 추천요청’
 - 제품선택 : 세부품명(G2B번호)별로 구매 제품 선택(복수가능)
 - 조합선택 : 선택한 세부품명(G2B번호) 관련 협동조합 중에서 선택
 - 추천요청업체수 : 5개 업체 이상(추정가격이 2천만원미만인 경우 2개 이상)
 - 업체의 ‘추천신청’
 - 대상업체 : 해당 세부품명(G2B번호)에 대해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협동조합의 ‘대상업체 추천’
 - 대상조합 :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업체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중 공공기관이 선택한 해당 세부품명(G2B번호) 관련 협동조합
 - 업체추천 : 추천신청순서에 따라 세부 품명별(G2B번호별) 연간 추천횟수와 업체별 연간 계약한도 등을 고려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한 후 추천



4.11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1. 개요

-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판로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 공공기관에서 일정금액 미만 조달구매시 중소기업간 제한경쟁을 의무화 하는 제도
- 법적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조의 2

2. 내용

- 공공기관이 일정규모(기재부 고시금액 : 2.1억원) 미만 물품·용역(중소기업 경쟁제품 제외)구매시 (중)소기업간 제한경쟁
- 1억원 미만 : 소기업간 제한경쟁
-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 중소기업간 제한경쟁

3. 사회적기업 활용방안

- 수요기관이 구매하는 물품과 용역 중 기획재정부가 고시한 국제입찰 대상 미만 금액, 즉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입찰에서는 중소기업자들만 우선 경쟁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사회적기업도 동일한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특히 1억원 미만 물품 및 용역 입찰에서는 중소기업 중 중기업을 제외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만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음
- 해당 제도는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공사용자재직접구매 대상물품이 아닌 모든 유형의 물품과 용역 공급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음

4.12

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경쟁제품)

1. 개요

-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로 추진하여야 하나 특정한 경우 소기업 및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제도

2. 주요내용

※ 아래 두 경우 모두 의무가 아닌 재량사항이므로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로 실시하여도 무방함

1) 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제품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별도 지정된 일부 제품에 대해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간 제한경쟁입찰 실시 가능

2) 조합과의 공동사업

-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함께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을 통하여 제품화한 물품 또는 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경우는 구매액수 제한없고, 그 외의 제품은 2억원 미만 구매건에 한함)에 대해서는 해당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 실시 가능(단,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조합에 요청하여 공동사업의 주체인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추천받은 경우에는 추천받은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중에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여야 함)

* 중소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중소벤처기업부령 제3호, 2017. 11. 16., 일부개정] - 제1조의2(공동사업) 영 제2조의2제1항제3호 본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5. 5. 4., 2017. 7. 26.>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른 협업사업
 - 공동상표의 도입 또는 이용과 관련하여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업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보유하거나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보유한 특허권을 활용하는 사업
 - 조합 또는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으로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용역의 생산·제공 사업[본조신설 2013. 6. 25.]

제27조(단체표준의 제정 등) ①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는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성의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기호·용어·성능·절차·방법·기술 등에 대한 표준(이하 "단체표준"이라 한다)을 제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표준을 활용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단체표준의 제정·등록·운용·보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 사회적기업 활용방안

-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의 경우 물품보다는 용역 부문, 특히 사회복지, 지역연계형 관광, 문화상품, 방과후 교육 등에 특화 및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음
- 기존 물품의 경우는 타 우선구매제도 대상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단체 등이 상대적으로 공공조달 시장에서 선발 참여자로서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상기 사회복지, 지역연계형 관광/문화상품, 방과후 교육 등과 같은 지역밀착형 용역(서비스)는 사회적기업의 추가가치와 높은 적합도를 보유하면서 사회적기업들이 경쟁역량을 확보하고 있는 분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사회적기업들이 경쟁우위를 가지고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단체표준을 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한 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통해 서비스 공급기회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음



제5장

사회적기업이 활용 가능한 공공구매제도

- 5.1 조달청 적격심사 가점제도
- 5.2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가점제도
- 5.3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소액수의계약제도
- 5.4 단체표준제도



제 5 장

사회적기업이 활용 가능한 공공구매제도

5.1 조달청 사회적기업 가점 제도

5.1.1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가 적용되는 입찰에서 사회적기업은 신인도 평가 부문에서 최대 2점의 가점을 적용 받음
 -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모두 적용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신인도(정책지원 부문) 평가 (조달청지침 제3374호, 2022. 7. 18., 일부개정)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 점
마. 정책지원	부처별 정책지원	A. 조달업무 우수업체로서 조달청장 표창을 받은 업체	1.0
		B.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2.0
		C. 「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2.0
		D. '삭제' <2019.12.31.>	
		E. '삭제' <2019.12.31.>	
		F. '삭제' <2022.7.18.>	
		G. '삭제' <2019.12.31.>	
		H. '삭제' <2019.12.31.>	
		I. 조달청장이 지정한 '해외조달시장진출기업'(G-PASS기업) 중 B등급 이상 기업	1.0
		J. '삭제' <2022.7.18.>	
		K. '삭제' <2019.12.31.>	
		L. '삭제'	
		M. '삭제' <2019.12.31.>	
		N.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	1.0
		O.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2.0
		P. '삭제' <2022.7.18.>	
		Q.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25
R.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1.0		

5.1.2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의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입찰 시 낙찰자선정 평가기준인 계약이행 능력심사에서 일반제품에 적용되는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과 동일하게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대해 2점의 가점 부여
 -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모두 적용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신인도(정책지원 부문)

평가(조달청지침 제3374호, 2022. 7. 18., 일부개정)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 점
마. 정책지원	부처별 정책지원	A. 조달업무 우수업체로서 조달청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을 받은 업체	1.0
		B.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2.0
		C. 「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2.0
		D. ‘삭제’ <2019.12.31.>	
		E. ‘삭제’ <2019.12.31.>	
		F. ‘삭제’ <2022.7.18.>	0.2
		G.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	1.0
		H. ‘삭제’ <2019.12.31.>	
		I. 조달청장이 지정한 ‘해외조달시장진출기업’(G-PASS기업) 중 C등급을 제외한 기업	1.0
		J. ‘삭제’ <2022.7.18.>	1.0
		K. ‘삭제’ <2019.12.31.>	
		L. ‘삭제’	
		M. ‘삭제’ <2019.12.31.>	
		N.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2.0
		O. ‘삭제’ <2022.7.18.>	1.5
		P.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25
		Q.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	1.0

5.1.3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이 제공하는 대표적 용역 중의 하나인 청소, 경비 등과 같은 일반용역 입찰 시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는 물품구매와 동일하게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대해 2점의 가점 부여
 - 2018년 4월부터 기존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이외 추가로 자활기업, 마을 기업도 2점 부여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신인도(정책지원 부문)

(조달청공고 제2022-42호, 2022. 2. 10., 일부개정)

심사항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점)
라. 정책지원	부처별 정책지원	A.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인증 받은 자	2.0
		B.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자	2.0
		C. 공정거래위원장이 지정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0.5
		D. 「물류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한함)	0.5
		E.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 또는 노사문화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5
		F. 「산업표준화법」제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4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품질경영우수기업으로 선정한 기업	0.5
		G.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자	1.0
		H.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5
		I.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일·가양득 캠페인 참여기업 포함)으로 선정된 업체	1.0
		J.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2.0
		K.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2.0
		L.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2.0
		M.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2.0
		N.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동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으로 확인된 자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시행일보다 3개월 이상 조기 단축한 자	1.5
		O.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25
		P.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	1.0

5.1.4 조달청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 일반용역과 달리 건축설계, 시공감리, 엔지니어링(플랜트 등)용역과 같은 기술용역 입찰에서 낙찰자 결정 기준인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신인도 평가분야에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에 대해 0.2점의 가점 부여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신인도(정책지원 부문)

[조달청지침 제7701호, 2020. 9. 29., 일부개정]

심사항목	세부항목	배점
마. 정책지원	A.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업체	0.4
	B.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4
	C.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2
	D.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2
	E.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	0.2
	F. 「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0.2
	G.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라 거주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자활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2
	H.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2
	I.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2
	J.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동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으로 확인된 기업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시행일보다 3개월 이상 조기 단축한 기업	0.2

5.1.5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 시설공사 입찰에서 적격심사를 적용하는 경우 일반기업과 사회적기업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사회적기업의 시공비율이 30%를 초과하면 경영상태평가점수의 10%를 가산하여 평가함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5611호, 2022. 6. 17., 일부개정)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경영상태(15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 등(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은 [별표 7]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의 경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이하 "여성기업"이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이라 하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이하 "장애인기업"이라 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 한다.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

· 경영상태(10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은 [별표 8]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의 경우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 하고,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 한다.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경영상태(5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은 [별표 9]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 한다.

추정가격 2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경영상태)평가(10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은 [별표 8]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한다.

5.1.6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가점 부여

- 사회적기업을 포함하여 공공조달 물품 조달업체가 가장 대표적으로 활용하는 계약방법인 다수공급자계약(MAS)제도에서 수요기관의 납품요구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경쟁을 시행하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에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은 평가배점의 1배 이내에서 가점을 부여 받을 수 있음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고시 제2021-5호, 2021. 3. 3. 일 부개정)의 종합평가방식에서 정책지원 평가항목 중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은 수요기관이 정책지원 평가항목에 부여한 배점의 한도만큼 가점을 부여 받을 수 있음
 - 종합평가방식에서 수요기관이 선택하는 선택평가항목 중 “정책지원” 평가 항목은 최대 5점까지 배점할 수 있고 이 경우 사회적기업 등은 최대 5점의 평가점수를 부여받을 수 있음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종합평가방식 평가기준

구 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한도
기본 평가항목 (60점 이상)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45점 이상 75점 이하
	적기납품	납기지체 여부	10점 이상 20점 이하
	품질관리	조달청검사, 전문기관검사 및 품질점검 결과	5점
	신인도 (-1.75~+2.5)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0.25점
		최저임금 위반	-0.5점
		임금체불	-0.5점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0.5점
		고용우수기업	+1점
		일자리 으뜸기업 인적자원개발(HRD) 우수기업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0.5점
		기술 인증	+1점
선택 평가항목 (40점 이하)	선호도	자체 선호도 조사	5점 이하
	지역업체	지역업체 여부	5점 이하
	납품기일	납품기한 단축가능성	5점 이하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	5점 이하
	납품실적	해당 제품 납품실적	5점 이하
	경영상태	업체 신용평가등급	5점 이하
	약자지원	약자지원 대상 기업 여부	5점 이하
	수출기업 지원	수출기업 지원 대상 기업 여부	5점 이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종합평가방식 선택평가항목 “약자지원”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 점
약자지원 대상 기업 여부	중증장애인생산제품,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표준사업장	1가지 이상 해당 : 배점 × 1
	창업기업 소기업 · 소상공인	배점 × 0.7
	여성기업	배점 × 0.6
	해당없음	배점 × 0.4

- 1) 약자지원 평가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정보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업체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여성기업에 대한 평가는 업체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여성기업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가격제안 시 제출하고, 수요기관에서 이를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
- 2) 창업기업은 사업개시일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종합쇼핑몰에 창업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다만 창업기업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에 등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정보망에서 기업 확인이 되지 않을 시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 3) 약자지원 평가는 중복하여 평가하지 않으며, 점수가 높은 1개의 업체정보에 대해서만 점수를 적용한다.
- 4)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제안요청 품목을 등록한 조합원사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제안요청 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제안총금액 대비 품목별 제안금액의 비중에 의한 가중평균 점수를 적용하며 적용산식은 다음과 같다.

$$\text{가중평균 평점} = \sum \left(\frac{\text{품목별 제안금액}}{\text{제안 총금액}} \times \text{품목별 평점} \right)$$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시 수요기관이 종합평가방식이 아닌 다수의 수요기관의 평가기준 적용사례를 참조하여 조달청이 평가중점별 표준화한 표준평가방식 중 유형 3의 경우는 기본평가항목으로 “약자지원” 평가항목에 대해 5점을 배점하고 있음
- “종합평가방식”의 약자지원은 5점 이하로 배점이 적용될 수 있으나 “표준평가방식 3”을 적용하는 경우 5점을 의무적 배점할 수 있어 사회적기업의 경우는 5점을 기본 평점 받을 수 있음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표준평가방식 유형3(Ⅲ)

-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구 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2억원 이상 표준평가 (Ⅲ)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60점
	적기납품	납기지체여부	15점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10점
	품질관리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10점
	약자지원	약자지원 대상 기업 여부	5점
	신인도 (-1.75~+2.5)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0.25점
		최저임금 위반	-0.5점
		임금체불	-0.5점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0.5점
		고용우수기업	+1점
		일자리 오픈기업 인적자원개발(HRD) 우수기업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0.5점
		기술 인증	+1점

-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구 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2억원 미만 표준평가 (Ⅲ)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50점
	적기납품	납기지체여부	20점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10점
	품질관리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15점
	약자지원	약자지원 대상 기업 여부	5점
	신인도 (-1.75~+2.5)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0.25점
		최저임금 위반	-0.5점
		임금체불	-0.5점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0.5점
		고용우수기업	+1점
		일자리 으뜸기업 인적자원개발(HRD) 우수기업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0.5점
기술 인증	+1점		

5.2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세부기준 가점제도

5.2.1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물품 구매 적격심사 시행 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은 1점의 신인도 가점을 부여받음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07호, 2022. 6. 3., 일부개정)

5)기타	여성기업 등	1.0	A. 여성기업	0.5
			B. 여성고용 우수기업	0.5
			C. 장애인 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1.0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1.0
			E. 청년고용 우수기업	
			- 청년고용비율 4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4인 이상	1.0
			- 청년고용비율 3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3인 이상	0.8
			- 청년고용비율 2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2인 이상	0.6
			- 청년고용비율 1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1인 이상	0.4
			F.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20% 이상	0.5
- 10% 이상 20% 미만	0.3			
G.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20% 이상	0.5			
- 10% 이상 20% 미만	0.3			
H.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0.5			
I.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위기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둔 자	0.5			
J. 최근1년내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으로 인정한 자				
- 1년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1.0			
- 6개월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0.5			
- 3개월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0.3			
K.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1년 이내에 선정·발표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1.0			
L. 법무보호대상자 고용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자	1.0			

5.2.2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낙찰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기준 중 일반용역에 대한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광역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경기도 등)에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통해 별도 제정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별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신인도 평가분야에서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대해 최소 0.5점 ~ 최대 1.7점까지 가점을 적용하고 있음

광역시(광역시 예규-355, 2019.7.1.)	평점
다. 사회적기업 등	
1)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기업'	1.0
2) 지방자치단체 지정 '예비 사회적기업'	0.5
3) 행정안전부 지정 '마을기업'	1.0
4) 지방자치단체 지정 '자활기업'	1.0
5) 중앙부처 지정 '사회적협동조합'	1.0
6)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0.5

경상남도(일반용역)	평점(점)
다. 사회적 경제기업 :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이상	
(1)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확인한 경우	0.5
(2)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확인한 경우	0.5
(3) 자활기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앙자활센터에서 확인한 경우	0.5
(4) 마을기업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시·도(마을기업 담당부서)에서 확인한 경우	0.5

경상남도(청사관리용역)/사회적경제기업 가점외 추가	평점(점)
바. 공동수급체 구성	
(1) 여성기업 또는 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30% 이상)를 구성한 경우	0.5
(2) 장애인기업과 공동수급체(30% 이상)를 구성한 경우	0.5
(3) 사회적 경제기업과 공동수급체(30% 이상)를 구성한 경우	0.5
(4) 청년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30% 이상)를 구성한 경우	0.5

경상북도(예규 제 1559호)	평점
A. 사회적기업(예비 사회적기업 포함) 육성	
(1)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	1.0
(2)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예비 사회적 기업	0.5
B.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1.0
C.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1.0
D.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1.0

대구광역시	평점
아. 사회적기업	
(1)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1.0
(2)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예비 사회적기업	0.5

서울시(2022.1)	평점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2.0
○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우수기업	0.5
○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1.0
○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1.5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 예규 제476호, 2021.10.21)	평점
라. 사회적기업(예비 사회적기업 포함) 등	+1.0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사회적 기업	+1.0
2)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예비 사회적기업	+0.5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지정)	+1.0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지방자치단체 지정)	+1.0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지정)	+1.0

전라남도	평점
다. 사회적 경제기업 (1)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 (2) 각 지방자치단체 지정 예비 사회적 경제기업	1.0 0.5

전라북도(전라북도 고시 2022-17호 2022. 1. 24. 시행)	평점
○ 여성기업(0.5) ○ 장애인기업(1) ○ 사회적기업(예비포함) 등(2)	3.5

충청남도(충청남도 공고 2021-1670호)	평점
J. 사회적기업(예비 사회적기업 포함) 육성 (1)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이나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예비 사회적 기업 (2)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3) 각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4)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2.0 2.0 2.0 2.0

충청북도(충청북도 공고 제2020-1559호)	평점
○ 사회적기업(예비기업 포함) -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기업 - 각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부서 지정 예비 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지정 ○ 마을기업 - 행정안전부 지정 ○ 자활기업 - 지방자치단체 지정	2.0

제주도(제주특별자치도 예규 제64호, 2021. 09. 30.)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2.0점) ○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 (+0.5점) ○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 (+1점) ○ 사회적기업(예비 포함) (+2점)	+5.5점

5.3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소액수의계약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용역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이중 2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1인에 의한 견적을 통해서도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함
- 그러나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여성기업에 대해서는 2014년 5천만원 이하 까지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확대되어 여성기업의 수의 계약을 통한 우선구매실적이 크게 확대되었음
- 이러한 효과를 고려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국정과제 및 일자리 창출과제” 반영하여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도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금액을 5천만원 이하까지 확대를 추진하였고 2018년 7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용역의 수의계약(제25조제1항제5호마목의“3”) 및 5천만원 이하 공사, 물품, 용역에서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가능함(2018년 7월 24일 시행)
- 국가계약법령 적용 대상 공공기관의 경우도 2018. 12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에서 물품 및 용역 수의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의“5의다”)이 가능토록 하고 5천만원 이하 공사, 물품 및 용역에서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30조제1항제2호) 가능함(2018년 12월 4일 시행)

- 다만, 상기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사회적기업과의 수의계약은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기업인 경우에만 적용됨.
 - 모든 사회적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확대는 타 영세업체의 진입을 차단할 우려 등이 있으므로,
 - 사회적기업 중 취약계층이 30% 이상 고용된 기업*등에 한하여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적용
- 2022년 현재 국가 및 지방계약법령 적용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사회적기업으로서 취약계층 30% 이상 고용요건 충족시 5천만원 이하 공사, 물품 및 용역에서 1인 견적, 1억원 이하 공사, 물품 및 용역에서 2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체결 가능함.

리 및 견인, 산후조리원, 소비자안전 등 135개 표준에 대해 53개 사업장에서 인증 획득 (2022.10기준)

- 한국산업표준(20,155종_’22.10기준)중 135종(0.7%)의 서비스 KS가 제정되어 양적으로 해외 주요국 수준이나, 소비자 서비스가 대부분임

5.4.2 단체표준 목적 및 요건

- (1) 동일 업종의 생산자들이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 호환성 확대, 공동이익 추구
- (2) 제품 품질향상, 거래의 공정화 및 단순화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보호
- (3) 한국산업표준(KS)이 규정하지 않는 부분의 보완
- (4) KS와 사내표준의 교량 역할
- (5) 급속한 기술 발전과 다양한 소비자 요구에 신속 대응

• 단체표준 제정 단체의 요건(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9조, 단체 등록 시 요건 확인)

-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같은 업종의 협동조합이 지역별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협동조합연합회로 함)
- (2) 소비자보호, 공산품의 품질향상 또는 산업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 해당)

• 단체표준의 요건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9조, 전문위원회를 통해 요건 확인)

- (1) 해당 단체표준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합의에 따라 제정된 것일 것
- (2) 관련 분야의 한국산업표준(KS) 또는 다른 단체표준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5.4 단체표준제도

5.4.1 단체표준의 정의 (산업표준화법 제27조)

- 서비스 산업의 표준화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여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2006년 부터 KS서비스(S) 법령 및 표준정비를 통해 2008년부터 서비스인증제도 운영 (산업표준화법 제1조, 제6조)
- 단체표준이란 한국산업표준(KS)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표준을 제정할 수 있고 제품의 품질고도화, 생산효율 향상,기술혁신을 기하여, 단순 공정화 및 소비의 합리화를 통하여 산업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 기술에 관한 기준임
 - (1)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 (2)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 (3) 특정의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기호·용어·성능·절차·방법·기술 등에 대해 제정한 표준
- KS보유 서비스 표준은 그래픽심볼, 국외여행서비스, 개인재무설계, 콜센터, 시설관리, 화물보관, 건축물 클리닝, 이사서비스, 사업장심사, 골프장, 레크레이션 다이빙, 차량수

5.4.3 단체표준 및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절차



5.4.4 KS 및 단체표준 서비스 인증 혜택 및 지원

- 국가기관 및 자치 단체 / 공공단체의 서비스 조달 입찰 시 우선적으로 구매 혜택 부여
 - 산업표준화법 제 25조 (인증제품 등의 우선구매)
-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참여
 -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판로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 공공기관에서 일정금액 미만 조달구매시 중소기업간 제한경쟁을 의무화 하는 제도
 - * 법적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
 - 공공기관이 일정규모(기재부 고시금액 : 2.1억원) 미만 물품·용역(中企간 경쟁 제품 제외) 구매 시 (중)소기업간 제한경쟁
 - * 1억원 미만 : 소기업간 제한경쟁
 - * 1억원 이상 ~ 2.1억원 미만 : 중소기업간 제한경쟁
 - 3개 이상 제조 소기업·소상공인과 협동조합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공동사업을 통해 제품화한 경우 해당 업체 간 제한경쟁입찰 또는 협동조합 추천 받은 업체 간 지명 경쟁입찰 가능

*** 산업통상자원부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으로 정하는 공동사업**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협업사업
- 공동상표 도입 또는 활용 위해 중기청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
- 조합 또는 3인 이상 조합원이 공동으로 보유한 특허권을 활용하는 사업
- 조합 또는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사업(공동애로기술개발사업)
- 「산업표준화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용역의 생산·제공 사업

참고자료

참고1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온라인 교육 안내

참고2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통합플랫폼 [e-store 36.5]

참고3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표준평가방식

참고4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공동수급체 운용요령

참고5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관련 공공기관 설문조사 결과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온라인 교육 안내

■ **(추진목적)**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우선구매제도 이해도 향상을 통한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 및 활성화 도모

- 우선구매제도 및 전자입찰 실무교육 통한 공공시장 진출 역량 강화

■ 교육 개요

- **일 정:** '22. 9. 14.(수) ~, 상시 수강 신청 가능
- **교육방법:** 진흥원 교육플랫폼(<https://coopedu.step.or.kr>)을 통한 회원가입 및 교육 신청 후 수강
 - * PC 및 모바일에서 수강 가능
- **교육비용:** 무료
- **교육대상:**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 임직원
 - * 기타 사회적경제기업(마을기업, 자활기업) 임직원도 수강 가능
- **교육과정:** 3개 과정

교육명	과정명	시간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을 위한 공공시장 진출 역량강화 교육 I	1. 공공구매의 개요	2시간
	2. 전자입찰 발주처 등록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을 위한 공공시장 진출 역량강화 교육 II	3. 전자입찰의 활용	2시간
	4. 적격심사	
	5. 투찰하기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을 위한 공공시장 진출 역량강화 교육 III	6. 물품전자계약	2시간
	7. 공공시장 진출 전략과 판로개척 사례	

- **수료조건:** 학습 진도율 80% 이상
- **교육혜택:** 수료자 대상으로 진흥원장 명의의 수료증 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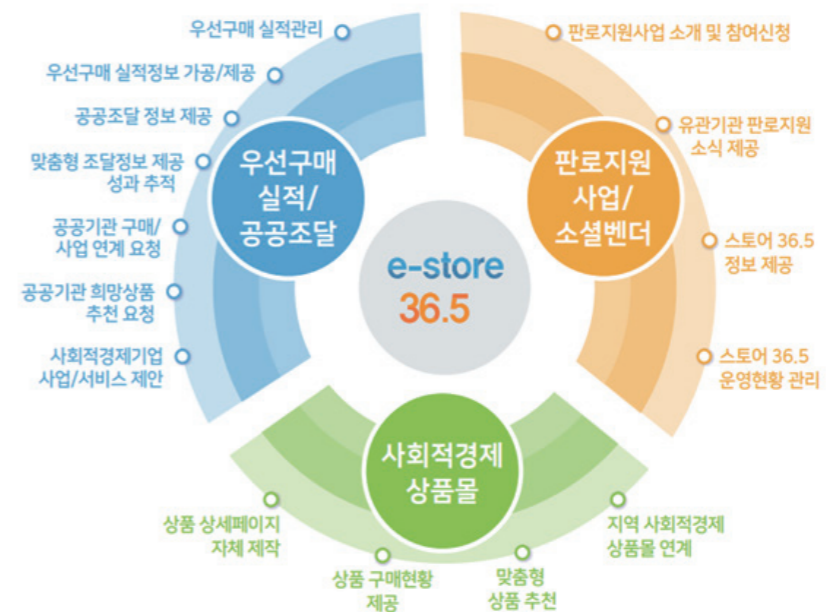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통합플랫폼[e-store 36.5]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통합플랫폼(e-store 36.5)은 사회적경제 상품물, 공공조달 정보 제공, 판로지원 정보제공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 운영 현황



■ e-store 36.5 주요기능



e-store 36.5 입점 안내

- **입점 현황('21년 12월 기준)**
 - 전국 사회적경제기업 2,100개소, 30,000개 상품 입점
 - * 공공기관 회원 등 총 11,350명 회원 이용
- **입점 대상 :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창업팀
- **입점상품 :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제품·서비스)**
 - * 단순 유통제품 입점 불가
- **입점신청 및 상품등록 절차**

입점신청

'입점사' 회원가입 및 승인대기

»

상품등록

판매관리자 사이트 접속 및 상품 등록

»

상품승인 및 판매

등록 상품 승인 이후 판매 개시
- **판매관리자 사이트 : <https://www.sepp.or.kr/seller>**
- **입점 기업·상품 정보 현행화 안내**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요청에 의해, 연 1회 정보 현행화 실시
 - * 정보 미현행화 시, 상품 노출/판매 중단

e-store 36.5
입점 주요혜택 6가지

1

입점·판매 수수료 無
(단, 카드 2.5% / 네이버페이 2.6% 부과)

2

기획전 참여 및 프로모션 혜택
상품 할인 기획전은 입점사의 기획전 참여 신청으로 연간 12회 운영됩니다

3

다양한 판로 채널 연계
대형 오픈마켓, 쇼핑몰, 전국 87곳 store 36.5 매장, 지역 상점, 전문 센터 등 도매가 공급 연계

4

공공구매 최적화 시스템 구축
견적 / 결제 / 후불 결제 / 거래명세서 / 세금계산서 발행
수의계약 등의 최적화된 시스템 무료제공

5

상품별 맞춤형 마케팅 지원
상품 사진 촬영 / 상세페이지 제작 / 브랜드 컨설팅
고객 타겟팅 등 지원과 고안을 함께 합니다

6

가장 빠르게 판로 지원 정보 제공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지원하는 모든 정보를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제공합니다

참고 3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표준평가방식

1. 수요기관은 구매목적에 적합한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매예산 기준에 따른 표준평가방식 중 1가지를 선택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별도의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배점을 변경할 수 없다.
 - 가.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2억원 이상인 경우

〈표준평가방식 I〉(수출지원 중심)

구 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2억원 이상 표준평가 (1)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60점	
	적기납품	납기지체여부	15점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10점	
	품질관리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10점	
	수출기업 지원	수출기업 지원 대상 기업 여부	5점	
	신인도 (-1.75~+2.5)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0.25점
		최저임금 위반		-0.5점
		임금체불		-0.5점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0.5점
		고용우수기업		+1점
	일자리 으뜸기업 인적자원개발(HRD) 우수기업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0.5점	
	기술 인증		+1점	

WW(표준평가방식 II)(품질향상 중심)

구 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2억원 이상 표준평가 (II)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70점
	적기납품	납기지체여부	15점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5점
	품질관리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10점
	신인도 (-1.75~+2.5)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0.25점
		최저임금 위반	-0.5점
		임금체불	-0.5점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0.5점
		고용우수기업	+1점
		일자리 으뜸기업 인적자원개발(HRD) 우수기업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0.5점
기술 인증	+1점		

〈표준평가방식 III〉(사회적약자 중심)

구 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2억원 이상 표준평가 (III)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60점
	적기납품	납기지체여부	15점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10점
	품질관리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10점
	약자지원	약자지원 대상 기업 여부	5점
	신인도 (-1.75~+2.5)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0.25점
		최저임금 위반	-0.5점
		임금체불	-0.5점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0.5점
		고용우수기업	+1점
일자리 으뜸기업 인적자원개발(HRD) 우수기업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0.5점	
기술 인증	+1점		

〈표준평가방식 IV〉(수요자선호 중심)

구 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2억원 이상 표준평가 (IV)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60점
	적기납품	납기지체여부	15점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10점
	품질관리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10점
	선호도	자체선호도 조사	5점
	신인도 (-1.75~+2.5)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0.25점
		최저임금 위반	-0.5점
		임금체불	-0.5점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0.5점
		고용우수기업	+1점
일자리 으뜸기업 인적자원개발(HRD) 우수기업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0.5점	
기술 인증	+1점		

나.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2억원 미만인 경우

〈표준평가방식 I〉(수출지원 중심)

구 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2억원 미만 표준평가 (I)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50점
	적기납품	납기지체여부	20점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10점
	품질관리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15점
	수출기업 지원	수출기업 지원 대상 기업 여부	5점
	신인도 (-1.75~+2.5)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0.25점
		최저임금 위반	-0.5점
		임금체불	-0.5점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0.5점
		고용우수기업	+1점
일자리 으뜸기업 인적자원개발(HRD) 우수기업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0.5점	
기술 인증	+1점		

〈표준평가방식Ⅱ〉(품질향상 중심)

구 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2억원 미만 표준평가 (Ⅱ)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60점
	적기납품	납기지체여부	20점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5점
	품질관리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15점
	신인도 (-1.75~+2.5)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0.25점
		최저임금 위반	-0.5점
		임금체불	-0.5점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0.5점
		고용우수기업	+1점
		일자리 으뜸기업 인적자원개발(HRD) 우수기업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0.5점
기술 인증	+1점		

〈표준평가방식Ⅲ〉(사회적약자 중심)

구 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2억원 미만 표준평가 (Ⅲ)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50점
	적기납품	납기지체여부	20점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10점
	품질관리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15점
	약자지원	약자지원 대상 기업 여부	5점
	신인도 (-1.75~+2.5)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0.25점
		최저임금 위반	-0.5점
		임금체불	-0.5점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0.5점
		고용우수기업	+1점
일자리 으뜸기업 인적자원개발(HRD) 우수기업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0.5점	
기술 인증	+1점		

〈표준평가방식Ⅳ〉(수요자선호 중심)

구 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2억원 미만 표준평가 (Ⅳ)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50점
	적기납품	납기지체여부	20점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10점
	품질관리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15점
	선호도	자체선호도 조사	5점
	신인도 (-1.75~+2.5)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0.25점
		최저임금 위반	-0.5점
		임금체불	-0.5점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0.5점
		고용우수기업	+1점
일자리 으뜸기업 인적자원개발(HRD) 우수기업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0.5점	
기술 인증	+1점		

2. 각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방법은 종합평가방식의 각 항목별 평가방법과 동일하다.



제1조(목적) 이 운용요령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제 6조의2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서를 제출하고, 납품대상업체로 선정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납품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2단계경쟁 공동수급체 등록 공고) ① 수요기관의 장은 기준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구매하고자 하는 세부품명이 2개 이상인 경우(단, 해당 세부품명의 물품분류번호 상위 2자리(대분류번호)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한함)로서 동일 예산 사업의 범위 내에서 복수의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수요물자별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기타 수요물자별 별도 업무처리기준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을 의무화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2단계경쟁의 공동수급체 구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2단계경쟁 제안요청 전에 수요기관명, 2단계경쟁 건명, 대상 세부품명, 예산액, 공동수급체 등록마감일 등이 포함된 관련 정보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만 5일 이상(공휴일 및 토요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종합쇼핑몰 시스템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공동수급체 등록 마감일을 제2항의 공고기간 만료일로 정하여야 한다.

④ 수요기관의 장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계약의 원활한 이행이나 가격 및 품질, 기타 조건에 있어 공동수급체의 최대 구성원수를 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성원수를 정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을 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⑤ 수요기관의 장은 공동수급체 등록 공고에서 조달청과 체결된 다수공급자계약조건 이외의 요구를 할 수 없다.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2조 제2항에 따른 2단계경쟁 공동수급체 등록 공고 대상 세부품명에 대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계약이행이 가능하여야 한다.

②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만으로 수요기관에서 공고한 모든 세부품명의 수요물자를 납품할 수 있어야 한다.

제4조(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선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은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수요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한다.

제5조(공동수급체의 등록) ①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종합쇼핑몰 시스템에 공동수급체 정보를 등록하고, 구성원들로 하여금 공동수급체 구성에 동의하고, 제안품목을 등록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수요기관에서 공고한 공동수급체 등록 마감일까지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 구성에 동의하고, 공동수급체 등록 공고에서 요구하는 규격을 충족하는 품목을 등록하여야 한다.

③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구성원별로 1개 세부품명 이상의 수요물자를 등록하되 공동수급체 내 구성원들간에 같은 세부품명을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다.

④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납품이행을 약속하는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공동수급체 등록마감일까지 종합쇼핑몰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요청 대상 공동수급체 선정)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종합쇼핑몰 시스템에 등록된 공동수급체 및 공동수급체가 등록된 수요물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세부품명, 요구규격, 구매예정수량 및 분담내용 등을 검토하여 구매목적에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구매목적에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공동수급체에 대하여 2단계경쟁 제안요청 대상 공동수급체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2단계경쟁 제안요청)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6조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공동수급체, 구매목적을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계약상대자 등 총 5인(각 공동수급체는 계약상대자 1인으로 간주한다.) 이상을 대상으로 기준 제6조에 따라 2단계경쟁 제안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구매목적을 충족하면서 예산범위 이내인 공동수급체 및 계약상대자가 2인 이상 5인 미만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인 이상 5인 미만으로도 제안요청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합쇼핑몰에 그 사유를 입력하여야 한다.

③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동일 제안요청 건에 대하여 단독으로 또는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단계경쟁에 참여할 수 없다.

제8조(공동수급체의 2단계경쟁 제안서 제출) ① 제7조 제1항에 따라 제안요청을 받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제안가격 등을 취합하여 기준 제9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요청 대상 공동수급체가 기준 제8조에 따른 제안서 제출기한까지 제1항의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 제10조 제3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가격으로 제안한 것으로 한다.

제9조(제안서 평가 및 납품대상 업체 선정)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하여 [별표]에 따라 구성원별로 평가(단, 가격 평가 점수는 공동수급체를 기준으로 산출하여 각 구성원에게 동일하게 적용) 후 구성원별 제안 총금액에 따라 가중 평균 방식으로 종합(표준)평가점수를 산출하며, 산출점수에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점을 합산하여 최종 점수를 산출한다.

예시 : 공동수급체 구성원 A,B,C의 평가점수가 각각 74점, 60점, 66점이고 제안 금액이 각각 3억원, 2억원, 1억원일 경우 동 공동수급체의 종합(표준)평가점수

$$74(\text{점}) \times \frac{3(\text{억원})}{6(\text{억원})} + 60(\text{점}) \times \frac{2(\text{억원})}{6(\text{억원})} + 66(\text{점}) \times \frac{1(\text{억원})}{6(\text{억원})} = 68(\text{점})$$

② 수요기관의 장은 구매대상 세부품명의 수가 6개 이하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비율(구성원 수/ 세부품명 수)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가점을 부여한다.

구성원비율	20~40%미만	40~60%미만	60~80%미만	80%이상
가점	0.4	0.6	0.8	1

③ 수요기관의 장은 구매대상 세부품명의 수가 7개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가점을 부여한다.

구성원수	2개사	3개사	4개사	5개사 이상
가점	0.4	0.6	0.8	1

제10조(납품 요구) 수요기관의 장은 공동수급체가 납품대상 업체로 선정된 경우에는 각 구성원별로 납품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후 계약이행 관리 등에 대하여도 각 구성원별로 진행하여야 한다.

제11조(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수급협정서의 분담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납품을 이행하고,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및 계약조건 위반 등에 따른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단가계약 납품중지 등의 조치에 대하여는 당해 조치를 야기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2조(공동도급 내용의 변경)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등록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분담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1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받거나 부도 또는 파산, 폐업 등의 상태로 해당 구성원의 분담내용에 대한 납품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당해 납품요구를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하여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1조에 따라 새로운 납품요구 절차에 따라 구매를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대가의 지급)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이행에 따른 대가는 각 구성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한다.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관련 공공기관 설문조사 결과

■ 설문조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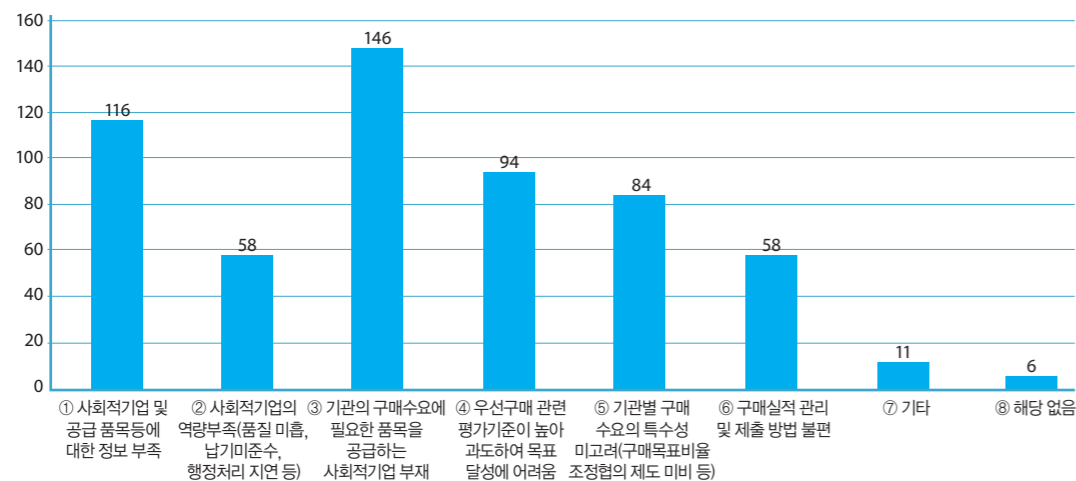
- **(목적)** 우선구매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제도개선
- **(대상)** 공공기관 861개 기관
- **(기간)** '22.5.12. ~ 5.23. (12일간)
- **(응답)** 331개 기관 (응답률 38.4%)
- **(설문조사 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판로지원팀

■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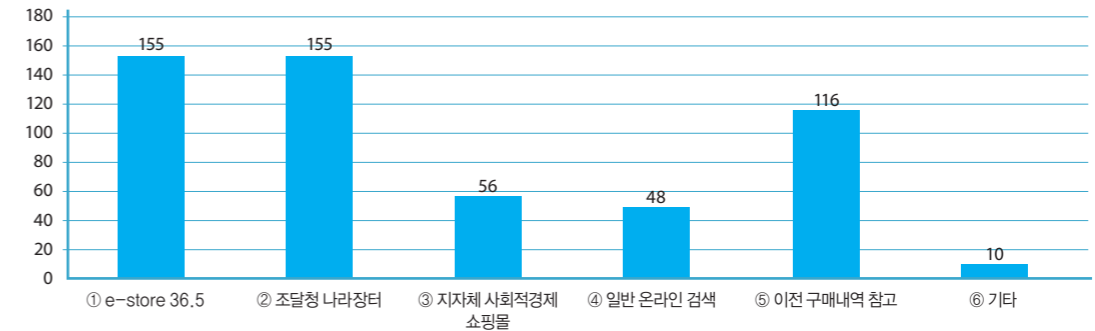
● 응답 공공기관 유형

구분	합계	국가 기관	자치단체		교육청	공기업	준정부 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의료원	특별법인	미분류
			광역	기초								
기관수	861	55	17	226	17	36	95	218	156	35	6	-
응답	331	10	11	88	10	18	40	53	70	9	0	22
응답률	38.4	18.2	64.7	38.9	58.8	50.0	42.1	24.3	44.9	25.7	0.0	-

● 구매 시 애로사항



● 정보검색 및 구매 시 이용하는 플랫폼



● 구매 시 활용하는 지역 내 인프라

